

M15 - 13/1989. 12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13]

中間마을의 社會經濟構造

扶餘郡 草村面 松菊 2 里 事例

吳 乃 元(責任研究員)

鄭 起 煥(責任研究員)

許 璋(研 究 員)

閔 尚 基(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당 연구원에서는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사회의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1985년부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 ~ 2001)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구와 인구, 경제활동,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공간구조, 의식, 가치관 등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례 연구사업이다.

이 보고서는 사례연구마을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마을별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을을 사회의 한 단위로 설정하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마을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본연구의 연구가설이 제시하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1945년 이후 자료와 1985년도 이후 본 연구진이 조사한 기초 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과 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종국적으로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애쓴 분들이 많으나 특히 이 연구사업에 처음부터 적극 협조해 주신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주민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연구를 추진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료의 분석, 정리, 보관 및 발간에 협조해 준 전산실과 편집실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1989.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영 진

목 차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1. 연 혁	1
2. 자연환경	2

제 2 장 인 구 및 가족구조

1. 가 구	10
2. 인 구	17
3. 가족구조	25

제 3 장 경제활동구조

1. 경지소유 및 이용	32
2. 작목조직과 생산기술	45
3. 노동력구조와 이용	49
4. 겸업화와 농외활동	57
5. 가계구조	59

제 4 장 사회구조

1. 사회집단	75
2. 사회망과 지도력	103
3. 종교 및 문화	109
4. 문화생활 및 에너지이용	115

제 5 장 공간구조

1. 주민의 생활권	120
2. 마을 공간구조	125

표 목 차

제 1 장

표 1 - 1	초촌면의 토지종별 현황, 1985	3
표 1 - 2	주요도로	5
표 1 - 3	대중교통수단, 1988	5
표 1 - 4	기후현황, 1986	9

제 2 장

표 2 - 1	가구의 변화	11
표 2 - 2	가구별 승계, 분가, 전출입 내용	13
표 2 - 3	전출입가구의 계층구분, 1945 ~ 85	15
표 2 - 4	전입 가구	16
표 2 - 5	전출 가구	16
표 2 - 6	가구구성	16
표 2 - 7	가구성격의 변화	17
표 2 - 8	연령별 인구구성	18
표 2 - 9	주요 인구지표	20
표 2 - 10	인구증감의 내용	21
표 2 - 11	전입자 개황, 1985 ~ 88	22
표 2 - 12	전입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985 ~ 88	23
표 2 - 13	전출목적, 1985 ~ 88	23
표 2 - 14	전출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985 ~ 88	24
표 2 - 15	전출목적에 따른 전출지역, 1985 ~ 88.	24
표 2 - 16	가구원수별 가구	25
표 2 - 17	가족형태	26
표 2 - 18	경영주 연령별 가족형태, 1988	26

표 2-19	가족분산현황.....	27
표 2-20	출타목적	28
표 2-21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28
표 2-22	출타지역	29
표 2-23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1987	29

제 3 장

표 3-1	1945 년 전후의 농지소유구조	33
표 3-2	소작지의 지주별 소유분포, 1945	35
표 3-3	농지소유규모계층의 변화	36
표 3-4	농지소유구조	36
표 3-5	농지소유 변동가구의 개황, 1985 ~ 88	37
표 3-6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38
표 3-7	경작규모계층의 변화	38
표 3-8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39
표 3-9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988	40
표 3-10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988	41
표 3-11	그룹별 경영주 연령분포, 1988	41
표 3-12	그룹별 농업노동력 보유, 1988	41
표 3-13	임차면적의 변화	42
표 3-14	임대차에 의한 농가구분	42
표 3-15	임차농의 임차면적규모	43
표 3-16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43
표 3-17	부채지주의 농지취득경위, 1988	44
표 3-18	임차료 지불형태	44
표 3-19	농지임차료 지불액, 1988.	44
표 3-20	1970 년 이후 주요작물의 도입과 성쇠	46
표 3-21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47
표 3-22	경종작부체계, 1986	48
표 3-23	가축사육두수	48

표 3-24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50
표 3-25	영농종사자수	51
표 3-26	영농종사자 증감원인	51
표 3-27	영농종사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51
표 3-28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52
표 3-29	고용노동일수	53
표 3-30	품앗이 일수	54
표 3-31	농업노동 고용관계에 따른 농가구분	54
표 3-32	농업노임	55
표 3-33	농기계보유	56
표 3-34	수도작 기계작업을	56
표 3-35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58
표 3-36	비농업활동 가구의 개황, 1988	59
표 3-37	농업고정자산 투자액	60
표 3-38	농업투자규모별 농가호수	61
표 3-39	농업투자농가의 개황	62
표 3-40	농업의 투자	63
표 3-41	내구소비재 구입	63
표 3-42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지출, 1988	64
표 3-43	교육비 규모별 농가분포	65
표 3-44	의료보험여부	65
표 3-45	의료보험료 납부액, 1988	66
표 3-46	의료비 지출	66
표 3-47	상병과 의료비 부담내역, 1988	66
표 3-48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67
표 3-49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67
표 3-50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68
표 3-51	이전수지, 1988	69
표 3-52	호당평균부채	69
표 3-53	부채규모별 가구수	70

표 3-54	고액부채가구의 개황, 1988	71
표 3-55	호당 평균 저축액	71
표 3-56	순부채·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72

제 4 장

표 4-1	종중별 구성과 구성원 수	76
표 4-2	시제일과 중회일	77
표 4-3	대동계의 공동재산과 입계 규정	81
표 4-4	대동계의 계날과 장소	83
표 4-5	송현 대동계의 계쌀 대출이자율의 변화	87
표 4-6	새마을계 소유 공동재산, 1986	88
표 4-7	이익집단의 조직과 변천	91
표 4-8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93
표 4-9	위친계의 조직현황	96
표 4-10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지도자의 경제 사회적 특성	108
표 4-11	역대 이장명단	109
표 4-12	종교별 가구수와 신앙생활	110
표 4-13	10월고사를 지내는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유형	110
표 4-14	가신별 고사드리는 가구수	110
표 4-15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116
표 4-16	난방 및 취사연료 이용구조	118

제 5 장

표 5-1	생활중심지별 주요 시설	121
표 5-2	학생들의 취학실태	122
표 5-3	통혼권의 변화	124
표 5-4	자연부락별 주택의 향배	132
표 5-5	건축물별 증감내역, 1972~86	133
표 5-6	건축연대별 주택분포, 1986	133
표 5-7	유형별 주택 분포, 1987	134

표 5 - 8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987	136
표 5 - 9	방수별 주택분포	137
표 5 - 10	마을도로 확장사업내역, 1972 ~ 73	145
표 5 - 11	하수도 시설현황, 1987	149

그림 목 차

제 1 장

그림 1-1	송국 2 리의 입지와 교통	4
그림 1-2	중심지-마을간 도로망 (개념도)	5
그림 1-3	경지분포도	7
그림 1-4	연간기온변화, 1986	8

제 2 장

그림 2-1	가구수의 변화	12
그림 2-2	인구구조의 변화	19
그림 2-3	부분이촌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1988	30

제 4 장

그림 4-1	송국 2 리의 마을자치기구	82
그림 4-2	송국 2 리의 사회망 구조	104
그림 4-3	사회망 I	105
그림 4-4	사회망 I의 친인척 관계	105
그림 4-5	사회망 II	106
그림 4-6	송국 2 리의 지도력 구조	108

제 5 장

그림 5-1	생활권	123
그림 5-2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124
그림 5-3	송현의 주택배치도, 1987	126
그림 5-4	송현의 주택배치도, 1970	127
그림 5-5	산학골의 주택배치도, 1987	128

그림 5-6	산학골의 주택배치도, 1970	129
그림 5-7	참새골의 주택배치도, 1987	130
그림 5-8	참새골의 주택배치도, 1970	131
그림 5-9	A형 주택	138
그림 5-10	B형 주택	139
그림 5-11	C형 주택	140
그림 5-12	대농의 C형 주택	141
그림 5-13	D형 주택.....	142
그림 5-14	공공시설 배치도	143
그림 5-15	새마을 회관	144
그림 5-16	새마을 창고	144
그림 5-17	마을도로 및 농로망, 1987	146
그림 5-18	마을도로 및 농로망, 1970	147
그림 5-19	마을내 도로망, 1987	148
그림 5-20	간이 상수도망, 1987	150
그림 5-21	하수도망, 1987	151
그림 5-22	농경지구조와 경지이용현황, 1970	153
그림 5-23	농경지구조와 경지이용현황, 1987	154
그림 5-24	종교문화공간	156

비

면

제 1 장

연혁 및 자연환경

조사마을인 松菊二里는 충남 부여군의 준평야지대에 위치한 행정리로서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치적으로는 대전에서 35 km권, 부여읍과 논산읍에서는 12 km권(직선거리)에 자리잡은 중간지대에 속한다.

마을이 속한 草村面은 전형적인 농업지대로서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이 비교적 뒤늦게 파급되어 온 지역이다. 근교지역에서와 같은 시설원예 등 근교농업의 발달과 비농업적 산업의 확산, 산간지역에서와 같은 급격한 호수감소로 인한 過疏化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농업의 상업화, 젊은층의 이촌에 따른 노령화, 도시와의 접근도 향상, 도시·산업문화의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마을관련 사건들로서는 1972년 이후의 새마을 운동, 1973년의 경지정리와 논산군내 버스의 응평리 취역, 1975년의 야산개발 등을 들수 있다. 1984~85년의 복합영농 실패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었지만 이후 땅콩재배가 확대되는 등 농업에서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1. 연 혁

송국 2리는 초촌면의 22개 행정리중 하나로 송현, 산학골, 참새골의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국 2리의 행정사적 변화를 보면 이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新松里라고 부르는 하나의 행정리였으며, 현재 소사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자연부락인 수량골도 한

때는 新松里에 속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14년에는 신송리가 다른 마을(上菊里, 下菊里, 下坪里 및 素沙面 德相洞 일부)들과 함께 松菊里로 통합되었으며, 1972년에 송국 2리로 分洞되면서 수랑골은 素沙里로 나뉘어졌다.

산학골(7호)은 본관이 慶州인 李健鍾씨의 10대조(李植)가 임진왜란시 공주군 탄천면 정티에서 피난온 것이 계기가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져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학골이라는 지명은 마을이 위치한 곳이 산골짜기의 기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현(20호)의 유래에 대해서는 밀양朴씨(현재 1호 거주)의 20대조가 開村하여 대대로 많이 살아왔으나 역병이 들어 폐촌이 되다시피하고 他姓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만이 구전되고 있을 뿐 이러한 사실들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참새골(6호)의 역사에 대해서도 밝혀진 사실은 없다. 송현의 지명은 소나무가 많다하여 ‘소나무고개’에서, 참새골은 찬 샘물이 나온다는 ‘찬샘골’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송국 2리의 계층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일제시대에도 마을내에서는 班常관계가 성립하여 양반층으로는 慶州 李씨, 全州 李씨, 扶餘 徐씨, 漢陽 趙씨, 중간계층으로는 光山 金씨, 昌寧 曹씨, 密陽 朴씨가 그리고 나머지 성씨는 常民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반상관계는 토지소유, 마을에서의 先거주, 친족의 세력 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제말엽에는 지주층은 전주 이씨 1가구에 불과하고 마름 겹 자작이 2호 정도로, 양반층이라 하여도 그 경제적 기반은 매우 약하였다.¹⁾

이러한 반상관계는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고 6.25 전쟁을 경과하면서, 그 경제적 기초가 소멸되면서 쇠퇴되었다.

2. 자연환경

가. 지리적 위치.

조사마을이 속해 있는 草村面은 扶餘郡의 동부에 위치하며, 南東으로는 論山郡의 光

1) 자세한 것은 3장 1절 참조

표 1 - 1 초촌면의 토지종별 현황, 1985

단위 : m^2 , %

구 분	면 적	%	구 분	면 적	%
합 계	28,760,601	100.0	하 천	1,805,663	6.3
전	4,025,409	14.0	제 방	119,196	0.4
답	8,854,110	30.8	구 거	1,012,964	3.5
과 수 원	2,565	0.1	유 지	101,329	0.4
임 야	11,097,791	38.6	종 교 용 지	1,980	0.00
대 지	778,846	2.7	묘 지	130,982	0.5
도 로	821,061	2.9	잡 종 지	8,707	0.03

자료 : 부여군 통계년보, 1985.

石面, 北으로는 公州郡의 灘川面과 경계하고 있고, 南西로는 부여군 石城面 및 扶餘邑과 인접하고 있다.

面 전체의 경지율은 44.9%, 답율은 68.7%로 평야지역에 속하나 면의 北西部는 산간, 중부는 저구릉지, 남동부는 평야지를 이루고 있다. 土地種別 상황은 <표 1-1>과 같다.

송국 2리는 초촌면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여읍에서 18 km, 논산읍에서 15 km 떨어져 있고, 4번국도상의 십자가(石城面 소재지)에서는 4 km 거리에 있다.

송국 2리의 중심도시인 논산읍에서 이 마을에 이르는 접근로는 두개가 있다. 그 첫째는 논산-부여를 관통하는 4번국도(大田-長項)선상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十字街에 도착한 후 799번 지방도와 8번 군도를 따라 초촌면 소재지인 鷹坪里에 이르는 도로다. 둘째는 논산군 光石面 五岡里를 거쳐 8번 군도를 따라 응평리에 이르는 도로다.

4번국도에는 수분 간격으로 각처로 연결되는 지방 노선버스(시외버스)들이 운행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십자가에 도착하여 부여-응평리간 운행되는 부여 군내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는 1일 5회 운행으로 이용에 제한이 크다.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데 마을까지는 2,500 원이다. 논산읍에서 응평리로 운행되는 버스는 1일 15회(소요시간 40분)로 논산읍과의 교통은 좋은 편이다(1973년부터 응평리까지 버스가 다니게 되었다). 어떠한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송국 2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먼 소재지인 응평리까지 1.5 km의 거리를 도보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림 1 - 1 송국 2리의 입지와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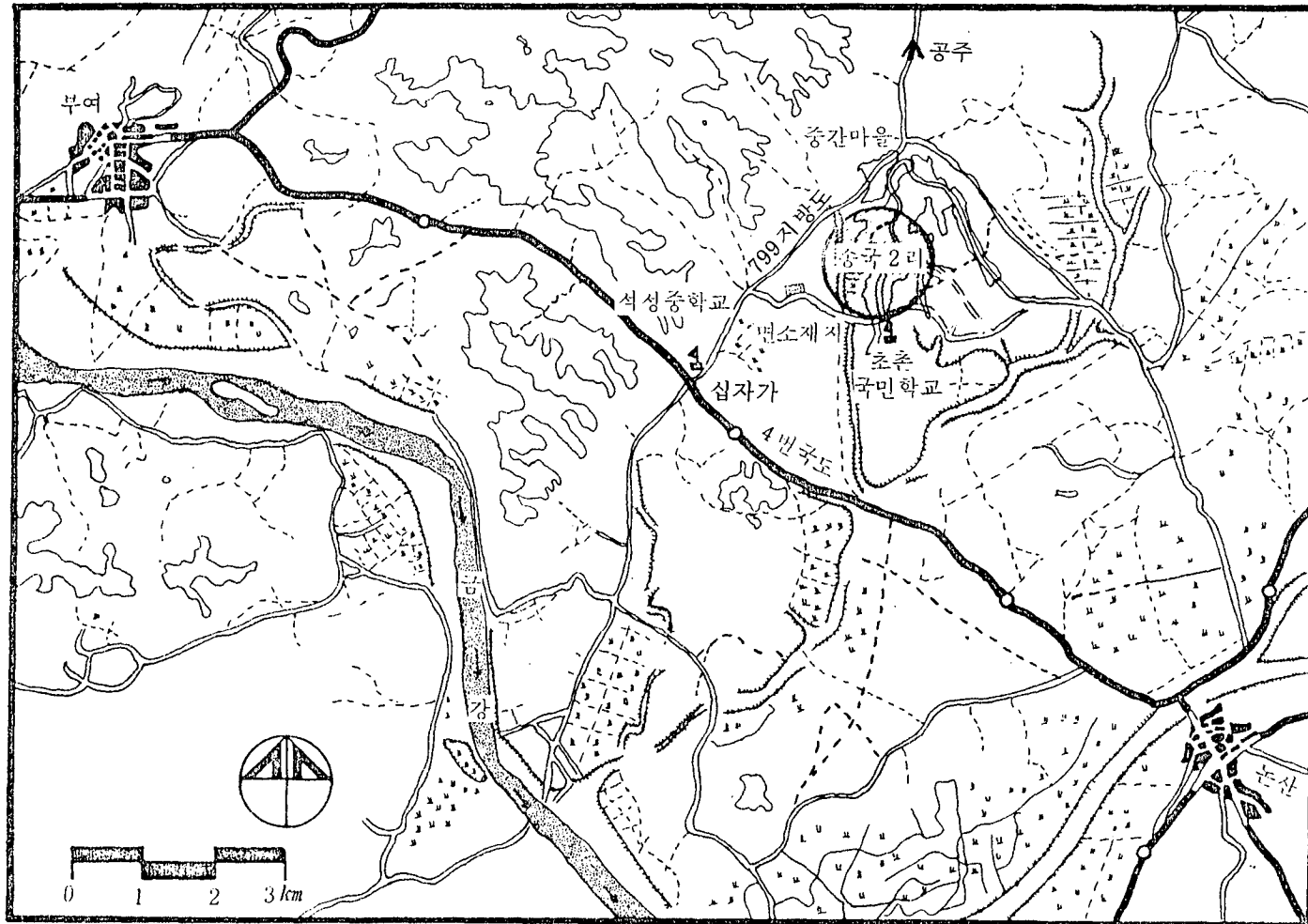


그림 1 - 2 중심지-마을간 도로망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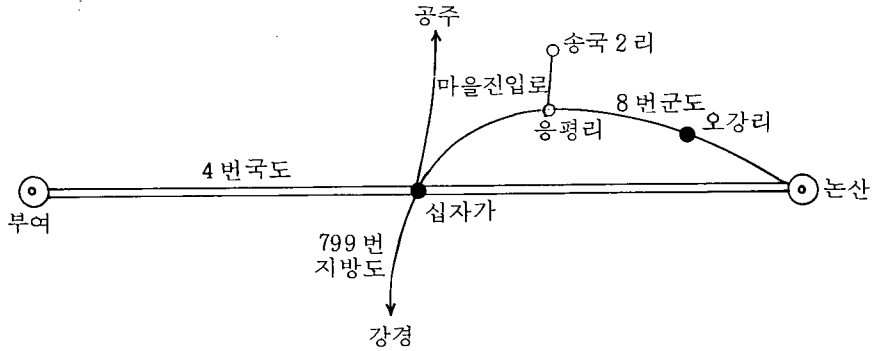


표 1 - 2 주요도로

도 로 명	구 간	포 장	차 선	인근도시까지의 거리
4 번 국 도	대 전 ↔ 장 항	아 스 팔 트	2	십자가 ↔ 논산 12 km 십자가 ↔ 부여 15 km
799번 지방도	강 경 ↔ 공 주	비포장(포장중)	2	} 응평 ↔ 십자가 3 km
8 번 군 도	오강 ↔ 비석거리	비 포 장	1	

표 1 - 3 대중교통수단, 1988

종 류	운행횟수 및 간격	경유·도달도시 및 소요시간	비 고
군 내 버 스	1 일 15 회	논산 ↔ 응평 40 분	1973 년 개설 (군도이용) (국도 경유)
군 내 버 스	1 일 5 회	부여 ↔ 응평 25 분	
시 외 버 스	수 시	십자가 ↔ 논산 10 분	
		십자가 ↔ 부여 10 분	
택 시		십자가 ↔ 마을 왕복 20 분	2,500 원
		논산 ↔ 마을 20 분	4,000 원

한편, 강경~십자가~탄천~공주를 잇는 799번 지방도는 1987~89까지 확장,포장 공사 중에 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이는 호남과 천안을 연결하는 기존 도로보다 짧은 거리가 되어 화물차량의 통행과 시외버스의 확대운행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에서 응평리까지의 도로는 응평-연화교(다리), 연화교-마을로 구분된다. 응평-연화교간은 지름길인 농로와 우회하는 제방길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비포장이고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연화교에서 마을에 이르는 진입로는 길이 620m로 1973년 새 마을 사업때 폭 2.5m에서 4m로 확장하였으나 그후 부분적으로 잠식되어 있다.

나. 지형조건

초촌면은 논산평야의 북단에서 공주군 탄천면의 산악지형으로 연결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中間地帶의 성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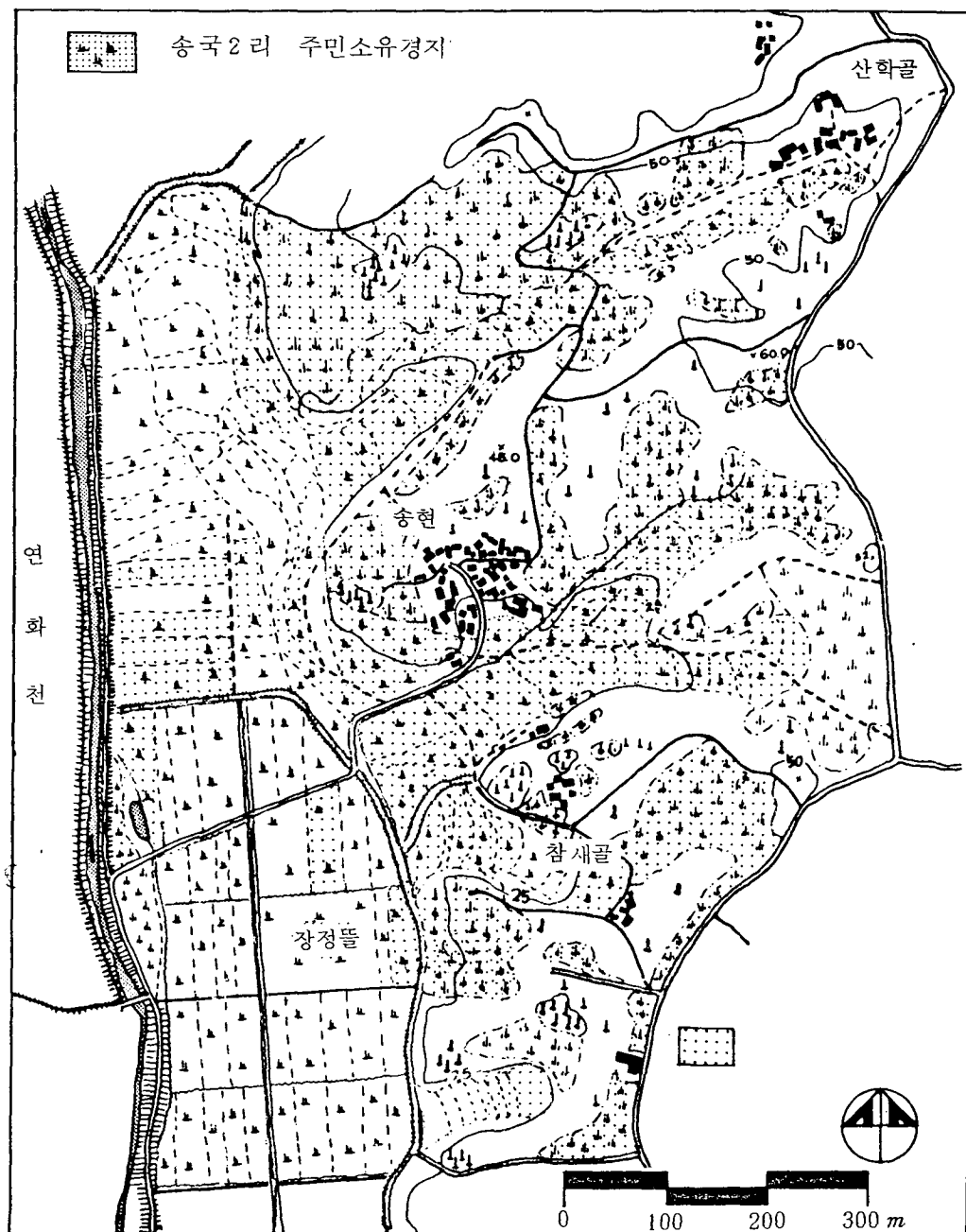
초촌면의 북서부는 산간지대를, 중부는 저구릉지를, 그리고 남동부는 평야지를 이루고 있다. 공주군 탄천면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면의 동부와 남부를 관통하여 흐르는 마름내는 송정리, 화정리, 소사리 등을 지나 송정뜰, 하관뜰 등 평야를 이루어 놓고 다시 石城川으로 모아져 錦江에 합류한다. 탄천면의 산악지대와 초촌면 북동부의 망월산, 감투봉 등에서 발원하는 연화천은 송현리와 연화리를 지나 석성천에서 마름내와 합류한다.

송현 2리는 해발 40~50m의 낮은 구릉지를 북·동으로 두고 남서를 향하여 형성된 세개의 낮은 계곡 사이로 분포된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개의 자연부락중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자연부락은 松峴이다. 송현동은 송국 2리를 총칭하는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참새골은 松峴의 300m 이남에, 산학골은 송현의 700m 이북에 각각 하나씩의 낮은 구릉을 끼고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 앞의 장정뜰은 연화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 있다(A지구). 이 뜰은 1973년에 경지정리를 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장정뜰에서 경작하는 경지는 4.0ha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 앞의 계곡 주변에 펼쳐진 계단식의 논을 경작한다(B, C, D지구).

망월산 등에서 발원하는 연화천은 수량이 풍부한 편이 아니다. 장정뜰의 용수는 주로 연화천과 세담 저수지로부터 해결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은 농경지가 장정뜰에 거의 없으므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송국 2리 마을 주민들은 농업용수를 주로

그림 1-3. 경지분포도



전답에 설치한 관정으로 해결한다.

낮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마을 뒷산은 1975 년도에 실시한 정부의 야산개발정책에 의해서 36 ha 정도가 개간되어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E, F 지구). 그러나 이 마을 주민이 소유한 개간지는 7 ha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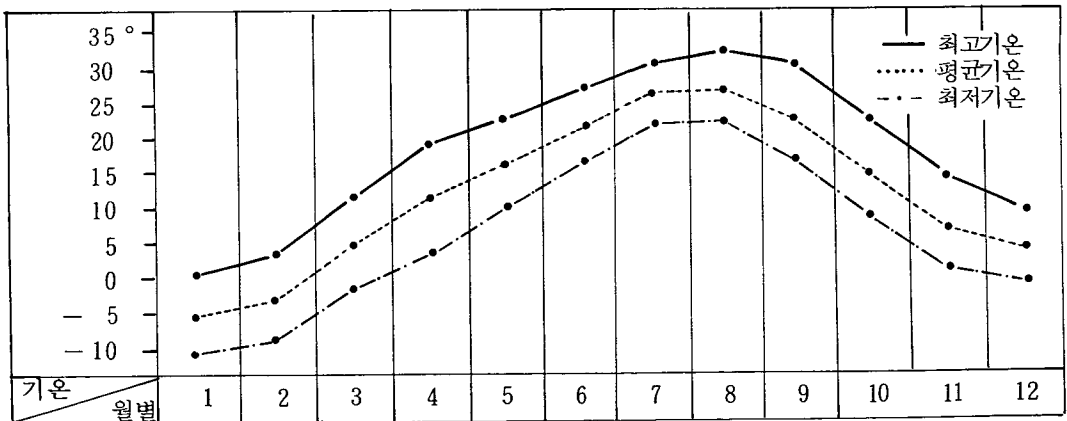
이 마을의 구릉지를 이루는 토양은 모난 자갈이 섞인 붉은 砂壤土로서 강우 등에 의한 토양유실이 많다. 그러나 구릉지 계곡에 분포된 답은 주로 冲積土로 이루어진 점질 사양토로서 배수가 불량한 편이다.

다. 기후와 농업조건

부여군은 연평균 기온이 11.7℃를 기록하는 온대 몬순기후의 특성을 갖는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연간 강우량 1,222.0 mm의 58.2%가 7, 8, 9월에 집중된다. 반면 겨울철(12, 1, 2월)에는 전체 강우량의 4.7%만이 내려 저온건조한 편이다. 그러나 서해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서해 난류의 영향을 받아 동위도상의 내륙지방보다 온난한 겨울철을 맞는다.

이와 같은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부여군 초촌면은 이 지방이 중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작 중심의 농업유형이 보편적이다. 1980~84년의 5년간 평균 무상일수는 180일로서 비교적 긴 편이다. 같은 기간의 평균으로 볼 때 첫 서리는 10월 22일, 마지막 서리는 4월 22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맑은 날은 5개년 평균 266일로 나타나고 있어 일조시간이 비교적 많다. 이러한 기후조건은 이 지방이 낮은 구릉지로 형

그림 1-4 연간기온변화, 1986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표 1 - 4 기후현황, 1986

구분 연월	기 온 (℃)			평균습도 (%)	증 발 량 (mm)	강 수 량 (mm)	평 균 일조시간 (h)
	평 균	최 고	최 저				
1986	11.1	17.4	6.0	79	1049.2	1300.1	7.8
1 월	- 4.5	1.8	- 9.7	77	35.5	17.4	220.8
2 월	- 2.4	3.7	- 7.5	71	40.7	12.4	235.9
3 월	4.7	11.8	- 1.0	76	74.1	50.5	250.5
4 월	11.4	18.9	4.1	66	129.3	37.4	279.9
5 월	16.5	23.2	10.6	74	139.2	128.7	305.7
6 월	21.7	27.2	17.3	80	133.6	181.1	243.7
7 월	23.6	28.1	20.1	86	110.1	290.9	235.9
8 월	24.6	30.2	20.4	86	141.5	260.3	276.7
9 월	18.5	25.2	13.8	85	91.2	151.8	231.5
10 월	11.7	19.0	6.3	83	67.0	79.1	222.9
11 월	5.1	12.2	- 0.4	77	50.9	40.4	200.1
12 월	2.2	7.7	- 2.2	83	36.1	50.1	158.3

자료 : 부여군 통계연보.

성된 지형적 조건과 함께, 고추, 담배, 땅콩 등 일조를 많이 요구하는 전작농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조건으로 볼 때 송국2리는 水稻後作이 가능하나 기후외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답리작재배가 억제되고 있다. 즉 송국2리의 답토양은 대부분이 곡간답으로서 배수가 불량하여 답리작 재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답리작에 따른 기술수준도 논보리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제 2 장

인구 및 가족구조

송국 2리는 1988년말 현재 가구수 33호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이다. 또한 경주李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各姓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945년 전후에도 가구수는 30호 전후, 가장 많았을 때인 1970년대 중반에도 35호로 가구수의 변동은 적었으나, 전출입은 1945~88년간 각각 15호, 10호로 비교적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구수의 일정규모 유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대량이촌은 마을의 인구규모를 감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력구조를 노령화, 열악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노령부부가족,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도 타부락과 비슷한 현상이다. 본장에서는 가구, 인구의 변동과 그에 따른 마을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1. 가 구

송국 2리의 1945년 가구수는 30호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당시의 인구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구당 7명 정도로 2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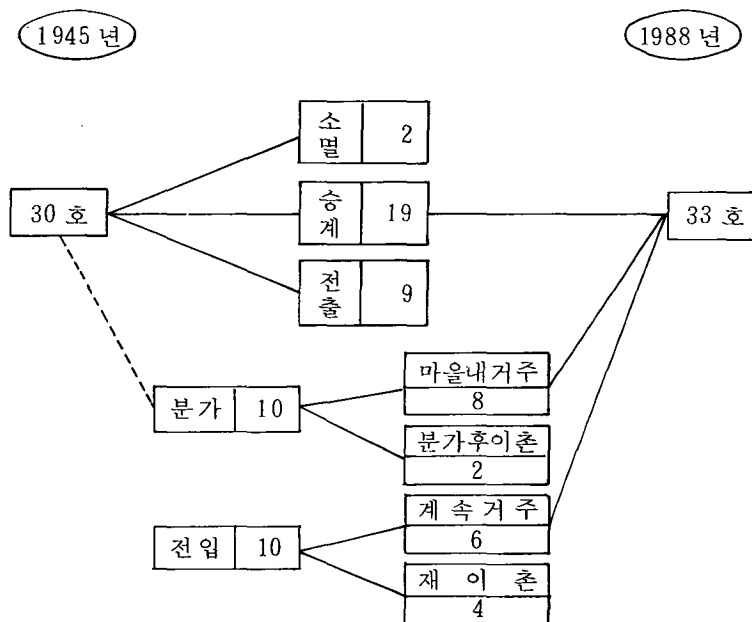
1945~88년의 가구수 변동을 보면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약간 증가를 보인

1) 1945~84년의 가구수와 변동내용은 조기영 씨등 주민들의 증언과 호적, 주민등록 등의 자료로서 복원하였음.

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전국적 농가호수 감소현상(1965~88, 평균 27.2%감소)과는 달리 이 마을의 호수 감소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마을 내에서 차남 이하의 분가와 은퇴·사망 농가의 승계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1975년 야산개발로 경지면적이 늘었던 점과 씨족집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²⁾ 이러한 점은 전입가구의 절반인 5호가 1975년 이후에 들어왔다는 특이한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마을내 분가는 1960년대와 70년대 전반에 집중되어 있고 75년 이후에는 1호에 불과하여 앞으로의 가구수 변동양상이 변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1945년 이후 가구의 승계와 분가, 전출입의 상황을 가구별로 보면 <표2-1>, <표2-2>와 같다. 총 30호중 19호는 자식세대로 승계되어 마을에 남아 있으며, 마을내에 분가한 10호중 2호는 전출하였고 8호는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자식이 이촌하여 가구주의 사망과 함께 소멸된 가구가 2호, 전출한 가구가 9호이다. 반면 전입한 가구는 10호로서 이중 4호는 다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1 가구의 변화



2) 마을내 가장 큰 씨족인 경주 이씨는 1945년 6호였으며, 그후 분가, 승계 등으로 1985년에는 12호까지 증가하였음. 이 성씨 가구의 이촌은 1986년도 1호에 불과하였음.

표 2-2 가구별 승계, 분가, 전출입 내용

가 구 주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비 고
김 인 복					○					1965 승계 (⑩)
윤 복 순				-----						1958 전출
이 화 익										1968 사망, 단절
윤 광 순				-----						1962 전출
구 학 용								○		1983 승계 (⑮)
이 종 석					○					1963 승계 (⑦)
서 기 석						○				1966 승계 (①)
박 병 일								○		1982 승계 (⑫)
조 기 영										계 속 (③)
노 부 암			○							1955 승계 (⑤)
이 규 손				○						1960 승계 (⑥)
										1975 분가 (⑮)
송 갑 봉										계 속 (⑪)
김 영 록	○									1947 승계 (⑫)
노 차 암			-----							1953 전출
조 규 천								○		1981 승계 (⑪)
이 중 익			○							1953 승계 (⑩)
박 태 복								-----		1977 전출
이 보 상			-----							1955 전출
이 규 봉		○		○						1951 승계
										1961 승계 (②)
										1953 분가 (⑥)
										1966 분가 (⑭) 1986 전출
										1969 분가 (⑮)
										1948 분가 (⑮)
										1985 분가 (⑫)
차 일 동								○	-----	1978 승계, 1988 전출 (⑫)
문 인 섭			○					○		1956, 1981 승계 (⑬)
이 규 학			○							1955 승계 (⑨)

표 2 - 2 (계속)

가 구 주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비 고
이 규 인										1982 승계 (23)
										1963 분가 (12)
배 인 성										1972 승계 (21)
배 명 옥										1968 사망, 단절
김 갑 순										1949 전출
서 우 선										1957 전출
서 영 인										1947 승계 (20)
										1971 분가 (8)
										1971 분가 1977 전출
조 기 득										1960 승계 (17)
										1962 분가 (4)
박 원 일										1973 전출
김 용 출										1977 전입 (33)
김 창 국										1986 전입 1987 전출 (35)
신 현 창										1988 전입 (36)
홍 인 덕										1946 전입 1984 전출
차 용 권										1972 전입 (5)
남 윤 희										1985 전입 (14)
윤 정 원										1957 전입 (24)
김 점 순										1952 전입 1977 승계 (28)
이 욱 손										1967 전입 1982 전출
이 ○ ○										1982 전입 1985 전출

* 비고란의 번호는 현재의 가구번호임.

표 2 - 3 전출입가구의 계층구분, 1945~85

구 분			전 입 1)		전 출 2)	
자	작	농 3)	2	(25.0)	0	(-)
자	소	작	3	(37.5)	9	(75.0)
소	작	농	2	(25.0)	2	(16.7)
농	업	노 동 자	0	(-)	1	(8.3)
비	농	가	1	(12.5)	0	(-)
계			8	(100.0)	12	(100.0)

1) 현재의 구분, 전입후 재전출 가구는 전출시 계층.

2) 전출시 계층.

3) 자작지 3,000평 이상 또는 경종외 농가.

1945~85년간 전입, 또는 전출한 가구의 계층구조는 <표2-3>과 같다. 전출가구는 대부분 소유규모가 영세한 자소작층에 속하며, 소작농, 농업노동자도 있어 경제적이 열악한 가구가 집중적으로 이촌하였음을 보인다. 전입가구는 계층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이 중 자소작 1호와 소작농 2호는 다시 이촌하였다.

조사가 시작된 후인 1985년말 이후에는 2호가 전입해 들어오고 3호가 전출하여 1호가 감소하였다. 전입가구중 1호는 마을에서 땅을 임차하여 경제작물을 하기 위해 들어왔으나 임차지를 얻지 못하고 이웃 화관리의 정미소에서 머슴을 살다(새경 월 쌀 2.5가마) 이듬해 다시 부여읍으로 이촌하였다. 또 한 전입가구는 금산 사람으로 마을부근에서 1985년부터 대규모로 농지를 임차하여 인삼농사를 짓다가 88년에는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였다. 금산의 소유지는 모두 임대해 주고 자식들은 대전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현재 경작규모는 42,700평으로 당분간 마을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출가구중 1호는 자녀교육 때문에 이촌하였고 1호는 거주지만 옆 마을로 옮긴 경우다 1985년 이후의 전출입가구 내용은 <표2-4>, <표2-5>와 같다.

송국 2리의 가구구성을 보면 <표2-6>과 같이 대부분이 농가로 그 동질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 마을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형적인 농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기회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가구구성은 1985~88년도 사이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중 가구성격이 변한 가구는 1호에 불과한데 이 가구는 1985~6년에는 농사를 지었으나 1987~8년에는 경영주가 주로 서울에 출타

하여 비농업 (건축노동)에 종사하였고 마을에는 노모 (76세)만 남아 집을 지켰다(농지는 임대). 그러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경영주 부인이 귀향하여 89년부터는 농사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다.

표 2 - 4 전입가구

연 도	가구번호	경영주 연 령	경지소유 (평)	전 입 전 거 주 지	전 입 전 직 업	전 입 이 유	비 고
1986	35	31	0	부여 세도면	농업노동	영농(임차, 경제작물)	1987 전출
1988	36	41	11,200	금 산	농 업	영농 (인삼)	

표 2 - 5 전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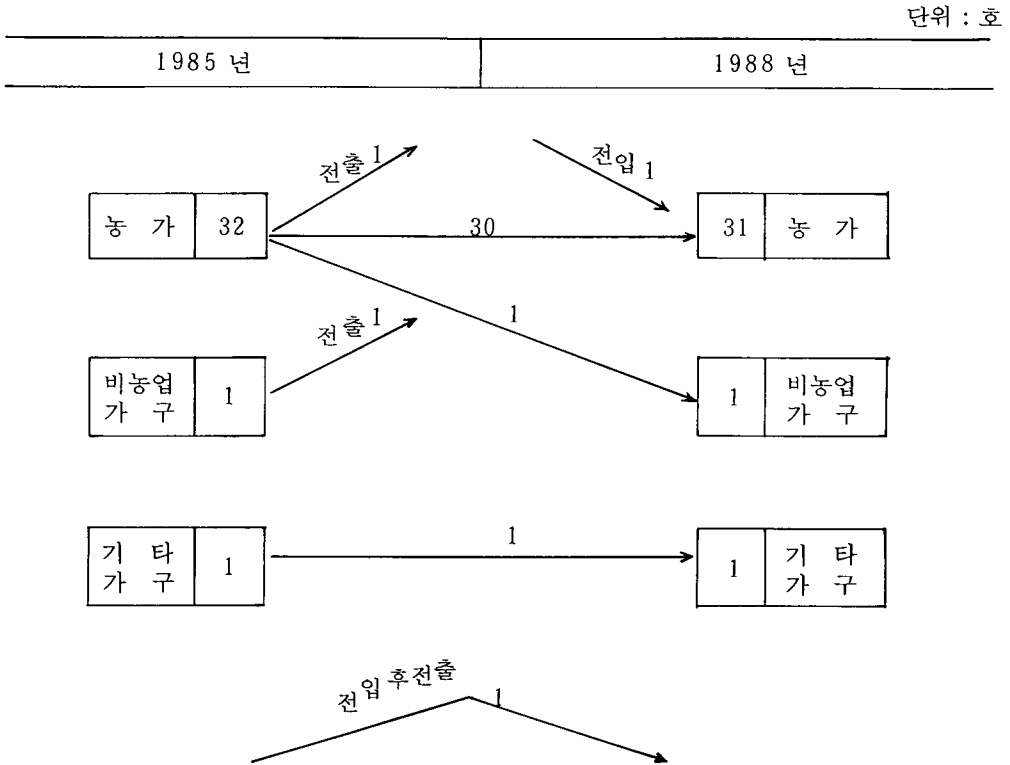
연 도	가구번호	경영주 연 령	경지소유 (평)	전 출 지	전 출 후 직 업	전 출 이 유	비 고
1986	34	44	4,100	논 산 읍	공 무 원	자 녀 교 육	1986 전입 가구
1987	35	32	0	부 여 읍	날품노동	생 활 곤 란	
1988	2	27	5,250	소 사 리 (이웃마을)	농 업	단순 주거이전	

표 2 - 6 가구구성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5/88 증감
농 가	32 (94.1)	32 (94.1)	31 (93.9)	31 (93.9)	△ 1
비 농 가	2 (5.9)	2 (5.9)	2 (6.1)	2 (6.1)	-
임 대 농					-
농업노동자		1			-
비농업가구	1		1	1	-
기 타	1	1	1	1	-
계	34 (100.0)	34 (100.0)	33 (100.0)	33 (100.0)	△ 1

표 2 - 7 가구성격의 변화



2. 인 구

송국 2리의 1988년말 현재 인구수는 113명이다. 해방 당시의 인구는 호당 가구원수가 6~7명으로 200명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행정구역의 변경, 통계상 가구원정의의 차이 때문에 행정자료를 통한 인구변화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분석에서는 1985~88년 사이의 인구변화와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가. 인구수 및 구성

연도말 기준으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변화는 <표2-8>과 같다. 3년간 총 인구는 140명에서 113명으로 27명의 큰 감소(연평균 6.9%의 감소율)를 보이고 있으며, 노령화도 계속 진전되고 있음을 보인다. 연령대별 인구감소는 특히 0~4세와 25~34세에서 가장 심하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 육성기간이 끝나고 직업에 정착하는 20대 후반에서 농촌에 잔류하여 농사를 계승하는 영농후계자 세대가 없으며 그 결

과 출생율이 매우 낮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30대 후반부터의 연령대별 인구는 절대수에 있어 별 변동이 없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와 관련된 각종 지표의 변화는 < 표 2-9 > 와 같다. 노년인구부양비는 15.9에서 18.2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6.8의 2배 이상일 뿐 아니라 面部의 농촌 평균보다 높다. 이것은 마을에 비농업 취업기회가 없어 젊은 층의 이촌이 평균적 농촌보다 심하였음을 시사한다. 소년인구부양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약간 감소하는 추세다. 이것은 특히 0~4세 사이의 인구감소, 즉 출생율의 저하와 관련된다.

표 2-8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명(%)

구 분	1985			1988			85/88 증 감		
	남	여	계 (%)	남	여	계 (%)	남	여	계
0 ~ 4	6	3	9 (6.4)	1	1	2 (1.8)	△ 5	△ 2	△ 7
5 ~ 9	11	8	19 (13.6)	13	4	17 (15.0)	2	△ 4	△ 2
10 ~ 14	10	7	17 (12.1)	8	8	16 (14.2)	△ 2	1	△ 1
15 ~ 19	3	6	9 (6.4)	3	3	6 (5.3)	0	△ 3	△ 3
20 ~ 24	3	3	6 (4.3)	4	1	5 (4.4)	1	△ 2	△ 1
25 ~ 29	4	6	10 (7.1)	2	1	3 (2.7)	△ 2	△ 5	△ 7
30 ~ 34	2	5	7 (5.0)	1	3	4 (3.5)	△ 1	△ 2	△ 3
35 ~ 39	5	1	6 (4.3)	2	4	6 (5.3)	△ 3	3	0
40 ~ 44	3	3	6 (4.3)	6	2	8 (7.1)	3	△ 1	2
45 ~ 49	3	5	8 (5.7)	1	3	4 (3.5)	△ 2	△ 2	△ 4
50 ~ 54	5	6	11 (7.9)	4	7	11 (9.7)	△ 1	1	0
55 ~ 59	6	5	11 (7.9)	5	4	9 (8.0)	△ 1	△ 1	△ 2
60 ~ 64	4	4	8 (5.7)	3	7	10 (8.8)	△ 1	3	2
65 ~ 69	3	3	6 (4.3)	2	2	4 (3.5)	△ 1	△ 1	△ 2
70 ~ 74	0	4	4 (2.9)	2	2	4 (3.5)	2	△ 2	0
75 세 이상	1	2	3 (2.1)	0	4	4 (3.5)	△ 1	2	1
계	69	71	140 (100.0)	57	56	113 (100.0)	△ 12	△ 15	△ 27
50 세 이상	19	24	43 (30.7)	6	26	42 (37.2)	△ 3	2	△ 1

그림 2 - 2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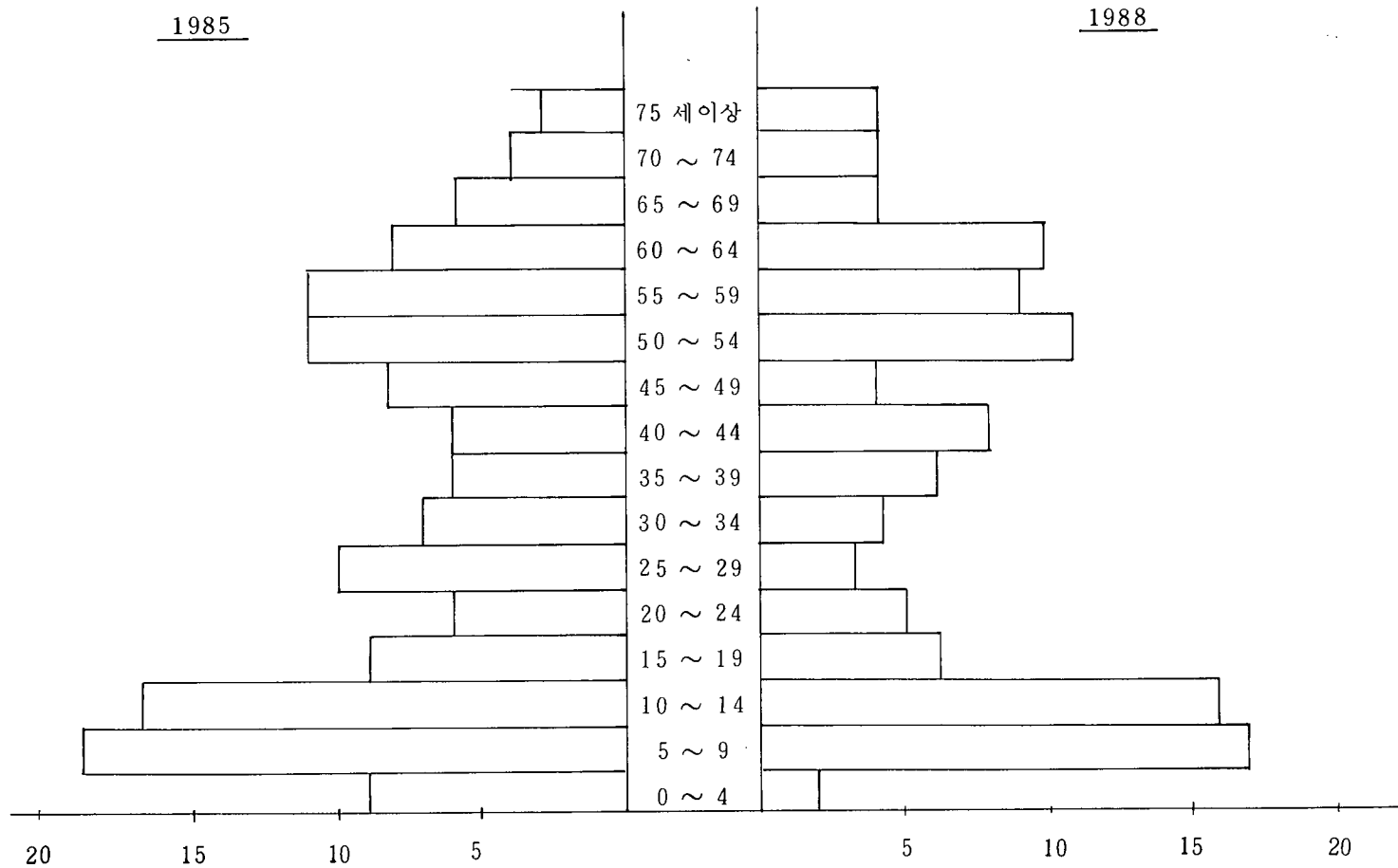


표 2 - 9. 주요 인구지표

구 분	1985	1988	전 국 1)	농 촌 2)
성 비 3)	97.2	101.8	100.2	102.7
노년인구부양비 4)	15.9	18.2	6.8	12.5
소년인구부양비 5)	54.9	53.0	47.3	48.3
총 부양인구비 6)	70.7	71.2	54.1	60.9
노령화지수 7)	28.9	34.3	14.5	25.9
모 아 비 8)	31.0	11.8	33.4	35.1

1)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경제기획원. 에 의해 작성.

2) 면부인구를 기준으로 계산, 1985.

3) 성 비 $= (\text{남성인구} / \text{여성인구}) \times 100$

4) 노년인구부양비 $= (65\text{세이상 인구} / 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5) 소년인구부양비 $= (0 \sim 14\text{세 인구} / 15 \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6) 총 부양인구비 $= \text{노년인구부양비} + \text{소년인구부양비}$

7) 노령화지수 $= (0 \sim 4\text{세 인구} / 15 \sim 49\text{세 여성인구}) \times 100$

8) 모 아 비 $= (65\text{세이상 인구} / 0 \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나. 인구증감의 요인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원인은 인구증감의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송곡 2리에서의 인구변화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1985 ~ 88년 기간중 사망에 의한 감소가 10명인 반면 출생은 2명에 불과해 자연감소는 8명이다. 이는 총 인구 감소 27명의 27.6%에 달한다. 한편 3년간 전출이 48명, 전입이 29명으로 사회적 감소는 19명이다. 산업화에 따른 주민의 전출이 많은 것은 예상된 현상이지만 전입해온 사람도 29명으로 적지 않은 것이 특이할 만한 현상이다. 즉 1988년 인구를 기준으로 볼때 25.7%의 인구가 3년 사이의 전입자(물론 이중에 상당수는 마을 출

표 2-10 인구증감의 내용

단위 : 명

구 분		1985/86	1986/87	1987/88	1985/88
사 회 적 증 감	전 입 (a)	15	4	10	29
	전 출 (b)	11	18	19	48
	순 증 감 (a-b)	4	△ 14	△ 9	△ 19
자 연 증 감	출 생 (c)	0	1	1	2
	사 망 (d)	1	5	4	10
	순 증 감 (c-d)	△ 1	△ 4	△ 3	△ 8
총 증 감		3	△ 18	△ 12	△ 27

신이다)인 것이다.

그러면 마을에 전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인가? <표 2-11>은 영농목적의 전입자가 5명(17.2%)에 불과하고 그것도 영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35번 가구는 전입후 1년만에 다시 이촌하였고 36번 가구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점은 도시출타자녀의 취업의 불안정성, 취업조건의 열악성의 한 측면을 전출입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에서 취업하여 있다가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어 계속 외지에 머무는 것이 곤란하여 임시로 고향에 찾아와 생활을 해결하러 들어온 사람이 3년간 5명(가족 2명 별도)이나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에서 결혼하여 생활하다 주부의 취업으로 아동양육을 농촌의 부모에 맡긴 사례(20, 24번 가구)도 나타나고 있다. 또 자식이나 친척 등에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 전입한 사람도 4명으로 경제활동(영농등)을 목적으로 한 사례는 소수이다. 전체적으로는 전입자 29명중 15명(51.7%)이 조사기간중 다시 전출하였고 또 가까운 시일내에 전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특징이다. 전입자의 연령은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이들의 도시취업이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이밖에 10세 미만은 부모를 따라 왔거나 조부모에 의탁된 경우고, 60세 이상은 노령으로 자식에 의탁한 경우다.

한편, 1985~88년간의 총 전출자는 48명이다. 이중 가구전출이 2호(10명), 분가전출이 1호(3명)이며 단신전출이 35명이다. 가구 또는 분가전출의 경영주 외의

표 2-11 전입자 개황, 1985~88

가구 번호	경영주 의 관	성	연령	전 입 전		전 입 이 유	전입 연도	비 고
				직 업	거주지			
7	형 수	여	67	무		남편 사별, 시동생의탁	86	
9	아 들	남	21	학 생	서 울	군복무(방위)	87	
	딸	여	18	"	논 산	집에서 통학기로	86	대학진학으로 '87. 전출
	아 들	남	28	회사원	서 울	실직	86	'87.취업·결혼·전출
12	아 들	남	24	공 원	"	영농(모 사망)	88	
	아 들	남	20	"	"	실직	86	'88.취업 전출
16	모	여	78	무	이 리	가사(며느리 사망)	88	
17	딸	여	21	공 원	인 천	부친 병간호	87	'88.출가
20	손 자	남	2	무	서 울	부모취업, 조부위탁	87	'88.전출
21	부	남	70	"	이웃마을	자녀의탁	88	
	모	여	66	"	"	"	88	
	동 생	남	26	회사원	서 울	실 직	86	'88.결혼·취업·전출
23	아 들	남	20	학 생	대 전	취업대기	86	'88.취업 전출
24	손 자	남	9	"	서 울	부모취업, 조부위탁	88	
	"	남	6	무	"	"	88	
25	처	여	49	"	"	가사, 영농	87	
29	아 들	남	31	회사원	인 천	실직, 임시거주	86	'87.부여, 취업 전출
	며느리	여	27	무	"		"	"
	손 자	남	1	"	"		"	"
30	며느리	여	22	"	부 여	결 혼	88	
31	처	여	24	"		"	86	
35	경영주	남	31	노 동	서 울	영농(농업노동)	86	'87.전출
	처	여	29	무	"		"	"
	아 들	남	8	학 생	"		"	"
	"	남	7	무	"		"	"
	딸	여	4	"	"		"	"
36	경영주	남	41	농 업	금 산	영농(인삼재배)	88	'85부터 영농
	처	여	35	"	"	"	"	'88에 주민등록 이전
	조 카	남	25	"	"	"	"	

표 2 - 12 전입자의 성별 · 연령별 분포, 1985~88

단위 : 명 (%)

구 분	남	여	계
0 ~ 9 세	6	1	7 (24.1)
10 ~ 19	0	1	1 (3.4)
20 ~ 29	7	5	12 (41.4)
30 ~ 39	2	1	3 (10.3)
40 ~ 49	1	1	2 (6.9)
50 ~ 59	0	0	0 (-)
60 세 이상	1	3	4 (13.8)
계	17	12	29 (100.0)

가구원 10 명을 제외하고 총 38 명의 전출사유를 보면 <표 2 - 13> 과 같다. 전출자의 대부분은 취업 목적이었으며, 도시로 유학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6 명, 출가(여자)가 5 명이였다. 이밖에 영농을 계속하면서 이웃마을로 전출한 사람이 1 명(가구전출), 도시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하기 위한 경우가 2 명, 젊은 주부의 가출이 1 명, 도시자녀의 살림을 보살피 주러 나간 경우가 1 명이며, 돈벌러 도시로 나간 부모를 나중에 따라간 아동도 1 명 포함되어 있다. 전출자의 연령은 10 대와 20 대가 주를 이루어 마을의 인구 구성과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인구 노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령대 별 전출인구비율은 <표 2 - 14 > 와 같다.

전출지역은 목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취업을 위해 출타한 사람은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 도시로 나간 경우가 대부분(21 명 중 16 명)이며 취학출타자는 대전, 공주, 논산 등 도내지역, 그리고 기타목적의 전출자(가구 이촌의 경우 일반가구원 포함)는 군내에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표 2 - 13 전출목적, 1985~88

구 분	인 원	(%)
취 업	21	(55.3)
취 학	6	(15.8)
출 가	5	(13.2)
기 타	6	(15.8)
계	38	(100.0)

한편 1985~88년중 인구의 자연증감을 보면 사망 10명, 출생이 2명으로 평균 조출산율(인구 1,000명당 출생인구)이 4.8, 조사망율이 23.8로 전국 평균 16.5와 5.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조출산율이 낮은 것은 젊은 가임부부가 적은 때문이고, 사망율이 높은 것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지만 지난 3년간에는 젊은층의 사망이 많았던 것이 작용하였다. 총 10명의 사망자중 65세 미만의 병사가 6명으로 이 중에는 40대가 2명, 50대 1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4 전출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1985~88

				단위 : 명 (%)
구 분	남	여	계	'85년 기준 전출율
0 ~ 9	4	3	7 (14.6)	25.0
10 ~ 19	4	9	13 (27.1)	50.0
20 ~ 29	10	9	19 (39.6)	118.8
30 ~ 39	2	2	4 (8.3)	30.8
40 ~ 49	1	0	1 (2.1)	7.1
50 ~ 59	0	0	0 (—)	—
60 세 이상	2	2	4 (8.3)	19.0
계	23	25	48 (100.3)	34.3

표 2-15 전출목적에 따른 전출지역, 1985~88

					단위 : 명 (%)
구 분	취 업	취 학	출 가	기 타	계
군 내	2			13	15 (31.3)
도 내 도 시	2	3	1		6 (12.5)
도 내 농 촌	1	3	1		5 (10.4)
서 울	11			2	13 (27.1)
도 외 농 촌	0		1		1 (2.1)
도 외 도 시	5		2		7 (14.6)
기 타	0			1	1 (2.1)
계	21	6	5	16	48 (100.0)

3)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1989)의 1989년 통계.

이상과 같은 인구구조와 변동을 감안할 때 송국 2리의 인구는 낮은 출산력, 높은 사망율, 그리고 증가하는 전출인구로 인해서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

3. 가족구조

가. 가족형태

가족원의 이혼은 농촌가구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 특히 이혼 현상이 젊은 자녀세대에 집중됨으로써 노령화와 함께 가족형태의 변질이 수반되고 있다. 노인 단신가구나 노령부부가족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현상이다.

가구당 가구원수는 1985 ~ 88년간 4.06명에서 3.39명으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 가구의 가구원수는 2 ~ 4명으로 4인 이하가 78.8%에 달하고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 표 2-17 > 과 같다. 이 마을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핵가족으로의 진전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직계가족의 비중이 약간 늘고 있다. 이는 이미 핵가족화가 충분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계가족이라 하여도 그 정상적 형태인 F형은 7호로 감소하였으며, 재혼 조부모가 도시로 출타한 자식의 아이를 임시로 맡아 길러 주는 H형이 증가하고 있다. 직계가족 11호중 3세대가 같이 살고

표 2-16 가구원수별 가구

가 구 원 수	단위 : 호 (%)			
	1985	1986	1987	1988
1	2 (5.9)	1	3	3 (9.1)
2	7 (20.6)	7	5	10 (30.3)
3	5 (14.7)	6	7	5 (15.2)
4	8 (23.5)	5	8	8 (24.2)
5	4 (11.8)	6	4	3 (9.1)
6	4 (11.8)	4	3	2 (6.1)
7	1 (2.9)	4	3	1 (3.0)
8	3 (8.8)	1	0	1 (3.0)
계	34 (100.0)	34	33	33 (100.0)
평균가구원수	4.06	4.21	3.79	3.39

표 2-17 가족형태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핵가족	단신가구(A)	2 (5.9)	1	3	3 (9.1)
	부부(B)	6 (17.6)	9	5	10 (30.3)
	부부+자녀(C)	12 (35.3)	12	12	7 (21.2)
	편부부+자녀(D)	3 (8.8)	0	3	2 (6.1)
	소 계	23 (67.6)	22	23	22 (66.7)
직계가족	(편) 부모+ 부부+(자녀)(F)	9 (26.5)	9	7	7 (21.2)
	(편) 부모+편부부+(자녀)(G)	0 (-)	0	0	1 (3.0)
	(편) 부부+손자녀(H)	1 (2.9)	1	3	3 (9.1)
	소 계	10 (29.4)	10	10	11 (33.3)
확대가족	가족(I)	0 (-)	1	0	0 (-)
	타(J)	1 (2.9)	1	0	0 (-)
계		34 (100.0)	34	33	33 (100.0)

표 2-18 경영주 연령별 가족형태, 1988

단위 : 호

구 분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세 이상
핵가족	A	형				1	1	1
	B	형			1	4	5	
	C	형		2	3	2		
	D	형		1	1			
직계가족	F	형	1		3	2		1
	G	형			1			
	H	형				2	1	
계			1	3	9	11	7	2

있는 경우가 6호로 나머지 5호는 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노동능력을 가진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는 1호(12번 가구)에 불과하다. 현재 마을에서父子관계의 가구가 2경우(6번과 16번 가구, 19번과 27번 가구)나 있어 부모가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식이 분가하여 별도의 가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즉 이념형으로서도 직계가족이 쇠퇴하고 핵가족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핵가족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있는 C형은 7호에 불과하고 노령부부만으로 이루어진 B형, 부부 한쪽이 없는 D형, A형이 늘고 있어 가족구조의 취약성을 말해준다.

A형은 모두 여성 단신가구이다. 이중 70대인 1호(33호)는 소득이 없이 출타 자녀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2호는 각각 1,000평, 2,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영세농이다.

나. 가족분산과 출타가족의 실태

농촌가구의 젊은 자녀층은 도시지역에서 증대되는 취업기회, 또는 근대적 교육을 받기 위해 이촌하며, 그 결과 농촌가족은 도시로 나간 미혼자녀의 가구(도시분가)와 농촌본가로 장소적으로 분리된다. 농촌본가와 도시분가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특히 취학이촌자는 거의 전적으로 본가에 생활비, 교육비 등을 의존하여 농가의 가계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취업자녀의 경우에는 본가에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동생들의 교육비—특히 출타취학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정착과정에서 주택전세금,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실직상태에서 생활비 보조를 받기도 한다.

송국 2리도 부근에 비농업 취업기회가 적고 고등학교부터는 통학이 어려워 비교적 가족분산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출타자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이미 가족분산이 최대수준으로 심화되어 있음을 함축

표 2-19 가족분산현황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가족당 가구 수	1	가 구	9	9	10	9
	2	가 구	15	16	15	13
	3	가 구	9	6	5	7
	4	가 구	1	2	3	4
	5	가 구		1		
총 호 수 (A)			34	34	33	33
출타자 있는 호수 (B)			25	25	23	24
B / A (%)			73.5	73.5	69.7	72.7
총 출 타 자 수			56	50	46	48
호당 평균 출타자수			1.65	1.47	1.39	1.45

하며, 신규이촌자가 점차 감소하고 (자녀세대의 절대수 감소) 이미 출타한 자녀는 분가하여 독립하기 때문으로 표면적 분산도는 앞으로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988년 현재 총출타자 48명중 31명이 취업을 위해, 13명이 취학을 위해 출타하고 있다. 특히 취학출타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생 수의 감소 때문이며 마을의 연령별 인구구조상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타자의 연령은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성별도는 남자가 60%내외로 약간 많은데 이는 여자의 결혼연령이 남자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타지역은 취업목적인 경우 서울과 그 주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업목적인 경우에는 대전, 공주, 논산등 도내지역이 주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가족원의 부분적 이촌은 바로 가족구조의 취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농가의

표 2-20 출타목적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취 업	32 (57.1)	34	30	31 (64.6)
취 학	20 (35.7)	13	13	13 (27.1)
군 복 무	3 (5.4)	1	2	2 (4.2)
기 타	1 (1.8)	2	1	2 (4.2)
계	56 (100.0)	50	46	48 (100.0)

표 2-21 출타자의 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0 ~ 9	0 (-)	0	0	0 (-)
10 ~ 19	17 (30.4)	14	16	17 (35.4)
20 ~ 29	36 (64.3)	31	25	26 (54.2)
30 ~ 39	1 (1.8)	3	3	5 (10.4)
40 ~ 49	1 (1.8)	1	1	0 (-)
50 ~ 59	1 (1.8)	1	1	0 (-)
60 세이 상	0 (-)	0	0	0 (-)
계	56 (100.0)	50	46	48 (100.0)

표 2-22 출타지역

단위 : 명

	1985		1986		1987		1988	
	취업	취학	취업	취학	취업	취학	취업	취학
군 내	1	0	1	0	1	1	0	0
도 내 도시	1	8	1	7	0	5	1	6
·도 내 농촌	2	5	1	2	0	2	1	2
서 울	20	5	21	4	17	2	18	2
타 도 농촌	1	0	0	0	1	0	1	0
타 도 도시	5	2	9	0	10	3	10	3
기 타	2	0	1	0	1	0	0	0
계	32	20	34	13	30	13	31	13

표 2-23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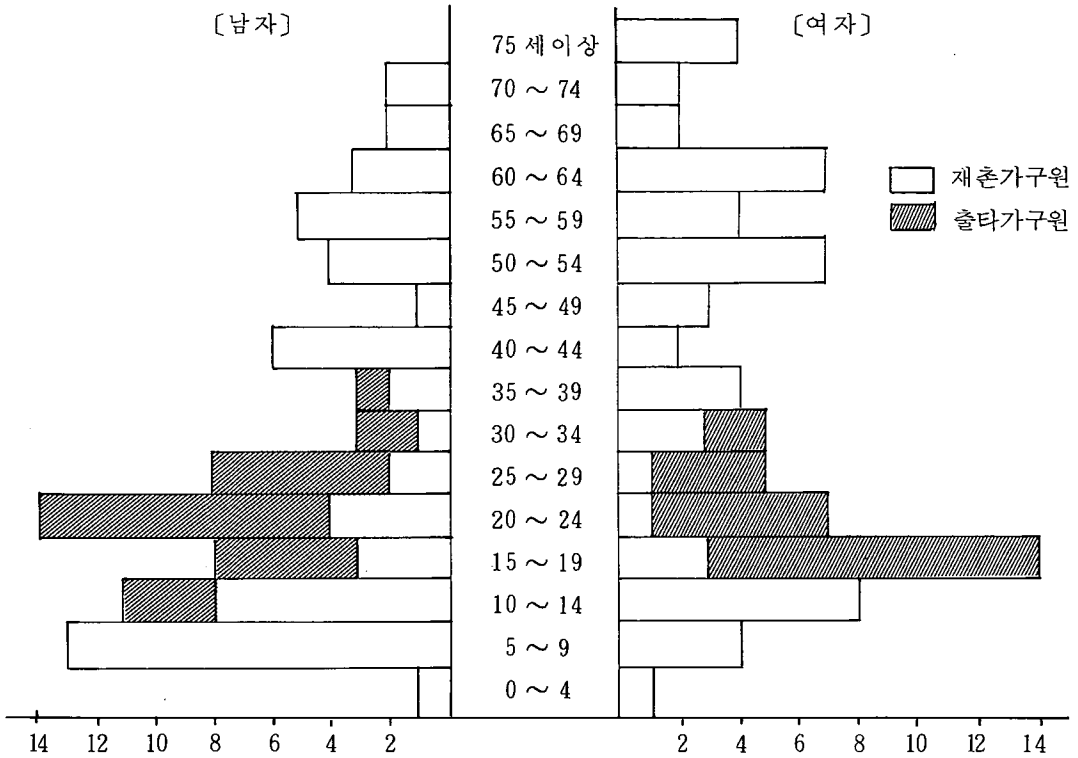
단위 : 호

전가족 재출 가족	단 신 (A)	부 부 (B)	부부 +자녀 (C)	편 부모 +자녀 (D)	(원)부모+ 부부+(자녀) (F)	(원)부모 +손자녀 (H)	계
A	1			2			3
B			5				5
C			12				12
D				3			3
F					7		7
H					2	1	3
계	1	0	17	5	9	1	33

노동력구조 및 그 이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온다. <표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호의 가구가 부분이촌으로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영주들은 모두 50대 이상(50대 7명, 60대 2명)일 뿐만 아니라 D→A형, F→H형으로 바뀐 4호는 모두 여성경영주 가구로 상업적, 과학적 영농을 담당할 경영능력이나 노동력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자녀세대의 이촌은 농가경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가구원의 출타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본 것이 <그림 2-3>이다. 정상적 인구 피라미트 형태인 다이아몬드형 또는 종형과 비교해 볼때 30~40대의 인구가 적은 것은

그림 2 - 3 부분이촌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 1988



가구이촌 (또는 이촌하여 새로운 가구 형성)의 영향이고 20대가 적은 것은 부분이촌의 영향이다.

다. 동족구성

송국 2리의 성 (姓)씨 구성을 보면 경주李씨를 제외하면 各姓부락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내에 11호가 거주하고 있는 경주 이씨는 현거주인 (鍾자 항렬)의 10대조가 임진왜란중 산학골로 이주해 온 것으로 증언되어 가장 오래 거주한 씨족으로 보인다. 이들은 마을내에서 대대로 班族으로 행세해 왔으며 비교적 경제력도 강하고 현재도 마을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⁴⁾

4) 해방당시의 토지소유계층에 대해서는 3장 1절, 그리고 중증등 동족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4장을 참조.

경주 이씨 외에도 扶餘 徐씨와 漢陽 趙씨가 각각 3호씩으로 세력을 형성하며 班層으로 행세해 왔고 나머지 17호는 모두 各姓이다.

이중 全州 李씨 1호(30번 가구)는 현재도 논 6,100평을 소유하고 있는 대농으로 해방 당시 120마지기를 소유한 지주의 아들이다. 이 집안은 농지개혁을 통하여 그 경제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조건에 적응이 되지 않아 현재 마을에서의 위세는 거의 없는 편이다.

제 3 장

경제활동구조

1. 경지소유 및 이용

가. 역사적 배경

송국 2리는 현재 비교적 경지소유규모가 고르게 분포된 자작 중심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농지개혁전에는 뚜렷한 지주-소작 관계로 극심한 불균등상태에 있었다. 총 농가 31 호중 지주는 1 호에 불과하고, 자작 겸 소작이 3 호, 나머지중 26 호는 논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순소작농이었고 (이중 6 호는 200 ~ 800 평의 밭을 소유), 1 호는 머슴 상태에 있었다.¹⁾

당시 마을 주민이 경작한 농지는 모두 82,300 평 (논 72,800 평, 밭 9,500 평) 으로 이중 자작지는 논 7,400 평, 밭 4,400 평에 불과해 소작지율은 85.7 %에 달하였다. 마을내의 유일한 지주 李重翼은 이웃 부락인 추양리에서 분가해 왔으며 분가 당시 60 마지기의 논을 상속받아 120 마지기까지 늘렸다고 한다. 이규봉은 4,000 평의 자작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논산 지주 조성환의 마름을 하였다. 이외에 이중익의 조카인 이보환이 대지주였는데 그는 추양리에 거주하였다.

마을내 소작지의 지주별 소유분포는 <표 3 -2> 와 같다. 조성환과 이보환의 땅이

1) 이하의 가구별 농지소유관계는 조기영씨 등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표 3 - 1 1945년 전후의 농지소유구조

단위 : 평

가구 번호	경 영 주	계층구분	소 유 지		임 대 지		임 차 지		경 작 지		비 고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1	이 중익	지 주	24,000	2,500	24,000	1,000				1,500	
2	이 규봉	자소작	4,000				6,000		10,000		논산지주 조성환의 마름
3	이 규학	자소작	2,000	600			3,000		5,000	600	조성환
4	조기 형	자소작	1,400				4,000		5,400		지주 : 척 식 (1,000) 이보환 (3,000)
5	김 인복	소 작					2,000		2,000		척식 (1,000), 이보환 (1,000)
6	윤복순	"					1,200	1,500	1,200	1,500	척식 (1,200), 종토 (1,500)
7	이 화익	"					600		600		조성환
8	윤광순	"					1,000	300	1,000	300	이중익 (1,000), 종토 (300)
9	구학용	"					1,000		1,000		이보환
10	김용복	"		400			2,000		2,000	400	조성환
11	이종석	"					4,000	800	4,000	800	이보환 (1,000), 이중익 (800)
12	서기석	"					3,000		3,000		척식 (1,400), 이보환 (1,600)
13	박병일	"					3,000		3,000		이보환 (1,000), 조성환 (2,000)
14	노부암	"					3,000	600	3,000	600	이중익 (2,600), 이보환 (1,000)
15	이규손	"					4,000		4,000		조성환
16	송갑봉	"		200			1,000		1,000	200	이보환

표 3 - 1 (계속)

가구 번호	경영주	계층구분	소유지		임대지		임차지		경작지		비 (지주) 고
			논	밭	논	밭	논	밭	논	밭	
17	김영록	소작					3,000		3,000		이보환(2,000), 조성환(1,000)
18	노차암	"					3,000	200	3,000	200	이중익
19	조기천	"					1,400	300	1,400	300	조성환
20	박태복	"					1,400		1,400		이보환
21	이보상	"					1,200		1,200		이보환
22	차일동	"		800			3,000		3,000	800	이보환
23	문인석	"		300			3,000		3,000	300	조성환(2,000) 한양 조씨 종답(1,000)
24	이규인	"					2,000		2,000		이보환(600), 척식(1,400)
25	배인성	"					1,000		1,000		조성환(600), 이중익(400)
26	김갑순	머슴									
27	서우선	소작		300			1,000		1,000		이보환(400), 척식(600)
28	서영인	"					1,000		1,000		이중익
29	배병옥	"					3,000	1,400	3,000	1,400	이보환
30	조기덕	"		300			600		600	300	윤기병
31	박원일	"					2,000		2,000		조성환(1,000), 이보환(1,000)
계	-	-	31.400	5,400	24,000	1,000	65,400	5,100	72,800	9,500	

가장 많았으며, 마을내 지주인 이중익은 소유지 26,500평중 마을사람에 임대해 준 것은 9,000평(34%)이고 나머지는 타부락 사람에게 소작을 주었다.

1950년의 농지개혁으로 마을의 농지가 비교적 대량으로 분배됨으로써 마을의 이러한 계층구조는 타파되었다. 척식회사의 소유지는 그 이전에 미군정의 귀속농지불하시에 경작권자에게 이미 분배되었지만, 농지개혁시에도 28가구에 55,400평이 분배되었다. 즉 양차에 걸쳐 29가구가 61,400평, 가구당 2,117평을 분배받아 일단 자작농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농지를 분배받지 못한 사람은 당시 머슴으로 있던 1가구 뿐이었으며, 경작권을 가진 사람에 분배되었다. 반면 이중익은 소유지 26,500평중 11,200평을 분배당하였는데 이중 5,200평은 마을사람들에(4호), 6,000평은 타부락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표 3 - 2 소작지의 지주별 소유분포, 1945

단위 : 명(%)

지 주	논	밭	계
이 중 익 (마을내)	7,400	1,600	9,000 (12.8)
조 성 환 (논 산)	24,600	300	24,900 (35.3)
이 보 환 (추양리)	26,600	1,400	28,000 (39.7)
척 식 회 사	5,200	0	5,200 (7.4)
윤 기 병 (광 석)	600	0	600 (0.9)
총 토	1,000	1,800	2,800 (4.0)
계	65,400	5,100	70,500 (100.0)

나. 농지소유구조

마을내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농지소유계층은 <표 3 - 3>과 같다.²⁾ 0.5~1.0ha를 소유한 가구가 4호로 비교적 적고, 1.0~1.5ha층의 농가가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른 소유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경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4호(이중 1호는 비농가)에 불과하다. 1985~88년간에는 전출입가구를 제외하면 4호에서 규모계층의 변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마을내의 농가계층간 농지소유분포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비농가와 외지에 농지

2) 가구별 자료는 부록 1 참조.

표 3 - 3 농지소유규모계층의 변화

단위 : 호

구 분	1985	1988
무 경 지	4	4
0.5 ha미만	9	9
0.5 ~ 1.0	4	4
1.0 ~ 1.5	13 ¹⁾	11
1.5 ~ 2.0	1	2
2.0 ha이상	3	3
계	34	33

1) 1 호는 농지구입으로 계층상승후 옆마을로 이주.

2) 이 가구의 소유지는 원 거주지인 충남 금산에 있음.

를 소유한 농가를 제외하고 계층간 점유비율을 보면, 1.0 ~ 1.5 ha 층의 농가가 호수에서나 농지점유율에서 중심이 되어 있다. 한편 2.0 ha이상층은 2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소유규모도 각각 6,920 평, 6,100 평에 불과하다. 송국 2리에서 농지소유의 계층간 분화현상은 상대적으로 덜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 4 농지소유구조

단위 : 호, 평

구 분	1985			1988		
	호 수 (%)	총 면 적 (%)	호당평균 면 적	호 수 (%)	총 면 적 (%)	호당평균 면 적
무 경 지	3 (9.4)	0 (-)	0	3 (10.0)	0 (-)	0
0.5ha 미만	9 (28.1)	7,308 (8.9)	812	9 (30.0)	7,640 (10.1)	849
0.5~1.0	4 (12.5)	7,300 (8.9)	1,825	3 (10.0)	5,300 (7.0)	1,767
1.0~1.5	12 (37.5)	42,471 (51.9)	3,539	11 (36.7)	38,531 (51.1)	3,503
1.5~2.0	1 (3.1)	5,200 (6.4)	5,200	2 (6.7)	10,940 (14.5)	5,470
2.0ha 이상	3 (9.4)	19,570 (23.9)	6,523	2 ¹⁾ (6.7)	13,020 (17.3)	6,510
계	32 (100.0)	81,849 (100.0)	2,558	30 (100.0)	75,431 (100.0)	2,433

1) 외지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 1 호 제외.

표 3 - 5 농지소유 변동가구의 개황, 1985~88

가구 번호	경영주령 (변동시)	소유면적(평)		증감 구분	변동 연도	비 고
		변동전	변동후			
1	39	4,490	5,190	증가	1986	논 700 평 구입, 농외소득(관정굴착 등)
2	25	3,450	5,250	증가	1986	논 1,800 평 구입, 소비수요 낮음. 그동안 저축 농협차입(250 만원)으로 채원 일부 충당, 1988. 옆마을로 이주
9	53	6,550	5,750	감소	1986	논 800 평 판매, 교육비(200 만원), 주택건축 (400 만원)에 사용.
12	49	1,100	0	감소	1986	교육비 부채 상환을 위해 전농지 판매,
12	51	0	1,490	증가	1988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구입.
13	35	778	400	감소	1988	도시에 나간 동생 사업자금으로 줌(275 만원)
14	37	500	1,100	증가	1986	밭 600 평 구입, 양돈 수입(80 두 정도)
16	42	5,200	4,000	감소	1986	논 1,200 평 판매, 병원비
17	56	1,180	900	감소	1987	밭 280 평 판매(103 만원), 병원비

1985~88년간 경지소유면적에 변동이 있는 가구는 <표 3-5>와 같다. 농지를 구입하여 규모를 확대한 농가가 3호, 판매로 감소한 가구가 4호, 판매후 다시 구입한 가구가 1호이다. 구입농가의 자금은 농업소득이 2건, 농외소득 1건, 농지구입자금 대출이 1건이며, 판매이유로는 병원비 2건, 교육비등 가계자금이 2건이고 분가형제에 대한 지원이 1건 있다. 구입가구의 경영주는 대체로 20, 30대이고 판매농가는 40, 50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농가의 농업소득이 겨우 일상적 생활비를 감당하는 수준에 있어 점차 늘어나는 교육비와 예외적 질병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팔아 축소재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 경작규모 및 임대차

호당 평균경지면적의 변화는 <표 3-6>과 같다.³⁾ 1985년에는 소유면적, 임차면적, 경작면적이 전국 평균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임차면적이 점차 증가하

3) 이하에서 평균치 분석에서는 36번가구 제외.

여 1988년에는 경작지가 크게 확대되어 있다. 이는 몇몇 가구가 이웃마을의 농지까지 임차하면서 땅콩재배를 확대한 결과로 이제 땅콩은 마을 내에서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소득원이 되어 있다.

경작규모의 변화를 계층별로 보면 0.5~2.0 ha층, 특히 0.5~1.0 ha층이 감소하고 0.5 ha 미만층과 2.0 ha층이 증가하여 계층분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5~88년 사이에 경작규모가 변동된 농가의 내용은 <표3-8>과 같다. 경작지가 1,000평 이상 늘어난 농가는 모두 11호로 이중에는 3,000평 이상 확대된 농가도 5호나 된다. 이들 농가의 경영주 연령을 보면 20대가 1명, 30대가 2명, 40대가 4명, 50대 전반기 3명으로 32번을 제외하면 대체로 젊은 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농가에 있어서도 영농종사자의 증가는 없어 기존노동력의 이용강화가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2호에서는 농기계 구입).

표 3 - 6 평균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 평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소 유 면 적	2,557	2,605	2,567	2,474	0.97
임 대 면 적	184	350	149	415	2.26
임 차 면 적 (A)	1,077	1,522	1,341	2,766	2.57
경 작 면 적 (B)	3,450	3,778	3,759	4,825	1.40
임차지율: A/B (%)	31.2	40.3	35.7	57.3	-

표 3 - 7 경작규모계층의 변화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0.5 ha 미만	5 (15.6)	5 (15.6)	5 (16.1)	7 (23.3)
0.5 ~ 1.0	10 (31.3)	9 (28.1)	9 (29.0)	5 (16.7)
1.0 ~ 1.5	9 (28.1)	7 (21.9)	6 (19.4)	8 (26.7)
1.5 ~ 2.0	5 (15.6)	7 (21.9)	5 (16.1)	2 (6.7)
2.0 ~ 3.0	2 (6.3)	3 (9.4)	5 (16.1)	4 (13.3)
3.0 ha 이상	1 (3.1)	1 (3.1)	1 (3.2)	4 (13.3)
계	32 (100.0)	32 (100.0)	31 (100.0)	30 (100.0)

표 3 - 8 경작규모 변동농가의 변화내용

구 분	가구번호	경 영 주 연 령 ('85기준)	경 작 면 적 (평)			변 동 사 유
			1985	1988	증 감	
규 모 확 대 (1,000 평 이상)	4	49	1,500	7,300	5,800	임차지 확대 (수도, 땅콩), 노동력은 변동 없음.
	5	41	5,630	7,030	1,400	청주 거주 동생 논 임차
	12	48	2,100	6,590	4,490	노령가구의 농지임차 확대, 부인 사망으로 노동력은 감소
	16	41	5,200	19,250	14,050	임차지 확대, 경영주 병에서 회복
	17	54	1,180	2,300	1,120	조카 농지 임차, 경영주 사망으로 여성 경영주 (46세)
	18	37	4,404	19,054	14,650	임차지 확대 (땅콩)
	22	50	9,900	12,000	2,100	서울 거주 동생논 임차, 수도작 농가, 이양기, 콤바인 구입
	24	50	5,377	10,177	4,800	노령가구의 농지 임차 확대
	28	37	4,800	5,800	1,000	땅콩 재배 위해 임차 확대
	31	26	6,300	7,450	1,100	임차지 확대. 경운기, 이양기 구입
	32	57 (여)	380	1,500	1,120	외지에 나간 친척 등의 농지 임차
규 모 축 소 (1,000 평 이상)	6	65	2,684	660	△2,024	노령화로 임대
	9	52	5,750	4,050	△1,700	경영주 건강이 나쁨
	15	63	2,900	1,900	△1,000	경영주 사망, 아들 이혼으로 여성 경영주 (56세)
	21	37	6,366	3,366	△3,000	임차지 반환, 담배농사 중지
	27	31	2,200	800	△1,400	노동력 부족으로 임대 (본인 가출, 본인 경영능력 부족)
	29	53	2,400	800	△1,600	경영주 점업으로 임차지 반환
	30	67	3,900	1,300	△2,600	경영주 노령화로 추가 임대 (머슴 두었으나 그만 둠)

농한기의 고용노동력에 의존하는 땅콩재배를 확대하는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가족노동력의 과도한 부담이 따르고 있다.

경지규모가 1,000평 이상 축소된 가구는 7호로 이중 3호는 노령화 또는 경영주의 사망, 1호는 건강악화, 1호는 겸업화에 따른 것이다. 경영주가 30대인 농가도 2호 있는데, 21번 가구는 담배농사의 수지가 악화되고 고용노동을 구하기가 어려워 임차지를 반환하였고 27번 가구는 경영주는 영농능력이 부족한데 부인이 가출하여 소유지중 일부를 임대한 경우다.

이밖에 탈농가구가 1호(25번) 있는데 이는 경영주가 주로 서울에서 취업한 때문에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다.

농가의 경영규모는 경영주의 인적사항, 특히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대까지의 젊은 층은 1.0ha 이상, 60세 이상은 1.5ha 미만에서 주로 속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50대 미만에서 1.0ha 미만층에 속하는 농가들은 여성경영주나(이들의 농업노동력은 1명), 겸업농, 경영주의 질병, 기타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경지소유규모별로 경작규모의 분포를 보면 총 30호중 16호(53.3%)가 임차로 경

표 3 - 9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988

단위 : 호

경작 규모 \ 경영주 연령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세이상
0.5 ha미 만		2 ¹⁾	1 ²⁾	2 ⁴⁾	1	1
0.5 ~ 1.0			1 ³⁾	2 ⁵⁾	2	
1.0 ~ 1.5		1	1	2	4	
1.5 ~ 2.0			2			
2.0 ~ 3.0	1		1	2		
3.0 ha이상			2	2		
계	1	3	8	10	7	1

1) 1호는 양돈 농가, 1호는 경영능력 부족.

2) 경영능력 부족.

3) 여성 경영주.

4) 1호는 겸업농, 1호는 여성 경영주.

5) 1호는 여성 경영주, 1호는 경영주 건강이 안좋음.

표 3-10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1988

단위 : 호 (%)

경작규모 소유 규모	0.5 ha 미 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ha 이 상	계
무 경 지	1	1	1			I	3 (9.7)
0.5 ha 미 만	3	3	1	1	1		9 (29.0)
0.5 1.0	1	1			1		3 (9.7)
1.0 ~ 1.5	1		5		2	3	11 (35.5)
1.5 ~ 2.0			1	1			2 (6.5)
2.0 ~ 3.0	1					1	2 (6.5)
3.0 ha 이 상							1 (3.2)
계	7 (22.6)	5 (16.1)	7 (22.6)	2 (6.5)	4 (12.9)	5 (16.1)	30 (100.0)

지 규모가 확대된 그룹 I에 속해 있다.⁴⁾

그러면, 어떠한 농가들이 임차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가? <표 3-11>, <표 3-12>에서 보면 그룹 I에 속하는 농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이 약간 낮으나 그룹 II와 큰 차이는 없고 노동력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룹 I에서 남자노동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요인은 임차 결정에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1 그룹별 경영주 연령분포, 1988

단위 : 호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 이상	평균연령
그 룽 I	1	1	5	6	3	49.1
그 룽 II		1	3	3	3	51.9
그 룽 III		1		1	2	56.8

표 3-12 그룹별 농업노동력 보유, 1988

		그 룽 I	그 룽 II	그 룽 III	계
농 업	1 명	6 (37.5)	1 (10.0)	1 (25.0)	8 (26.7)
노 동 력	2 명	8 (50.0)	9 (90.0)	3 (75.0)	20 (66.7)
보 유	3 명	2 (12.5)			2 (6.7)
평 균	남	0.69	0.90	1.00	0.80
농업노동력	여	1.06	1.00	0.75	1.00
(명)	계	1.75	1.90	1.75	1.80

4) 그룹 II에서도 임차농가가 3 호 있으나 이는 계층내 변동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송국 2리의 임대차는 특히 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논·임·밭의 임·차면적이 1985~88년간 9,000여평 확대된 것에 비해 밭은 47,000평이 확대된 82,980평(호당 2,766평)에 이르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지율도 32.1%에서 57.3%로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에 따른 농가구분을 보아도 임·차농(자·차농 포함)이 50%에서 63.3%로 비중이 늘고 있다.

임·차면적의 증대와 함께 임·차농의 임·차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1988년에는 1.0ha 이상을 임·차한 농가가 11호(총 농가의 36.7%)이며 이중 2호는 만평 이상을 임·차하고 있다.

임·대·차 농지의 지주를 보면 부·재·지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송국 2리에서는 부·재·지주의 임·대·면적이 3년간 4.34배로 증가하였다.⁵⁾ 재·촌·지주의 임·대·면적도 크게 늘고 있는데 농가간 노동력 이·질·화 등 경영조건·의·차·이·로· 임·대·가·구·도·늘·어·난·때·문·이·다.

표 3-13 임·차·면·적·의·변·화

단위 : 평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논	19,660	31,870	18,470	28,880	1.47
밭	16,400	15,390	23,090	54,100	3.30
계	36,060	47,260	41,560	82,980	2.30
임·차·지·비·율	32.1	40.0	35.7	57.3	-

표 3-14 임·대·차·에·의·한·농·가·구·분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자·대·농 (지·주·겸·자·작)	5	7	4	6
자·작·농 (자·작·농)	11	7	10	5
자·차·농 (자·작·겸·소·작)	13	14	13	16
임·차·농 (순·소·작)	3	4	4	3

5) 이것은 대인기준의 구분으로 이 임대지가 모두 마을 구역내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표 3 - 15 임차농의 임차면적규모

단위 : 호 (%)

구 분	1985	1988
0.5 ha 미 만	5 (15.6)	6 (20.0)
0.5 ~ 1.0	7 (21.9)	2 (6.7)
1.0 ~ 1.5	4 (12.5)	4 (13.3)
1.5 ~ 2.0	0 (-)	4 (13.3)
2.0 ha 이 상	0 (-)	3 (10.0)
계	16 (50.0)	19 (63.3)

* 백분율은 전체농가수에 대한 비율임.

표 3 - 16 지주의 거주지별 임대면적

단위 : 평 (%)

구 분	1985 (A)	1988 (B)	B / A
재 촌 지 주 1)	15,660 (43.4)	27,140 (32.7)	1.73
부 재 지 주	10,400 (28.8)	45,140 (54.4)	4.34
중 중 토	9,500 (26.3)	10,200 (12.3)	1.07
국 공 유 지	500 (1.4)	500 (0.6)	1.00
계	36,060 (100.0)	82,980 (100.0)	2.30

1) 지주가 조사부락의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재촌지주에 포함시켰음.

부재지주의 농지취득 경위는 구입이 78.8%로 압도적으로 많아 전국 평균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3,000평을 가지고 있는 1인(구입시에는 임야였지만 야산개발로 밭으로 전환됨)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도시인들의 토지 구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임야와 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관행을 보면 상업적 작목의 확대에 따라 현금지불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물론 미작의 경우 현금지불의 경우에도 쌀 몇가마 식의 계산에 의한다. 논·밭의 임대료는 상담의 경우 200평당 쌀 1.8가마값을 미리 주고 경작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선자산다'라고 하며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55~60%의 높은 요율이 된다. 打租는 수확후 생산물을 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지 소유주(임대인)가 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모두 공급하고 수확량의 2/3를 차지하는 '삼분타작(三分打作)'이라는 형태도 있다. 밭에서는 1987년 이후 땅콩재배가 확대되면서 임대

표 3 - 17 부재지주의 농지취득경위, 1988

구 분	면 적 (%)	전 국 (%) 2)
이 촌	5,080 (11.3)	} 65.9
상 속	4,500 (10.0)	
구 입 1)	35,560 (78.8)	34.1
계	45,140 (100.0)	100.0

1) 서울에 거주하는 1인의 23,000 평 포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소유현황과 개선방향, 정책토의시리즈 31, p.12.

표 3 - 18 임차료 지불형태

단위 : 건 (%)

구분 \ 연도 지 분		1985		1988	
		논	밭	논	밭
정 조	현 금		2 (28.6)	7 (35.0)	17 (63.0)
	현 물	7 (70.0)	1 (14.3)	2 (10.0)	1 (3.7)
타 조 (현물)		1 (10.0)		6 (30.0)	1 (3.7)
제 사, 선 산 관 리 등		2 (20.0)	4 (57.1)	5 (25.0)	8 (29.6)
계		10 (100.0)	7 (100.0)	20 (100.0)	27 (100.0)

요율도 오르고 현금지불이 일반화되었다. 이것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을 또는 겨울) 평당 300 ~ 400 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경작권을 확보한다.

이외에 송국 2리에는 종중토 또는 개인소유지로서 位土가 많은 편이다.

전반적인 평균 임차료는 논이 평당 612 원, 밭이 354 원이다.

이 결과 총 임차료 지불액은 3,040 만원이며, 이중 부재지주에게 지불되어 마을에서 유출되는 액수는 1,725.5 만원이다. 이는 농가호당 57.5 만원에 이르는 액수가 된다.

표 3 - 19 농지임차료 지불액, 1988

단위 : 천원

구 분	임 차 료 액 (%)
재 촌 지 주	12,922 (42.5)
중 중	255 (0.8)
부 재 지 주	17,255 (56.8)
계	30,402 (100.0)

2. 작목조직과 생산기술

송국 2리는 소위 상업적 작목인 과수와 축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경종 위주의 작목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근교에서와 같이 축산, 과수, 시설원예가 보급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화에 따른 현금경제의 침투에 대해 농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미곡, 땅콩, 참깨 등 경종 중심의 작목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마을에 들어온 주요 경제작물의 도입경위와 쇠퇴, 그리고 주요 생산기술을 살펴본다.

가. 주요작목의 변천

마을의 현재 주요한 작목은 미곡, 땅콩, 인삼, 참깨, 한우 등이며 이외에 들깨, 서류, 채소, 양잠 등이 약간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새마을운동에 따른 소득증대사업이 마을의 경제작물 보급에 영향을 미쳐 감나무, 밤나무의 묘목재배가 이루어졌으나 감나무의 경우는 판로를 찾지 못해 실패하였고 밤나무 묘목은 소득은 좋았으나 참여가구가 2호에 불과하였고 1회로 중지되었다. 이때 마을 주변에 심은 감나무는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고 있으나 호당 4~5주 내외로 자가소비용으로 그치고 있다. 한편 1973년에는 한우단지로 지정되어 한우 24두를 입식받아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후의 소값 하락(송아지 1973년에 7~8만원, 1975년에는 5만원 내외)으로 많은 가구가 중도에 판매하여 다시 축소되었으며, 이는 1982년 복합영농의 일환으로 그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1975년에는 마을 주변의 야산개발을 통해 밭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작목구성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총 36ha의 야산을 밭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마을의 밭 면적도 25ha 이상으로 늘어났다.⁶⁾ 이와 같이 늘어난 밭에는 담배와 땅콩, 참깨를 주로 경작하였다.

땅콩은 1973년 정병각씨(28번 가구)가 군에서 제대 후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던 친구의 소개로 처음 1,000평을 재배한 이후 1975년부터는 타농가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경제작물이 되어 있다.

담배는 1976년 이후 식부면적이 증가하여 한때 17,000평에 이르렀으나 노동력 부

6) 이중 상당면적은 사업 당시 이미 부재지주의 소유였으며 이후 개답이 진행되어 그 면적 감소.

족으로 1983년부터 감소하여 1986년 이후는 심지 않게 되었다.

양잠은 1974년 이후 약간 확대되었다가 대일수출부진과 노동력부족으로 1981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1986년부터 2가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전에는 뽕잎을 따서 먹이던 것이 가지채 먹이는 방법으로 바뀜에 따라 노동력 소요가 줄어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참깨는 전통적인 환금작물이었으며 야산개발 이후 면적이 확대되었다가 1985년 참깨복합영농단지로 지정을 받으면서 재배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1985년부터 약초의 일종인 팽이풀을 논산의 약재상과 계약재배하고 있으나, 4가구에서 3,000평 내외의 면적이고 조수입이 100평당 10만원 내외로 액수는 미미한 편이다.

한편 36번 가구는 금산군 사람으로 조사마을 주변에서 밭을 임차하여 1985년부터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경비가 많이 들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기술, 수확의 불안정 때문에 마을에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향으로 밭의 임차료 인상, 현금화가 진행되고 고용노동력을 이용한 대규모 땅콩재배에도 자극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3-20 1970년 이후 주요작물의 도입과 성식

작	목	1970	1975	1980	1985	89	비 고
땅	콩		-----				1986년 후 단절
담	배				노동력 부족		
양	잠			대일수출부진		-----	
참	깨						
한	우		새마을 운동				
감 나 무	묘 목		-----		복합영농		
밤 나 무	묘 목			-----			
약초(팽이풀)						-----	
감 나 무		-----				-----	
인	삼					-----	

나. 조사기간중 작목구성의 변화

송국 2리에서 논은 모두 水稻單作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밭에서도 (참깨+들깨)가 일부 이모작일뿐 대부분이 單作으로 이용되고 있다. 논에서는 1980년경까지는 답리작으로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지만 그 이후는 거의 재배하고 있지 않다. 논은 대부분 고라실 논으로 기계가 들어가기 쉽지 않으나 1985년 이후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마을에 널리 재배하고 있는 땅콩은 표토유실이 심하며 7) 연작피해가 있어 참깨와 함께 윤작을 한다. 시설원예는 전무하며, 밭작물의 멀칭재배는 1983년경에 도입되었다.

1985~88년간의 변화를 보면 밭작물은 땅콩과 참깨를 제외하면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땅콩의 조수입이 평당 1,400~1,500원으로 여타 작물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땅콩의 농협 수매가격은 피콩 30kg가마당 4만원(1988년)으로 상인들이 수집해가는 35,000~

표 3-21 경종작목별 식부면적

단위: 평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호당평균	B/A
미	곡	80,680	88,251	80,071	83,637	2,788	1.04
맥	류	1,000	750	0	0	0	—
잡	곡	0	0	0	0	0	—
두	류	6,917	3,316	1,528	1,000	33	0.14
서	류	1,210	232	50	30	1	0.02
채 소	수 박	1,000	1,200	0	0	0	—
	고 추	2,650	3,810	1,800	600	20	0.23
	기타채소	2,080	1,790	1,263	200	7	0.10
특 용 작 물	땅 콩	6,450	8,920	23,900	47,120	1,571	7.31
	참 깨	5,450	8,821	5,770	16,300	543	2.99
	들 깨	3,500	4,371	1,600	500	17	0.14
	담 배	4,000	0	0	0	0	—
	기 타	0	1,600	1,097	3,000	100	—
총 식 부 면 적		114,937	123,061	117,079	152,387	5,080	1.33

7) 1987년 수해시 땅콩밭, 인삼밭의 표토유실이 심하여 골짜기 논의 매몰피해가 컸음.

표 3 - 22 경증작부체계, 1986

단위 : 평

유 형	작 부 시 기												면	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5	1986
땅콩단작				○	이식					수확			6,450	8,920
고추단작		○	파종	○	이식					수확			2,350	3,810
참깨단작				○									3,150	3,850
참깨+들깨				○									1,800	4,171
참깨+메밀				○									0	750
콩단작					○								4,917	2,366
수박+배추		○		○									1,000	1,200
딸기묘		○											0	377
담배+들깨 (콩)		○		○									1,000	0

36,000보다 높지만 품질기준(건조, 석발등), 포장비용을 감안하여 대부분 상인에게 팔고 있다.

이외에 참깨, 들깨 등의 환금작물도 대부분 상인이 방문하여 庭前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통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가축사육은 1984~85년간의 소 파동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2마리 이상을 사육하던 11호('85년)는 대부분 한마리씩을 처분하였다. 돼지는 1985년에 각각 80두, 35두 정도의 사육농가가 1호씩 있었으나, 그중 1호는 중단하고(경영주의 이혼), 나머지 1호가 경영규모를 확대하였다. 소의 구입은 논산읍의 우시장에서 하며 판매는 우시장에 나가거나 상인이 방문한다.⁸⁾ 모돈은 대전 부근의 전문농장에서 구입

표 3 - 23 가축사육두수

단위 : 마리

구 분	1985	1986	1987	1988	'88/'85
한 우	33	31	16	13	0.42
돼 지	100	120	127	113	1.13
축 산 농 가 수	13 호	6 호	4 호	3 호	—

8) 마을 내에도 소장사가 1명 있음.

하며 판매는 대전 도축장을 이용한다.

다. 농업기술의 변화

송국 2리의 전통적인 작물은 수도작을 비롯하여 맥류와 두류작물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작물재배의 작업과정을 중심으로 기술수용과 변천을 본다.

경운작업에 기계가 도입된 것은 1980 년으로 비교적 늦다. 그 이전까지는 쟁기와 역우를 이용한 이경에 의존했다. 송국 2리의 토질은 배수가 나쁜 점질 사양토가 대부분으로 아직도 경운작업의 절반이상은 역우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밭의 경운작업은 주로 경운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의 대규모 필지에서는 트랙타 임작업을 하기도 한다.

논의 정지작업(로타리)은 모내기 직전 소를 이용한 씨레질 또는 쇠스름을 사용하여 인력으로 하였으나 경운기가 들어온 후 기계로 대체되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경운기로 이루어진다.

모내기는 일찍부터 정조식이 일반화 되었었다. 이앙기는 1982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작업은 1호에 한정되었다가 1987년 이후 널리 확산되어 현재는 약 70%가 기계이앙을 하고 있다.

중경제초작업은 두레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호미에 의존하였다. 1973년경부터는 동력살분무기가 보급되어(6대) 공동방제를 시작하였으며, 1975년에는 제초제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밭작물의 제초작업도 비슷한 시기에 제초제 사용으로 줄어들었다.

예취작업은 1985년에 처음으로 콤바인이 도입되어 기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87년 이후 크게 확대되어 현재는 90%이상 콤바인에 의존하고 있다.

3. 노동력구조와 이용

가. 농업노동력 구조

마을주민 전체를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표 3-24>와 같다. 1985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주민 140명중 50%에 해당하는 70명이 농업(또는 농업과 비

농업 겸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6명(겸업 포함)에 불과해 마을의 비농업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다. 주민의 이러한 취업구성비는 1988년에도 대동소이해 마을의 경제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체적인 비율의 불변에도 불구하고 영농종사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3년간 13명(18.6%)이 감소하여 호당 농업노동력도 2.19명에서 1.84명으로 줄어 들었다. 노동력 증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증가요인이 12명, 감소요인이 25명이다. 3년간 총 전입은 7명인데 이중 3명은 가구전입(36번 가구)이고 2명은 마을로 시집 온 여자이다. 재촌전입도 5명으로 적지 않은 수인데 이중 1명은 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 남은 경우, 1명은 군(방위) 제대 후 남아서 농사짓는 경우, 2명은 육아와 가사에서 풀린 20, 30대 가정주부다. 감소원인으로는 전출이 13명으로 가장 많으며, 노령화, 재촌탈농, 사망 등이 각각 4명씩 나타난다.

영농종사자의 연령별 구성변화의 특징은 60세 이상의 비중이 늘고 40세 미만층이 감소하여 노령화가 진전된 것이다. 특히 30세 미만은 1985년의 14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이 연령층에서 단신이혼이 집중되고, 자연적 연령 상승으로 위 연령층으로 이동하는 반면 신규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1988년의 경우 60세 이상이 21.1

표 3-24 마을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8		
			농 가	비농가	계	농 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138	2	140 (100.0)	109	3	112 (100.0)
15 세 미 만 인 구			46	0	46 (32.9)	34	0	34 (30.4)
15 세	취업인구	농 업	67		67 (47.9)	53		53 (47.3)
		농업+비농업	3		3 (2.1)	4		4 (3.6)
		비 농 업	2	1	3 (2.1)	2	1	3 (2.7)
		소 계	72	1	73 (52.1)	59	1	60 (53.6)
이 상	비취업인구	실업(취업대기)	1		1 (0.7)			0 (—)
		학 생	7		7 (5.0)	6		6 (5.4)
		주 부	2		2 (1.4)		1	1 (0.9)
		노 령 타 기	8	1	9 (6.4)	9	1	10 (8.9)
		(질병·군복무)	2		2 (1.4)	1		1 (0.9)
		소 계	20	1	21 (15.0)	16	2	18 (16.1)

표 3-25 영농종사자수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농 가 호 수	32	32	31	31
농 가 가 구 원 수 (A)	138	137	121	109
영 농 종 사 자 수 (B)	70	65	59	57
호당평균 영농종사자	2.19	2.03	1.90	1.84
영농참여율(B/A %)	50.7	47.4	48.8	52.3

표 3-26 영농종사자 증감원인

단위 : 명

구 분	85/86	86/87	87/88	계
증 가 (A)	전 입		5	7
	전입 (재촌)	2	2	5
	소 계	2	7	12
감 소 (B)	전 출	3	5	13
	노 령 화	1	1	4
	재촌탈농	2	1	4
	사 망	2	2	4
	소 계	7	9	5
순 증 감 (A-B)	△ 5	△ 6	△ 2	△ 13

표 3-27 영농종사자의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증 감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60 세 이상	5	6	11 (15.7)	5	5	3	5	5	7	12 (21.1)	+ 1
50 ~ 59	9	11	20 (28.6)	12	12	10	12	8	9	17 (29.8)	△ 3
40 ~ 49	5	8	13 (18.6)	4	7	4	6	7	5	12 (21.1)	△ 1
30 ~ 39	7	5	12 (17.1)	7	6	6	6	3	7	10 (17.5)	△ 2
30 세 미만	6	8	14 (20.0)	4	2	4	3	4	2	6 (10.5)	△ 8
계	32	38	70 (100.0)	33	32	27	32	27	30	57 (100.0)	△13

표 3-28 경작규모별 영농종사자수, 1988

단위 : 호

구	분	0.5 ha 미 만	0.5 ~ 1.0	1.0 1.5	1.5 ~ 2.0	2.0 ~ 3.0	3.0 ha 이 상	계 또는 평 균
영 농 종 사 자 수	1	3	4					7
	2	4	1	8	1	3	4	21
	3				1	1		2
호 수		7	5	8	2	4	4	30
평 균 종 사 자 수 (A)		1.57	1.20	2.00	2.50	2.25	2.00	1.83
평 균 경 작 면 적 (B)		1,016	2,100	3,617	5,285	7,093	15,120	4,866
M/L 비 율 (B/A)		647	1,750	1,809	2,114	3,152	7,560	2,654

%로 타부락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갈수록 노령노동력에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작규모 계층별로는 1.0 ha 미만층에서 2명 미만이고 1.0 ha 이상층은 계층간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계층간에는 토지-노동비율(M/L ratio)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용관계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나. 고용노동과 노동관행

송국 2리는 농촌의 협동노동의 필요에서 오는 공동체적 유대가 상당수 남아 있는 편이다.

전면적 공동작업체인 ‘두레’는 1975년까지 존속하였으며 7~8월의 중경제초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지역집 단으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두레조직은 현 송국 2리 행정구역에 속하는 송현, 참새골, 산학골 뿐만 아니라, 이웃 소사리에 속하는 수랑골까지 포함하였다. 두레는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농촌 청년들의 이촌으로 노동력의 이질화가 진전되면서 소멸하였지만 지금도 ‘곰뱅이’와 ‘두레먹이’가 그 유제로 남아 있다. 못자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께 동네 유지들에 음식과 술을 추렴받아 행하는 ‘곰뱅이’는 일종의 작업공동체의식으로 이때 그해의 임금을 결정하며 모내기 일정을 협의한다.⁹⁾ 농사철 한 중간인 7월 7석에는 ‘두레먹이’를 한다. 이 때에도 음식장만을 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등을 공동으로 보수하

9)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는 곰뱅이에서 결정한 금액보다 웃돈을 주고 노동력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고 농악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노동력 교환, 고용관계는 1985 ~ 88년간 격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개 조사 부락중 공동체적 유대가 가장 강한 편인 이 마을에서도 품앗이가 급격히 쇠퇴하는 반면 고용·피고용 관계가 증가하고 노임상승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현금경제의 침투와 농업의 상업화에 따른 농민의식구조의 변화, 이농·노령화가 초래한 농가간 노동력의 동질성 파괴 등을 들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1987년에 크게 진전된 수도작 기계화와 땅콩재배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얼마 남지 않은 젊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계화로 인해 공동작업의 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표 3 -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작에서의 고용노동일수는 3년간 30% 수준으로 격감하였으며, 미작외 (주로 땅콩)에서는 8.6배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총 고용노동일수는 1987 ~ 87년간에는 별 변화가 없다가 1988년에는 크게 늘어났으며 외부노동력에의 의존도도 매우 높아졌다. 특히 1988년에는 고용노동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며 마을내에서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마을내의 보다 많은 농가들이 땅콩 경작에 참여함으로써 여유노동력이 줄어들었으며, 경작지가 마을 주변에 확대됨으로써 그 마을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보다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작에서의 고용관계 감소는 기계화의 영향이다.

표 3 - 29 고용노동일수

단위 : 연인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
총 고용노동일수 (A)		1,188	1,054	1,244	2,439
미 작		938	749	518	284
미 작 외		250	305	626	2,155
피 고용노동일수 (B)		300	291	1,172	676
순 고용일수 (A - B)		888	763	78	1,763
호당평균	총 고 용	37.1	32.9	40.1	81.3
	순 고 용	27.8	23.8	2.5	58.8
외부노동력고용일수 (C)		70	195	602	1,763
A / C (%)		5.9	18.5	48.4	72.3

1) 36번 농가 제외 (600일 고용).

표 3 - 30 품앗이 일수

단위 : 연인원

구 분		1986	1987	1988
미 작	이 양	429	207	102
	수 확	145	64	4
미 작 외		194	68	85
계		768	339	191

표 3 - 31 농업노동 고용관계에 따른 농가구분

단위 : 호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경작규모별)						
					계	0.5 ha 미만	0.5 ~ 1.0	1.0 ~ 1.5	1.5 ~ 2.0	2.0 ~ 3.0	3.0 ha 이상
피 고 용	200일 이상	0	1	1	0						
	100 ~ 199	1	0	2	0						
	50 ~ 99	1	1	4	1	1					
	20 ~ 49	2	4	5	5	3		1		1	
자 급 (- 19 ~ 19)		10	9	7	9	2	3	4			
고 용	20 ~ 49	7	9	4	5		1	2		2	
	50 ~ 99	9	5	6	6	1	1	1	1	1	1
	100 ~ 199	1	3	2	1						1
	200일 이상	1	0	0	3				1		2
계		32	32	31	30	7	5	7	2	4	4

품앗이 일수는 768일 (농가호당 24일)에서 191일 (호당 6.4일)로 감소하였다.

고용일수에 따라 농가를 구분하면 < 표 3 - 31 > 과 같다. 1985~87년간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용하는 농가수는 감소하고 피고용농가는 증가하여, 기계화의 진전으로 마을의 노동력부족이 완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88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를 경작규모별로 보면 예상과 같이 0.5 ha 미만층에는 피고용농가가 많고 1.0 ha 이상에는 고용농가가 많다. 0.5 ha 미만층중 고용일수가 50일인 1호 (14번 가구)는 축산농가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1100 평에 심은 땅콩의 파종, 수확때 노동력을 고용한 경우이다. 2.0 ~ 3.0 ha층에서 순피고용일수가 24일인 가구 (5번)는 경영주가

표 3 - 32 농업노임 *

단위 : 원 / 일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남	모 내 기	5,000	5,000	7,000	7,000
자	기 타	5,000	5,000	6 ~ 7,000	7,000
여	모 내 기	4,000	5,000	7,000	7,000
자	기 타	3,000	3,000	4,000	5,000

* 현금지불액.

44세로서 미작(7,000평중 5,000평)을 전부 기계화시켰으며, 주로 부인이 품을 팔았다. 100일 이상 고용가구는 1.5 ~ 2.0 ha층에서 1호, 3.0 ha 이상층에서 3호인데 이들은 모두 땅콩 재배농가다.

고용관계 확대와 함께 노임도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노동력이 대상으로 임금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1988년 경우 모내기 때는 남녀 모두 7,000원이며 3끼 식사와 2번의 새참(주로 빵과 음료), 담배, 술(또는 음료수)을 제공하며 밭일은 남자 7,000원, 여자 5,000원에 간식과 담배를 제공하였다.

다. 농업기계화

농촌노동력의 부족은 기계화를 필요로 한다. 이와함께 정부의 기계화영농단 지원등 정책이 기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현재의 기계화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밭의 기계화도 진전될 전망이다.

송국2리의 기계보급수준은 낮은 편이나, 수도작의 기계작업율은 3년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콤바인은 22번 가구가 1985년도에 구입하였으며 이양기는 1982년도에 22번 가구가 1대 구입하고, 1987년도에 3가구가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그 결과 이양작업의 기계화율은 7.4%에서 70.2%로 늘어났으며, 수확작업은 25.4%에서 93.4%로 거의 대부분이 콤바인 작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밖에 경운작업은 44.7%, 정지(로타리)작업은 98.1%가 경운기로 이루어진다.¹⁰⁾ 1988년 현재 기계 임작업료는 200

10) 경운작업의 기계화율이 낮은 것은 배수가 나쁜 논이 많기 때문으로 역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평당 경운, 정지가 각각 5,000 원, 이앙 (못자리는 경작자가 준비) 은 6,000 원, 수확이 12,000 원 (풍수해로 벼가 쓰러진 경우에는 20,000 원) , 방제는 1 회에 800 원이다. 땅콩밭의 로타리작업은 주로 송국 1 리 사람이 트랙타를 가지고 하는데 100 평당 1,500 원을 받는다.

이앙기와 콤바인을 소유한 22 번 가구는 소유경지만 6,920 평 (이중 논 5,820 평) 인 대농으로 5,080 평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이앙은 본인 (53 세) 이 직접하나 노동력

표 3 - 33 농기계보유¹⁾

단위 : 대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경 운 기	3	4	4	3
이 앙 기	1	1	2 2)	2 2)
콤 바 인	1	1	1	1
동 력 탈 곡 기	1	1	1	1
동 력 분 무 기	4	5	5	5

1) 바인더, 트랙타는 없음.

2) 이중 1 대는 3 인이 공동소유.

표 3 - 34 수도작 기계작업율

단위 : 평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미곡식부면적	80,680	88,251	80,071	83,637
이 앙	6,000	11,390	41,551	58,713
(%)	(7.4)	(12.9)	(51.9)	(70.2)
수 확	20,800	38,387	37,884 *	78,117
(%)	(25.4)	(43.5)	(55.8)	(93.4)
경 운			24,964	37,386
(%)	—	—	(31.2)	(44.7)
정 지			74,024	82,048
(%)	—	—	(92.4)	(98.1)

* 수해로 경지가 매몰되어 12,200 평의 수확이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나머지 면적에 대한 비율임.

부족으로 임작업은 거의 하지 못한다(1988년에는 1,800평). 콤바인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31번 가구의 조창현(29세)에 일당 만원을 주고 고용한다. 1988년에는 기계고장이 많아 열흘 이상에 걸쳐 본인 논만 수확하였으며 1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지출되었다. 기계조작과 보관이 미숙한 탓이었지만 기계를 팔아버릴 결심이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의 수확임 작업은 이웃 송국 1리, 산적리 사람과 마을에서 이사간 차연복(2번 가구)이 주로 담당한다.

한편 2, 5, 31번 가구는 모두 중대농 젊은층으로 1987년에 160만원을 주고 이앙기 1대를 구입하였다. 구입자금중 30만원은 첫째 공동부담하고 4년 거치기간후 상환액은 이익금을 적립하여 갚기로 하였다. 기계운전은 2, 31번 가구가 하며 일당 만원으로 계산기로 하였다. 1988년에는 자가경작지 15,400평 외에 10,000평 정도를 임작업하여 기름값, 수리보수비, 이자 등을 지불하고 작업자 2명이 각각 8만원씩 분배하고 64,000원을 예치하였다.

31번 가구는 이 외에도 22번 가구의 콤바인 운전을 하고(15일), 방제작업(10일), 경운기를 가지고 운반작업(20일)등을 하여 기계작업 노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계화의 진전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수도작에서 피크기의 노동력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킨다. 이 마을에서는 전체적인 노동력의 여유로 땅콩 등의 경제작물을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앙, 수확작업의 기계화는 전반적으로 공동노동, 품앗이를 어렵게 함으로써,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기계작업을 강제하면서도 남는 노동력을 이용할 다른 기회를 찾지 못하여 비용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콤바인 등의 사용은 경지조건이 열악하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때문에, 이용율이 낮아서 오히려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겸업화와 농외활동

송국 2리는 순농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근대적 상공업과 관련된 비농업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다. 비농업가구는 1호 내외, 겸업농가는 4~5호이며 이 중에서도 4년 계

속 비농업에 종사한 가구는 2호(1, 22번 가구)에 불과하다.

1985년도에 비농업가구로 분류된 1호(34번 가구)는 공무원으로 마을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오다 자녀교육 때문에 부인을 대전에 내보내고, 농지를 임대해 주다 1986년에 이촌한 경우이다.

1987~88년도에 비농가로 분류된 1호(25번 가구)도 자녀들을 교육과 취업 때문에 서울에 정착시키고 경영주만 마을에 내려와 농사를 짓다가 당년도에는 농지를 임대하고 서울에서 건축일 등에 종사한 경우다.

1번가구는 2~4월의 농한기를 이용하여 주로 관정을 설치하고 있다. 관정타설기계는 1984년에 5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이중 보조 210만원, 용자 90만원), 2~3일에 한개씩 한 계절에 30~50개 정도를 판다. 1개당 수입은 15만원으로 비용을 제하고도 연간 300~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이 외에도 난방보일러 배관, 변소개량 작업도 청부받아 하며, 1988년 초에는 수해복구사업에 동생(포크레인 기사)과 함께 참여하여 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22번가구는 1978년에 3,600만원(용자 2,100만원)을 들여 200평짜리 창고를 지어 정부양곡을 보관하여 왔으며(면소재지 소재, 16,000가마 용량), 보관료를 입고량에 따라 80~140만원씩 받고 있다. 창고 건립초기인 '78, '80년에 냉해등으로 입고량이 적어 사채를 많이 지기도 했다. 이 가구의 농외소득은 경제활동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산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12번가구는 유일하게 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이웃 석성면 소재지인 십자가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에 1987년부터 아들 둘이 취업하여 각각 월 13~15만원의

표 3-35 비농업가구와 겸업농가수

		단위 : 호, 명			
구	분	1985	1986	1987	1988
비농업* 가 구	호 수	1	-	1	1
	종사인원	1	-	1	1
겸업농	호 수	4	5	5	5
	종사인원	4	5	6	6

* 비농가중 비농업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따라서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지주)나 농업노동자 가구.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기타 가구는 제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밖에 몇건의 농외활동이 있었으나 목수, 미장 등으로 취업도 불안정하고 농외소득도 낮은 수준이다.

1988년에 비농업활동에 참여한 가구는 <표 3-36>과 같다. 겸업농은 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영업으로 경지규모도 대체로 중대농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3-36 비농업활동 가구의 개황, 1988

구분	가구 번호	경지면적(평)		농외활동내용	농 외 활 동 중 사 자					
		소유	경작		관계	성	연령	종사 일수	취업지	소득 (만원)
비농가	25	2,000	0	건축노동(미장)	본인	남	58	180	서울	300
겸 업 농	1	5,190	4,770	관정, 수해 복구 (경지평탄)	본인	남	41	160	면내 마을	1,050
	6	3,200	3,200	소장사	본인	남	61	365	인근군	100
	12	1,490	6,590	공장(한국타포린)	차남	남	22	50	군내	20
				〃	삼남	남	20	240	〃	90
	22	6,920	12,000	창고업	본인	남	53	365*	면내	700
	29	800	800	복덕방	본인	남	56	365	논산	-

* 실제 노동력을 투입하지는 않음.

5. 가계구조

자급자족적 경제구조하의 농가가 상품시장경제에 편입되면서, 해년마다의 농가의 수입과 지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된다.

생산측면에서는 종자, 비료, 농약 등의 투입이 증가되고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기계화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하며, 의복, 음식, 광열 등의 소비지출도 점차 외부구입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냉장고, T.V., 세탁기, 가스렌지 등 생활편익시설과 정보전달매체, 자녀교육비 등은 농가의 자금수요를 확대하고 그 운용을 어렵게 한다. 이 상황에서 농가가 어느 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가에 따라 농가발전지향이 다양화한다.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수입, 투자, 소비지출 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나, 조사의 한계로 인한 자료의 제약상 농업고정자산투자, 내구소비재 구입, 농업외투자, 교육비, 이전 수입 및 지출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의 부채 및 저축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한정한다.

가. 농업투자

송국 2 리의 농업투자는 타부락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다. 4년간 총투자액은 8,934 만원으로 호당 평균 282 만 5천원에 달한다. 1987년에는 농업투자가 작은 편인데 연도중에 수해가 발생하여 농가의 노동력, 자금 사정이 악화된 때문으로 보인다.¹¹⁾

농업투자중 금액면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농지구입이다. 4년간 7 호에서 7,720 평을 구입하여 전체 농업투자액의 57.4 %인 5,125 만원이 투자되었다. 이중 '88년도에는 1 호가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하였다.

농기계는 콤파인이 1대, 경운기가 2대, 경운기 부속기계, 장비가 1대,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가 각 1대씩이다. 농지기반투자는 관정이 154 만원 (12 공)이고, 객토가 98 만원, 소규모 경지정리가 150 만원이었으며, 밭을 논으로 바꾼 개답투자도 1건 (1,000 평, 40 만원)이 있다. 이밖에 돈사, 우사의 신개축이 모두 3건으로 1,750 만원이 투자되었다.

표 3-37 농업고정자산투자액¹⁾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건수	액 수
농지 구입	4	24,850	3	16,800	0	0	1	9,600	8	51,250
농 기 계	1	7,880	2	2,100	1	1,600	3	4,590	7	16,170
농지기반	5	2,110	4	1,100	2	230	3	980	14	4,420
기타시설물	1	1,500	0	0	0	0	2	16,000	3	17,500
계	11	36,340	9	20,000	3	1,830	9	31,170	32	89,340
호당평균액 ²⁾	-	1,135.6	-	625.0	-	59.0	-	1,005.5	-	2,825.1 ³⁾

- 1) 대동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투자자로 분류되나 그 구입, 판매의 변동이 심하고 또 비육목적이 강하여 이를 제외하였음.
- 2) 농가만의 평균임.
- 3) 매년의 평균액을 합계한 것임.

11) 1987년도의 수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구호품, 양곡, 농지 복구비용등이 거의 피해를 보상할 만큼 배정되었으나 피해시기와 복구비 지원간에는 시차가 있었고 더구나 발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였음.

호별 투자규모를 보면 4년간 16호에서 농업투자가 있었으며 300만원 이상 투자한 농가도 10호에 이른다.

〈표 3 - 39〉에서 보면 4년간 100만원 이상의 농업투자를 한 농가들은 대부분 경영주가 젊고 경지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들은 농업발전지향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 38 농업투자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 호

구 분	농 가 호 수	(%)
0	17	(51.5)
50 만 원 미 만	3	(9.1)
50 ~ 100	1	(3.0)
100 ~ 200	1	(3.0)
200 ~ 300	1	(3.0)
300 ~ 500	3	(9.1)
500 ~ 1,000	4	(12.1)
1,000만원 이상	3	(6.1)
계	33 *	(100.0)

* 1985 ~ 88 년중 1년이상 영농한 농가.

나. 농업외투자 및 내구소비재 구입

농가지출중 한 분야는 농업외의 부문에서 소득을 얻거나, 생활의 편익을 위해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거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 지출부분은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민이 화폐경제에 편입되어 감에 따라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송국 2리의 농업외 자산투자는 다른 마을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다. 조사기간중 건물 증축이 1건 (14번 가구, 전입시 증개축) 있으며, 1988년의 국민주 보급시 3가구가 242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이중 1호는 당시 이장으로서 마을사람들이 명의를 빌려 20가구분 (140주)을 신청, 배정받았다. 농업 투자에 비해 농업외투자가 적은 것은 주민들의 농업지향성을 실증해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말해준다.

내구소비재의 구입지출에서는 연료의 대체에 따른 가스렌지의 보급이 압도적으로 많

표 3 - 39 농업투자능가의 개황

가 구 번 호	경영주 연령 ¹⁾	경 작 규모 ²⁾ (평)	투 자 종 류	투 자 액 (천원)	비 고
1	38	4,700	농 지 구 입 경운기부속장비 관 정	2,300 1,000 450	3 인 공동구입
2	24	5,650	농 지 구 입 이 양 기	12,500 533	
5	41	6,318	농 지 구 입 이 양 기 관 정	3,360 533 80	
7	58	2,600	우 사	6,000	
12	48	5,043	농 지 구 입	9,600	
14	36	1,100	농 지 구 입 돈 사	4,000 11,500	양돈농가
18	37	8,967	농 지 구 입 발 경 지 정 리	7,500 200	
22	50	11,125	콤 바 인	7,880	영농후계자 있음
23	52	3,500	농 지 구 입 관 정 객 토	12,000 350 180	
30	67	3,150	관 정 개 답 경 운 기	300 400 2,150	
31	26	6,163	경 지 정 리 경 운 분 무 기 이 양 기	1,000 2,633 1,440	
363)	41	42,700	관 리 기	1,440	

1) 1985 년 기준.

2) 1985 ~ 88 평균.

3) 1988 년 1년 기준임.

아 1987~88 년간 20 호에서 새로 구입하였다.¹²⁾ 이밖에 주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냉
장고, 세탁기, 정보매체 및 문화·오락용품으로서의 T.V. 구입이 많다. 내구소비재의

12) 분가자녀가 보내준 1대 제외.

표 3-40 농업외 투자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토 지	-	-	-	-	-	-	-	-	0	0
건 물	1	500	-	-	-	-	-	-	1	500
주 식	-	-	-	-	-	-	3	2,420	3	2,420
기 타	-	-	-	-	-	-	-	-	0	0
계	1	500	0	0	0	0	3	2,420	4	2,920
호 당 평 균	-	14.7	-	0	-	0	-	73.3	-	88.0

표 3-41 내구소비재 구입

단위 : 건, 천원

구 분	1987		1988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승 용 차	-	-	-	-
오 토 바 이	-	-	2	1,120
전 화	1	210	-	-
칼 라 T.V.	-	-	5	1,460
냉 장 고	3	960	2	620
세 탁 기	1 3)	70	2	600
가 스 렌 지	14	1,885	6	715
장 농	1	400	-	-
기 타	1 1)	220	2 2)	105
계	21	3,745	19	4,620
호 당 평 균	-	110.1	-	140.0

1) 수도.

2) 압력밥솥, 선풍기.

3) 탈수기.

구입은 일정한 필요성에 의해서지만 한두 가구가 구입함으로써 파급되는 전시효과도 큰 것으로 보인다. 전화, T.V., 가스렌지는 이제 어느정도 보급이 되어 앞으로는 냉장고 세탁기의 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 교육 및 의료비

농가의 가계비 중에서도 교육비, 의료비 등은 그 절대액수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는 부채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송국 2리에서 중학교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1988년 현재 24명(호당 0.73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중 외지에 출타하여 취학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11명으로 대학생 전부와 중·고등학생 일부가 이에 속한다. 중학생은 대부분 이웃 석성면 소재지에 있는 석성중학교에 다니나 논산읍으로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 학비부담은 도시에서 취업하여 같이 살고 있는 형이 부담한 1건을 제외하면 모두 농촌의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연간 총교육비 지출은 2,548만원으로 호당 77만 2천원이며, 연간 200만원 이상 지출한 가구도 5호에 달한다. 특히 교육비 지출은 당년에 그치지 않고, 3~7년씩 장기간 지속되어 출타취학자가 있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987~88년의 교육비 지출은 큰 변화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8년은 농촌에 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된 해로 농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의보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가 22호 있었는데 이들이 지역의보의 대상이 되었다. 1988년에는 66.7

표 3-42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지출, 1988

	학생수		학비부담		학생 1인당 연간 비용 1)			마을전체의 교육비부담
	통학	출타	본가	기타	납입금	생활비 2)	계	
중 학 생	10	2 5)	12 3)	0	161	333	494	5,930
고 등 학 생	3	5	8 4)	0	285	719	1,004	8,026
대 학 생	0	4	3	1 6)	1,140	1,741	2,881	11,525
계	13	11	23	1	-	-	-	25,481

단위 : 천원

- 1) 농촌본가에서 부담한 액수.
- 2) 자택에서 통학하는 경우의 숙식비는 포함시키지 않음.
- 3) 이중 3명은 영세민 가구 자녀로 학비 면제(육성회비 연 47,000원 납부).
- 4) 이중 1명은 영세민 가구 자녀로 학비 면제.
- 5) 외부전입가구(14번, 36번)의 전거주지 잔류 자녀.
- 6) 이촌한 자녀(학생의 형)가 학비, 생활비 부담.

표 3-43 교육비 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호 (%)		
구 분	1987	1988
0	18 (54.5)	17 (51.5)
50 만 원 미 만	4 (12.1)	6 (18.2)
50 ~ 100	3 (9.1)	1 (3.0)
100 ~ 200	4 (12.1)	4 (12.1)
200 만원이상	4 (12.1)	5 (15.2)
계	33 (100.0)	33 (100.0)

%인 22호가 지역의보에 가입되고, 5호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출타 자녀의 직장의보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가구도 7호에 달한다. 재산과 가구원 수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는 대부분이 만원 미만이지만 1호는 31,000원이 부과되어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가구는 6,920평의 소유지와 정부양곡창고를 가지고 있는 부농이지만 53세의 부부 2인 가구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1987년에는 호당 9만원, 1988년에는 19만2천원 정도이지만 가구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연간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87년에는 3가구에서 '88년에는 6가구로 늘어났다.

1988년도중 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의 지출내역과 병명을 정리한 것이 <표 3-47>이다. 총 8명의 환자중 신경·정신계통이 4명이었으며, 농부병이라 볼 수 있는 신병이 2명 나타났다.

표 3-44 의료보험여부

단위 : 호 (%)		
구 분	1987	1988
직장의보	경 영 주 본 인 0 (-)	0 (-)
	출 타 자 녀 7 (21.2)	6 (18.2)
직 장 + 지 역	0 (-)	1 (3.0)
지 역 의 보	0 (-)	21 (63.6)
의 료 보 호	4 (12.1)	5 (15.2)
의 료 부 조		0 (-)
일 반	22 (66.7)	0 (-)
계	33 (100.0)	33 (100.0)

표 3-45 의료보험료 납부액, 1988

보 험 료	호 수
3,000 원 미 만	5
3,000 ~ 4,999	9
5,000 ~ 9,999	7
10,000 ~ 19,999	0
20,000 원 이 상	1
평 균 액 수	5,932 원

표 3-46 의료비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1987	1988
지 출 가 구 수	7	12
의 료 비 액 수	3,000	6,350
호 당 평 균	90.1	192.4
의 료 비 지출 규모		
1) 10 만 원 미 만	0 2)	4
10 ~ 20	2	1
20 ~ 50	2	2
50 ~ 100	2	3
100 만 원 이상	1	3

1) 의료보험료 제외 자부담액.

2) 1987년은 간이조사로 소액지출은 제외되었음.

표 3-47 상병과 의료비 부담내역, 1988

가구번호	환 자		의 료 비 (천원)	병 명
	성	연 령		
3	여	57	500	신 병*
4	여	47	220	신 병
8	남	12	200	류마티스 (8 주 입원)
12	남	20	500	정신질환
13	남	13	1,000	사시 치료
17	남	57	500	중 풍 (사망)
21	남	70	1,200	임 파선암 (사망)
28	여	32	1,000	신병 (신경계통)

* 신병이란 뚜렷한 증세없이 노환, 농부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적 질병을 총칭하고 있음.

라. 이전지출 및 이전소득

농촌가족중 도시로 나간 출타가족(도시분가)과 농촌본가 사이에는 일정한 경제관계가 지속된다. 특히 취학출타자는 학비와 생활비의 대부분을 본가에 의존함으로써 농촌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취업출타자의 경우는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본가에 송금을 하거나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일시적 실직, 질병 등의 상황에서는 본가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귀향하기도 한다.¹³⁾ 이 밖에도 분가한 형제, 자녀의 경우에 분가시, 또는 분가후에 농촌가족과의 사이에 증여 등의 경제관계가 성립된다(이것은 이전 수지로 처리). <표3-48>은 출타, 분가 가족과의 경제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호당 백만원 이상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그 액수가 큰 편이다. 특히 출타가족뿐만 아니라 분가가족과의 사이에서도 순유출 액수가 적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표 3-48 출타가족과의 경제관계 및 이전수지

단위 : 천원

구 분		1985	1986	1987	1988
출타가족과의 경제 관계	보 조 (A)	17,400	18,200	19,730	21,286
	피 증 (B)	2,120	7,300	2,700	8,340
이 전 수 지*	수 입 (C)	-	-	2,330	11,240
	지 출 (D)	15,280	19,730	23,080	31,610
순 유 입 (B+C-A-D)		-	-	- 37,780	- 33,316

* 1985 ~ 86 년도의 이전수입은 조사되지 않았음.

표 3-49 취학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취 출 타 자 수	그 보 조 받 는 수	총 보 조 액	학 생 1 인 당 보 조 액	보 조 가 구 당 평 균 보 조 액
13 ¹⁾	13 ²⁾	20,901	1,608	2,090

1) 이 중 2명은 국민학생.

2) 이 중 1명은 학비는 형이 부담하고 본가에서는 식량만 보조.

13) 1985 ~ 88 전입자중 5명은 이러한 경우임.

표 3 - 50 취업출타자와의 경제관계, 1988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총 액	1 인 당 액 수	가 구 당 액 수
보 조 (A)	1	85	85	85
피증(송금, B)	6	8,340	1,390	1,668
A - B	-	8,255	-	-

취학출타자는 13명 모두가 본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으나 그중 한 명은 학비, 생활비는 같이 사는 형이 부담하고 본가에서는 식량조로 쌀 5가마를 보내준다. 총보조 액수는 2,090 만원으로 10 가구에서 209 만원씩의 큰 부담을 안고 있다.

1988년의 취업출타자는 총 31명중 6명이 1인당 평균 139 만원을 본가에 송금하고 있다. 반면 본가에서의 지원은 1명이 쌀 1가마를 가져다 먹은 것이 전부다. 이와 같이 송국 2리에 있어서는 취업출타자의 송금이 가계에 비교적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3 -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액수의 증감이 심하여 안정적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가자녀, 형제와의 이전수지를 보면 이전수입은 현금이 9건에 1,036 만원이고, 기타 T.V., 가스렌지 등의 가전제품이 4건 있다. 현금수입은 2호에서 분가한 자녀가 각각 600 만원(7번, 축사 신축비용), 200 만원(22번)을 보조한 것을 제외하면 100 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이전지출에서는 분가비용 또는 분가몫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사업자금이나 도시에서의 전세금조로 보조한 경우도 각각 1건 있다. 특히 분가와 관련된 지출이 과다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량은 8 가구에서 총 35가마를 보내 주었다. 분가몫을 제외한 총 이전지출은 1,091 만원으로 이전수입과 비슷한 액수이다.

마. 저축 및 부채

농가의 연간 총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은 부채 및 저축의 증감으로 나타난다.

송국 2리의 호당 평균 부채액은 '85년에는 177 만 6천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나 그후 크게 증가하여 '88년에는 387 만 9천원에 달하고 있다.¹⁴⁾ 부채구조를 차입처

14) 농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전국 농가평균 차입금은 '85년에 202 만 4천원, '88년에는 313 만 2천원이다.

원문누락

원문누락

표 3 - 54 고액부채가구의 개황, 1988

가 구 번 호	부 채 액 (천원)		비 고
	1985	1988	
3	2,055	5,000	아들 전세금 지원 ('88년 300만원)
6	3,000	6,000	차녀 분가비용 ('88년 600만원, 소임식자금등 전용)
10	5,150	7,040	분가자녀 방 얻어줌 ('87년 600만원)
12	500	9,100	농지구입 ('88년 960만원 지출)
14	0	7,300	돈사증축 ('88년 1,000만원중 700만원 빚얻음)
15	15,000	17,325	1982년 돼지파동 '83 ~ '84년의 소파동시 피해
20	1,700	7,050	아들 분가비용 ('87년 250만원)
21	0	5,350	동생 분가비용 ('88년 300만원)
22	35,000	40,850	1978년 정부미 보관창고 건설비용 융자
29	5,100	7,125	소득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 지출 ('84 ~ '87 대학보냄)
30	0	6,600	아들 결혼비용 부담 ('88년 900만원)
31	8,000	10,300	영농후계자 자금
32	5,200	6,340	'83 ~ '84년 염소파동때 실패

표 3 - 55 호당 평균 저축액

단위 : 천원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100 (%)
금 융 기 관	203	240	355	588	289.7
계 (契)	11	66	53	186	1,690.9
사 채	38	59	141	209	550.5
계	252	365	549	983	390.1

표 3 - 56 순부채 · 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호 수	(%)
순 부 채	500 만원 이상	11	(33.3)
	300 ~ 500	3	(9.1)
	200 ~ 300	3	(9.1)
	100 ~ 200	2	(6.1)
중 간	(- 100 ~ 100 만)	10	(30.3)
순 저 축	100 ~ 200	1	(3.0)
	200 ~ 300	3	(9.1)
	300 ~ 500	0	(-)
	500 만원 이상	0	(-)
계		33	(100.0)

표 3 - 54 고액부채가구의 개황, 1988

가 구 번 호	부 채 액 (천원)		비 고
	1985	1988	
3	2,055	5,000	아들 전세금 지원 ('88년 300만원)
6	3,000	6,000	차녀 분가비용 ('88년 600만원, 소입식자금등 전용)
10	5,150	7,040	분가자녀 방 얻어줌 ('87년 600만원)
12	500	9,100	농지구입 ('88년 960만원 지출)
14	0	7,300	돈사증축 ('88년 1,000만원중 700만원 빚얻음)
15	15,000	17,325	1982년 돼지파동 '83 ~ '84년의 소파동시 피해
20	1,700	7,050	아들 분가비용 ('87년 250만원)
21	0	5,350	동생 분가비용 ('88년 300만원)
22	35,000	40,850	1978년 정부미 보관창고 건설비용 융자
29	5,100	7,125	소득에 비해 과도한 교육비 지출 ('84 ~ '87 대학보냄)
30	0	6,600	아들 결혼비용 부담 ('88년 900만원)
31	8,000	10,300	영농후계자 자금
32	5,200	6,340	'83 ~ '84년 염소파동때 실패

표 3 - 55 호당 평균 저축액

단위 : 천원

구 분	1985 (A)	1986	1987	1988 (B)	B/A×100 (%)
금 융 기 관	203	240	355	588	289.7
계 (契)	11	66	53	186	1,690.9
사 채	38	59	141	209	550.5
계	252	365	549	983	390.1

표 3 - 56 순부채 · 저축규모별 가구수, 1988

		호 수	(%)
순 부 채	500 만원 이상	11	(33.3)
	300 ~ 500	3	(9.1)
	200 ~ 300	3	(9.1)
	100 ~ 200	2	(6.1)
중 간	(- 100 ~ 100 만)	10	(30.3)
순 저 축	100 ~ 200	1	(3.0)
	200 ~ 300	3	(9.1)
	300 ~ 500	0	(-)
	500 만원 이상	0	(-)
계		33	(100.0)

제 4 장

사 회 구 조

송국 2 리는 경주 이씨와 전주 이씨, 부여 서씨, 한양 조씨, 창녕 조씨 등이 어우러져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중에서 경주 이씨는 가장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씨족이다. 경주 이씨는 약 300 년전에 공주군 탄천면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와 정착했으며 현재 11 가구를 중심으로 경주이씨문중계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주 이씨는 경제적으로는 큰 위세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22 번 가구의 조부는 왜정때부터 자작농이었으며 논산의 대지주 조성환의 마름을 보면서 재력을 축적하여 소지주로 성장할 만큼 경제력을 길렀다. 현재 경주 이씨는 송국 2 리에서 마을의 정치·경제·사회면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씨족 집단이다.

전주 이씨는 30 번 가구 1 호 뿐이지만 현 가구주의 부친은 초촌면 추양리에서 이주해와 정착한 천석지기의 대 지주로서 경제력과 사회적 위세가 있는 집안이었다. 당시 송국 2 리 주민의 다수가 이 집의 소작인으로 있었다. 따라서 전주 이씨는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했고 마을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많은 농지가 분배되고 현재는 농지 6,100 평을 지니고 있는 평범한 중농으로 전락했다.

반면에 부여 서씨, 한양 조씨 등은 상대적으로 소수였지만 경주 이씨나 전주 이씨보다 선주민이었고 서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 보다 후에 이주해와 신흥 세력을 형성한 경주 이씨와 전주 이씨 등과 언제나 경쟁적이었으며 경주 이씨와 함께 마을의 3대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씨족구조는 1950-60 년대 이 마을의 지도력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경쟁

과 대결, 그리고 긴장과 갈등관계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연반계의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1970 년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와같은 경쟁과 갈등은 많이 사라졌으며 특히 외부사회와 상호관계가 증대되면서 마을내부의 갈등과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갈등구조 속에서도 송국 2 리 주민들은 마을의 자치를 위한 자생적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행정리가 마을에 조직되기 이전부터 송국 2 리 주민들은 대동계를 조직하여 마을지도자를 선출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협의, 결정, 집행해왔다. 또한 연반계와 위친계, 혼인계, 친목계 등을 조직하여 관혼상제의 예절을 지켜왔고 사회적, 경제적 협동을 도모했다.

경제적 협동체로서 두레는 마을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집중되는 노동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자생적 경제제도였으며 이러한 유습은 곶뱅이떡기로 일부 남아 있다.

송국 2 리의 정치구조는 이 마을의 씨족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경주 이씨는 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지도적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송국 2 리 주민들의 의사교환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혈연과 인척, 연령에 의한 또래 그리고 영농활동등 동질적인 경제·사회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령에 의한 또래는 사회망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송국 2 리 주민들의 중요한 종교는 불교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생활은 무속적 관습과 혼재되어 있어 불교신자가구의 94.1%가 무속적인 고사나 가신을 모신다.

농경사회 속에서 생활화되어 왔던 세시풍속은 1960 ~ 70 년대의 산업사회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이러한 세시풍속이 사라지게 된 것은 주로 기술의 발전에 의한 생활양식과 생활여건의 변화 및 의식·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와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식·가치관의 변화는 전기·전자제품의 확대보급으로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1. 사회집단

가. 혈연집단

경주 이씨 가문은 현재 李氏家の 鐘字 항렬의 14代祖가 공주 탄천면에서 이 마을 산학골에 옮겨와 정착한 이래 대대로 거주하면서 가세가 커져왔다. 따라서 이들은 공주에 남아있는 경주 이씨들과 산학골에서 살다가 이주한 몇 가구와 함께 송국 2리 11호가 주축이 된 경주 이씨 문중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 이씨 가문의 문중계가 언제 조직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1945년 이래 경주 이씨들의 문중활동은 선조들의 묘역관리와 제사의 집전 그리고 종중토의 관리등을 위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1985년도에는 위토로 논 1,000평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야 4,000여평을 판매하고 그 잔여액으로 문중계사를 만들어 증식시켜 오고 있다. 1987년도에는 경주 이씨 대종회부여군지부가 결성되었고 동시에 초촌면분회가 결성되었다. 현재 송국 2리 송현의 이완중씨가 경주 이씨 대종회 부여군지부 초촌면분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경주 이씨가들은 모두 면 및 군종회에 가입하고 있다.

① 조직목적

경주 이씨 문중계는 선조들의 묘역관리와 시제를 집전하고 종중토의 관리 및 문중 구성원의 친목과 공동관심사에 관한 협의·조정 활동을 위해 조직되었다.

② 구성원

송현의 경주 이씨 문중계는 산학골에 처음 이주한 鐘字의 14代祖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현재의 송국 2리에 거주하고 있는 11호와 공주 탄천면 및 대전 등지에 살고 있는 8~9호가 참여하는 20여호로 구성한다.

경주 이씨 문중계는 대종중, 중종중, 소종중으로 구성된다. 송현에 거주하는 경주 이씨 11호는 모두 대종중, 중종중에 속하며 소종중은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진다. 즉 6代祖 宜春의 직계로 이루어진 소종중 3호와 지손으로 이루어진 소종중 8호가 있다.

표 4 - 1 증중별 구성과 구성원 수

증	중	별	구 성 원 구 분	구 성 원 수*
대	중	중	鐘字의 14대조 후손	11호
중	중	중	// 10 //	11호
소	중	중	宜春의 직계 후손	3호
			// 지손	8호

* 송현에 거주하는 경주이씨 가구수

③ 기 구

문중계에서 종손과 문장은 문중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핵이다. 그러나 경주 이씨 문중계에서는 종손과 문장이 모두 마을 밖에 거주 한다. 즉 종손은 경제적 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공주군 탄천면에 있는 증중토를 경작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대증중의 문장도 현재 공주군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 내에서 경주 이씨 소증중의 문장 역할을 하던 가구주는 1987년에 작고하고 현재는 경주 이씨 대증회 부여군지부 초촌면 지회장을 맡고 있는 완중씨가 문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주 이씨 문중계에서 종손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증중의 재산 관리와 증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문장은 제사집전과 제수기 작성 등 업무를 관장하고 증토관리, 증회활동 등에 따른 증중계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중계원이 11호에 불과한 경주 이씨 문중계는 비교적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증회가 운영되고 있다.

④ 회의 및 의사결정

경주 이씨 문중계는 가을 時祭를 중심으로 중요한 모임들을 갖는다. 첫번째로 祭需記 작성을 위한 모임이 있다. 이는 시제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적고 소요예산을 추정하는 모임으로 대개 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제수기 작성은 宗中土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등을 감안하여 만들어 진다. 제수기는 늦어도 음력 9월 말까지는 작성되어 위토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증중계원에서 통보되어 제수를 준비토록 한다.

시제는 음력 10월 15일부터 시작되어 10월 20일까지 계속된다. 대증중에서 모시는 14대이하 11대조에 대한 시제는 10월 15일에 공주군 탄천면에 있는 묘역에

서 집전된다. 시제에는 종중별 종손이 초헌을 하며 제를 주재한다. 그러나 종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문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종중중의 시제는 10월 17일에 공주군 탄천면에 있는 10대, 9대, 8대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소종중의 시제는 10월 20일에 종중별로 공주와 부여에서 나누어 집전된다. 공주에서는 7, 6, 5대조의 시제를, 부여에서는 지손인 6, 5대조의 시제를 각각 집전한다.

시제가 끝나는 10월 20일은 경주 이씨 문중계의 宗會가 열린다.

표 4 - 2 시제일과 종회일

종 중 별	시 제			총 회
	일 시	장 소	대 상	
대 종 중	음력 10.15	공주군 탄천면	14, 13, 12, 11 대	음력 10. 20
중 종 중	10.19	"	10, 9, 8 대	
소 종 중	10.20	"	7, 6, 5 대	
소 종 중	19.20	부여군 초촌면	6, 5 대	

종회에서는 시제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고 묘역관리와 종중토 관리 및 종중활동에 관한 업무 등을 협의한다. 경주 이씨 문중계의 종회는 계원간의 평등적 원칙에 의한 합의 보다는 종법에 의한 위계질서가 존중된다. 따라서 종손 또는 문장의 의견이 크게 존중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종손과 문장 그리고 문중의 원로들의 합의하여 결정한다.

㉔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문중계는 구성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동일조상에 대한 제사를 공동집전하기 위하여 조직된 제사집단이므로 문중계의 경비의 대부분은 조상에 대한 제사와 묘역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며 이러한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계의 구성원들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경비의 대부분은 문중소유의 토지, 임야, 계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묘역의 석물축조나 위토답구입 등 투자사업이 발생하면 계원들은 이러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경비의 부담은 의무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 진다.

경주 이씨 문중계원들은 종중의 공동재산으로 부터 받는 혜택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중 계원들이 위토탑을 경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전부이다.

⑥ 재산관리

경주 이씨 문중계는 임야 2ha와 논 2200평, 밭 2,400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모두 위토탑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시제 등 문중활동의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별도로 문중계쌀을 모아 증식시키고 있다. 이 계쌀은 1985년도에 종중 임야 약 4,000평을 팔아 위토를 장만하고 나머지로 조성한 것으로써 1986년 말 현재 쌀 10.5가마가 있다. 이 계쌀은 연이율 20%로 문중계원 또는 일반인에게 대출되고 있다.

⑦ 규범과 통제

문중계는 동족원이 마을 단위에 집중 거주하며 조상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갖고 구성원 상호 간에 강한 연대의식이 있을 때 형성된다. 그러나 문중계에 참여하는 것은 흔히 사회집단에서 볼 수 있는 상호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중계 활동에는 강제 규정이 없으며 물리적 벌칙도 없다.

나. 지역집단

송국 2리의 지역집단으로는 자생적으로 결성된 대동계와 새마을계¹⁾가 있다. 대동계의 조직년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을 원로들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대동계가 있어 왔다고 하나 계획에 남아있는 대동계에 관한 기록은 1954년 이후의 것들 뿐이다.

송국 2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신송리 또는 송현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행정리였으며 현재 소사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자연부락인 수랑골도 한 때는 행정적

1) 비자생 지역집단으로 행정리가 있다. 그러나 송국 2리에서는 행정리의 기능이 새마을계에 포함되어 있고 내부구조도 일치하므로 행정리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계에 포함시켜 기술한다.

으로 신송리에 속했던 것으로 추측된다.²⁾ 이러한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서 송현은 옛부터 수랑골 산학골 송현, 참새골을 하나의 조직 단위로 하는 대동계³⁾가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다. 대동계는 공동재산으로 계쌀을 조성하고 마을의 자치행정에 따른 대소사를 협의 결정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송리가 여타 부락들과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송국리라고 부를 때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1972년 송국 2리로 행정리가 나누어 졌을 때에도 수랑골의 7가구를 포함하는 대동계는 흩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되어 왔다.

1) 조직목적

지봉계로 불려온 송현대동계의 기록이 없어 조직당시에 설정한 조직목적은 알 수 없지만 마을의 공동행사 개최, 마을지도자의 선출, 마을자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공동부담, 마을의 공동재산 소유 및 관리, 주민생활에 관련되는 주요의사결정 등에 있음을 볼 때 마을자치를 목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다른 마을에 속해 있는 수랑골 주민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서 송현 주민들 보다 불리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리별로 분배된 세멘트 등은 그 행정리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고 행정리별로 공동작업을 추진해야 했다. 행정리별로 조성한 공동재산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소유에 있어서도 행정리별로 그 소유와 관리권이 인정되므로 수랑골 주민들은 송현의 대동계에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등장했다.

1972년 새마을운동의 본격적인 점화는 송현의 대동계가 변화하게 되는 전환기를 만들어 주었다. 첫째로 그때까지 송국리의 부분적인 지역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송현동(송현, 참새골, 산학골의 3개 자연부락을 총칭함)이 공식적인 행정리로 분동되었다. 둘째로 송국 2리로 분동된 송현동 주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결과 충청남도에서 우수 새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이 하사하는 새

-
- 2) 수랑골이 송국 2리와 한마을이었음을 부락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대동계를 함께 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 3) 대동계는 한마을에서 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지봉계라고 부른다.
 - 4) 자생적 지역집단인 지봉계와 새마을계를 모두 대동계의 범주로 포함하여 함께 기술한다. 다만 조직운영상의 차이를 논하기 위해서 지봉계는 송현대동계로 칭한다.

마을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셋째로 새마을 포상금으로 받은 100 만원을 기금으로 하는 새마을계를 조직하여 송국 2 리 주민들 만으로 구성된 새마을계를 새로 조직하였다.

새마을계가 송국 2 리의 지역집단으로 새로 조직됨에 따라 기존의 송현대동계가 수행해 오던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은 새마을계가 맡게 되고 대동계는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 확인의 의식과 상부상조의 사회적 협동만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변했다. 새마을계는 마을대표자의 선출, 마을공동재산의 관리, 마을공동경비의 충당 및 마을대소사의 협의·결정·집행 등 마을 단위의 자치적 지역공동체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② 구 성 원

송현대동계는 송현의 주민 32 호와 소사리의 수랑골의 7 호 등 39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수랑골의 7 호가 송현대동계에 가입한 것은 수랑골이 소사리 보다는 송현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서로 품을 교환할 만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해온 우리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새마을계는 송현의 주민 32 호로만 구성한다.

그러나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자동적으로 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에 가입해야 한다.

송현대동계에 입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가 정한 입계미를 계에 불입하고 마을주민을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입계식을 거쳐야 한다. 입계미의 부과기준은 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즉 계에 가입하는 사람을 외지에서 새로 이주한 사람과 기존 마을 가구에서 분가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며 신규 이주자도 家를 구입 또는 건축하여 입주하는 元戶와 전세로 입주하는 전세입주자를 구분한다. 따라서 신규 이주자는 쌀 2 말을, 분가자는 쌀 1 말을 입계미로 부과하며 신규 이주자라도 전세입주자는 쌀 1 말만을 부과한다. 반면 새마을계는 이와같은 구분없이 모두 쌀 5 말을 입계미로 부과한다.

대동계가 신규로 입계하는 가구에 입계미를 부과하는 것은 계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의 소유권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권이 계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인정되므로 신규 입계자도 기존 계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비를 계에 납부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표 4 - 3 대동계의 공동재산과 입계규정

계 의 구 분	공 동 재 산	입 계 자 구 분	입 계 미 규 정	기 타 조 건
새마을계	새 마을회관 및 창고 (43 평) 대지 (300 평) 논 (382 평)	신규이지주자 분가자	쌀 5 말 쌀 5 말	마을주민을 초청하여 음식과 술을 대접 *
송현대동계	쌀 10.5 가마	신규이주자(원호)	쌀 2 말	//
		// (차가)	쌀 1 말	//
		분가자	쌀 1 말	//

* 송현대동계와 새마을계에 동시 가입할 경우는 1 회로 한한다. 신규입주자가 잔치를 할만한 사정이 안될 때 계에 술값(탁주 1 통값)을 내면 계날 신규계원을 대신하여 환영연을 베풀어준다.

송현 대동계나 새마을계는 구성원이 마을에 떠나 다른 마을에 이사하거나 사망함으로써 계원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는 계원들에게 출자한 자금을 반환하거나 계가 소유한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이주해 올 때 그들의 계원자격은 입계미의 부담 없이 복원된다. 계원이 사망했을 때 계원자격은 그의 가를 승계하는 자손에게 자동적으로 계승된다.

3 기 구

대동계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내부기구의 분화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자치행정적 종합공동체 기능을 보유한 새마을계가 사회적 친목과 협동기능 만을 담당하는 송현대동계 보다 복잡한 내부기구를 갖고 있다. 새마을계는 송국 2리의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주요 임원으로는 계장, 부계장, 총무, 감사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1 년이다. 새 마을계에 속한 내부조직으로 반장과 새마을추진위원회⁶⁾가 있다.

5) 법인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재산은 주민 총유로만 인정될 뿐 그 지분을 분배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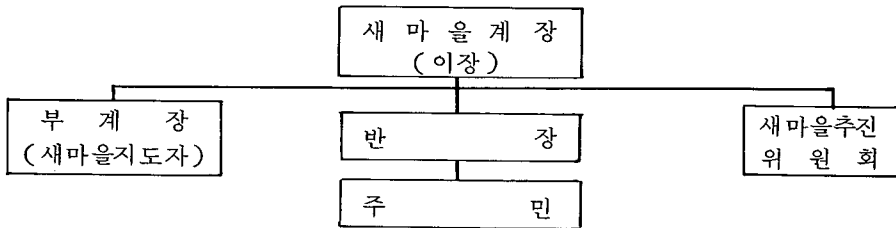
6) 새마을계의 새마을추진위원회는 리동개발위원회의 별칭이다. 새마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마을계장(이장), 부위원장은 부계장(새마을지도자)이 되고 위원은 반장, 청소년회장, 감사 그리고 선임위원 등 13 명으로 구성한다.

새마을계장은 이장직과 새마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겸하며 송현대동계장과 새마을영농회장직도 동시에 겸하게 된다. 새마을계장은 새마을계와 송현대동계를 대표하고 계의 일을 총괄하는 동시에 행정리장으로서의 행정처리와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새마을영농회장으로서의 대 농협업무의 처리까지 담당한다. 따라서 새마을계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새마을계의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며 새마을계장의 유고시에 계를 대표하여 계업무를 처리한다. 새마을계의 부계장은 새마을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당연직으로 새마을지도자직을 담당한다.

총무는 새마을계의 실무를 담당하며 계장, 부계장을 보좌하여 계업무를 집행한다. 총무는 계의 공동재산과 계의 일에 관한 제반 기록을 담당하며 그 결과를 계날 총회에 또는 감사나 계장 및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한다.

그림 4 - 1 송국 2리의 마을자치기구



감사는 계의 공동재산관리와 회계집행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마을추진위원회는 리개발위원회의 다른 이름이다. 다른 마을과 달리 송국 2리의 리개발위원회는 그 명칭도 새마을추진위원회로 변경하여 새마을계의 내부조직으로 편입시켰다. 새마을계는 마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협의·결정할 수 없으므로 극히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새마을계 추진위원회가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새마을계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추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없지만 계장의 판단아래 대부분의 마을 일들이 수시로 새마을계의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협의·의결되어 추진된다. 따라서 새마을계 추진위원회는 마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마을계 추진위원회가 다루는 중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의 처리방안 협의

- 새마을사업 등 마을개발과 관련된 정부시책의 수용과 추진방법의 심의·결정
- 영농자금의 분배방법 협의
- 새마을계의 계쌀 대출자의 선정과 적용 이율의 협의
- 마을공동재산의 관리방법과 임대자의 선정 및 임대료의 협의
- 면민 체육대회 등 외부행사의 참가와 경비부담 및 지원방법 협의
- 마을내 분쟁 등에 대한 중재
- 기타 새마을계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마을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안에 대한 협의

송현대동계의 내부조직은 새마을계 보다 단순하다. 계의 임원으로는 계를 대표하고 계업무를 총괄하는 계장과 계장을 보좌하여 계의 실무를 집행하는 총무가 있다. 송현대동계의 계장은 새마을계장이 겸하므로 송현대동계의 계무는 실질적으로 총무가 담당한다.

유사는 계책에 기록된 계원명단에 따라 순번제로 일년씩 담당한다. 유사의 임무는 당년도 계쌀의 대출과 수납을 책임지며 당년도 계를 유사집에서 개최한다.

④ 회의 및 의사결정

대동계는 1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보통 “계날”이라고 불리며 계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대동계의 “계”는 일년간의 마을일을 마무리 짓는 행사이므로 계날은 농사일이 끝난 동짓달에 개최한다. 송현대동계는 동짓날 보름날에, 새마을계는 동짓달 그믐날에 각각 개최된다.

표 4 - 4 대동계의 계날과 장소

계 구 분	계 날	계 장 소
송현대 동 계	음력 동짓날 보름날	당년도 유사집
새 마 을 계	동짓달 그믐날	계 장 집

새마을계는 당해년도 계장집에서 개최되며 전체계원이 참석한다. 계는 오전 10시경 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오후 1시경에 끝난다. 성원이 되면 계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총무로부터 일년간의 계의 결산보고가 있으며 감사로부터 감사보고가 따른다. 보고사항이 끝나면 계업무에 대한 협의·토론이 있고 계장선거를 마치면 계가 끝난다. 새마을계에서 협의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장선거

② 마을 공동재산의 관리방법 협의 결정

- 새마을 회관, 새마을창고 등의 이용방안과 임대조건 및 임대자 결정
- 마을 공동답의 임대자 및 임대조건 결정
- 계쌀의 신규 대출자 및 미수납 계쌀(또는 현금)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

③ 마을개발에 관한 협의

④ 새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할 사항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

⑤ 마을의 농업 노임단가 협의 결정

⑥ 기타 주요 안건

새마을제가 끝나면 계장은 참석한 계원들에게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대접한다. 이 때 잔치에 소요되는 경비⁷⁾는 계의 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날의 잔치는 일년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한 계장의 노고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베풀어 주는 잔치일 수도 있고 일년간 마을 주민들이 계장(리장)에게 베풀어 준 수고⁸⁾에 대해서 계장이 마을주민들에게 베푸는 대접일 수도 있다. 새마을제의 계장과 계원들은 이와 같은 “계”와 “계” 후의 잔치를 통해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유대와 단합을 도모하게 된다.

송현대동계는 당해년도 유사집에서 “계”를 한다. 계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1시경이면 끝난다. 새마을제와 같이 대동계도 계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총무로부터 일년간의 결산보고를 들은 다음, 계의 다음 일년간의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 대동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 ① 신년도 계쌀(계돈)에 대한 신규대출 및 지난해 미수납 계쌀에 대한 대책
- ② 계쌀(계돈)의 이자율 결정
- ③ 계원의 애경사에 대한 부조와 계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주요 사항

계가 끝나면 유사는 계에 참석한 계원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이 때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계가 부담한다.

7) 계의 경비를 “계먹이”라고 부르며 기본경비는 쌀 6말로 계가 부담하나(마을공동답에서 생산된 쌀) 계장은 이외에 본인의 경비를 추가하여 음식을 준비한다.
8) 계장에게 마을 주민이 제공한 수고는 리정세로 가구당 이장에게 연간 품 하나씩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동계의 의사결정은 투표보다는 합의제에 의한다. 대동계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새마을계의 계장을 선출하는 일 뿐이다. 그러나 새마을계장의 투표식 선출방식도 후보자를 세우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신임투표에 의한 것이므로 지도자선출방식이 공개된 합의제방식에서 지지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비밀투표방식으로 변형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각 계원은 일년간 마을의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투표용지에 기재해서 투표하며 가장 많은 신임을 획득한 사람이 다음 일년간의 마을 지도자로서 결정된다. 부계장의 선거도 주민들의 신임투표로 한다.

계장이 결정되면 계장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무, 감사를 임명한다. 리개발위원회의 위원과 반장의 임명은 이장의 권한⁹⁾에 속하지만 이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새마을계의 임원 및 마을 유지들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송현대동계장은 송국 2리 새마을계장이 겸임하므로 계장의 선출은 없다. 다만 총무는 계원의 합의에 의한 구두 추천에 의해서 계장이 임명한다.

마을지도자의 선출 이외에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공동재산의 관리와 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분배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마을 공동행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모두 계원들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결정된다.

㉔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대동계의 운영에 있어서 계원의 경비분담과 이익의 분배는 평등주의적 원칙이 적용된다. 송현대동계나 새마을계가 계의 기본자금 또는 계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경비소요가 있을 때 이의 부담은 모든 가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마을 개발을 위해서 경비를 분담해야 할 때에는 가구별로 재산의 소유정도나 가세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대동계는 영리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별도의 영리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적 개념에 의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동계원들은 계로부터 몇가지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다.

첫째로, 새마을계는 계의 공동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정부가 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공과금의 충당금으로 사용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대표적

9) 엄격히 논하면 리동개발위원장과 반장의 임명은 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읍면장이 임명(리개발위원회 설립에 관한 군조례 및 반장 임명규정)하므로 읍면장의 권한에 속한다.

인 공과금은 적십자회비, 방위협의회비, 각종 의연금, 성금, 군·면 체육대회 경비부담 등이다. 이러한 부과금은 그 금액이 커서 계가 부담하기 어렵지 않는 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모두 새마을계가 부담한다.

둘째로 계가 소유한 각종 공공시설, 공동재산 등에 대한 공동소유권과 이용권이 있다. 새마을계가 소유한 공공시설 및 공동재산은 새마을회관, 새마을창고, 공동담, 대지, 앰프 등이고 송현대동계가 소유한 공공시설물은 차일, 풍물 등이다. 이러한 것들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은 마을 이라는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요구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마을을 떠날 때에도 지급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계원으로 남아 있는 한 이들 공동재산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소유 지분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사용권이 정당화되고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균등하게 배분된다.

셋째로 송현대동계와 새마을계가 소유한 공동기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까다로운 절차 없이 금융편익을 제공받고 고리사채로부터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넷째로 계원이 당하는 애경사시에 부조를 받는다. 부조금은 막걸리 1말값에 불과하지만 공동체 성원간의 친목과 협동의 의미가 크다.

⑥ 재산관리

대동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재산과 공동시설, 기구, 비품 등을 조성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다. 공동재산과 공동시설 등은 지역공동체로서의 대동계가 사회체계를 존립, 유지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촉매적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송현대동계가 소유해 오던 혼례복과 혼인용구 등은 시대 변천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사라졌고 잔치에 사용하는 차일, 병풍 등이 남아 있으며 마을 공동그릇은 새마을 부녀회가 소유 관리한다. 따라서 송현대동계가 갖는 재산은 계쌀이 유일하다.

1986년말 현재로 송현대동계가 소유한 계쌀은 10가마 5말이었다. 당초 송현대동계의 계쌀은 계원 1인당 쌀 1말씩 출자한 것과 신규 계원들이 추가로 출자한 쌀로 이루어졌다.

대동계의 계쌀은 매년 계원들에게 대출되었다가 소정의 이자율을 병산하여 상환하게 됨으로써 증식되어 왔다. 계쌀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어야 하지만 대출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유사가 이를 책임지고 대출하거나 본인이 이를 사용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해 왔다.

송현대동계의 계쌀을 대출받고자 하는 계원은 사전에 희망사항을 계장 등에게 신청

해야 하며 계장은 총무와 증진급 유지¹⁰⁾ 들과 협의하여 대출자를 결정한다.
대출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사정이 어려운 계원이 대출을 희망했을 때 우선 대출한다.
- ② 대출자 1인에 대해서 계쌀 2가마이상 대출하지 않는다.
- ③ 이미 계쌀을 대출받은 계원이 이를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고 재출현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를 금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계쌀 대출자는 계날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된다. 계쌀의 대출은 대출받은 계원 1인당 상환보증금을 한사람씩 둔다. 따라서 계쌀 대출에 따른 상환보증인은 대출자가 계쌀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보증인의 계쌀 수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송현대동계의 계쌀 대출에 따른 이자율은 1987년 현재 년 2할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1966년까지 계쌀 대출이자율은 長利였으며 그 후 <표 4-5>에서와 같이 년차적으로 낮아져 왔다. 이 표에 의하면 1961년 정부의 고리채 정리로 잠정적인 이자율 인하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반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송현대동계의 계쌀 대출이자율의 변화

기 간	출 자 이 자 율	비 고
1954 ~ '60	5 할	1961.5.16후 고리채 정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었음
1961	2 할*	
1962 ~ '66	5 할	
1967 ~ '70	4 할	
1971 ~ '79	3 할	
1976 ~ 현재	2 할	

새마을계는 1973년 새마을사업 성과에 대한 대통령 포상금 100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므로 계설립에 따른 계원의 현금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성금과 현금 및 노력 부담으로 건설된 새마을회관, 새마을창고, 대지 등 공동재산의 조성은 계원들의 부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이들은 대부분 반장이나 리개발위원 기타 마을 원로들을 말한다.

새마을회관은 새마을계장의 책임아래 관리된다. 새마을회관은 당초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총회, 반상회 등 마을 회의용으로 건립하였으나 대부분의 마을회가 계장집 또는 마을 사랑방에서 이루어지므로 새마을회관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마을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다.

새마을창고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비료나 농용자재의 보관 또는 생산된 벼와 쌀등을 출하하기 전에 보관할 목적으로 건립하였으나 이의 이용도 또한 매우 낮다. 새마을창고는 일부 비료나 양곡을 보관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마을 공동비품인 차일,

표 4 - 6 새마을계 소유 공동재산, 1986

구 분	공 동 재 산	규 모	비 고
부 동 산	새 마을 회 관	23 평	1973 년 새마을운동으로 건립
	새 마을 창 고	20 평	" "
	대 지	100 평	1972 년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건립
동 산	논	382 평	대통령 포상금으로 1973 년에 구입
	현 금	54,000 원	초촌면 농협에 예치
	쌀	8.7 가마	계원에게 대출

* 이들 공동재산중 논과 대지만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뿐 다른 재산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릇, 상, 풍물 등을 보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고시설의 대부분이 유효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마을 주민에게 임대¹¹⁾ 해 주고 있다. 이 임대료는 새마을계의 수입으로 가산된다. 마을 공동담은 1973 년도에 새마을계의 기금으로 구입하였으며 1985 년까지 영세농가에 임대되어 경작되었다. 경작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대료도 쌀 1 가마를 계에 납부하고 계날 “계먹이”로 쌀 6 말을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1986 년부터 영세농가에게만 임대되던 조건은 폐지되고 마을내 전체주민 중에서 경작을 희망하는 사람 모두가 경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료도 쌀 1.6 가마에서 2.5 가마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경작을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영세민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임대 우선권을 주고 있다.

동산으로서 계쌀과 계금은 계원에게 대출하여 증식시키는 방법과 은행에 예치하여

11) 1986 년도에 새마을창고는 이종오에게 쌀 1 가마를 사용료로 하여 임대되었다. 이 씨는 이 창고를 농기계 창고겸 개인 양곡창고로 사용한다.

증식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1986년말 현재 새마을계가 보유한 계쌀은 8가마 7말이고 현금은 54,400 원이었다. 계쌀이 대출될 때에는 송현대동계와 같이 대출자마다 상환보증인을 설정하며 피보증인이 계쌀의 상환이 어려울 때 이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계의 계쌀 대출자 선정기준도 송현대동계와 같으며 이자율도 동일하다.

새마을계가 보유하고 있는 계쌀과 계금은 매년 마을의 자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며, 그 잔여금과 공동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합하여 다시 계원에게 대출하거나 은행에 적립하여 계금을 증식시킨다.

㉑ 규범과 제재

새마을계와 대동계는 연 1회 전체 계원이 참여하는 “계”를 개최하여 일년 사업을 결산하고 신년도 계획을 수립하며 지도자를 선출한다. 또 계날은 신규계원을 환영하는 환영연을 갖는다. 이렇듯 단순히 사업을 논의하는 회의라기 보다는 계의 성원 모두가 함께 모여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단합대회장이 되며 이러한 과정은 대동계가 지역공동체로서 그 성원간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구성원의 의무이다. 따라서 모임에 불참하는 성원은 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즉 계에 불참자는 「하루의 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계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喪이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게 될 때 그 벌금은 면제된다. 또 계가 정한 공동활동에 불참하게 될 때에도 상응한 만큼의 벌금의 품값으로 환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다. 이익집단

1945년 이후 송국2리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자생적 이익집단은 連班契¹²⁾이다. 연반계가 결성되기 전 이 마을에는 소위 씨족간, 경제적 상·하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다. 마을 상사에 있었어도 구시대의 신분구분으로 볼 때 소위 상층민은 하층민의 喪事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층민의 당연한 봉사를 기대함으로써 갈등이

12) 연반계는 마을의 가구 전체를 수개의 반으로 나누고 각 반이 한 조가 되어 마을 상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연대성을 강조하는 계이다. 송국2리의 연반계는 1반이 5호로 구성되어 있고 각반에는 반장이 있다.

표출되었다.

연반계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사에 전체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3일간 喪家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1946 년도에 조직되었다.

1965 년도에는 마을의 중견 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마포계가 조직되었다. 마포계는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었던 당시 47 ~ 51 세의 연령층에 있었던 주부들 20 명이 부모등 친상에 마포를 보좌할 목적으로 조직된 계다. 이 계는 1986 년도에 마지막 보좌를 끝으로 해체되었다.

1966 년도에는 상사에 가장 긴요하게 쓰여지던 탁주를 보좌할 목적으로 연로한 부모나 친지를 모시고 있는 주민 18 명이 술통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구성은 18 ~ 50 세로서 또래적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 계의 계장은 배인성씨이다.

1974 년도에는 계원의 喪故시 쌀을 보좌할 목적으로 위친계가 조직되었다. 이 계는 이연종씨를 계장으로 당시 25 ~ 47 세의 청장년 13 명으로 구성되었다. 1980 년도에는 다시 이연종씨가 계장이 되어 술통계를 조직하였다. 이 계에는 배인성씨가 조직한 술통계에 가입하지 않은 16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녀자들로 구성된 혼사계가 1975 년도에 조직되었다. 이 계는 당초 30 ~ 44 세의 연령층에 있는 주부 11 명이 자녀 婚事에 상호 부조할 목적으로 조직하였으나 당시 자녀들의 연령도 낮고 결혼 빈도도 낮아 契로서의 결속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매년 2 회씩 회동하며 놀이하는 놀이계로 전환하였다. 1987 년도 현재 놀이계의 계원은 결혼한 주부로서 35 ~ 56 세의 연령층에 있는 주부 15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송국 2 리에는 1970 년대 초까지 전통적인 쌀계와 돈계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1971 년도에 마을 주민중의 한 사람이 주민들의 계돈은 물론 이웃 마을의 계돈까지 갖고 도주한 사건이 있는 후 殖利목적의 계가 사라졌다고 하며 이러한 식리계의 조직구조는 추적되지 않는다.

송국 2 리에 조직된 최초의 비자생적 이익집단은 1962 년도에 설립된 송국리농업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송국리 농업협동조합은 송국 2 리에 조직된 것이 아니고 분동되기 이전의 송국리에 조직된 것이며 조합장도 송국 1 리 주민이었고 그 사무실도 송국 1 리인 아랫궁령리에 있었다.

송국리 농업협동조합은 비료인수, 영농자금의 배분 등에서 소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1973 년 4 월에 초촌면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해체 · 통합되었다.

1977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이 마을에 조직되어 왔던 각종 부녀조직은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새로 조직된 새마을부녀회도 그 조직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동작업 등을 통한 공동기금 조성 등 과거의 부녀회 활동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7년도의 새마을부녀회의 재편과 함께 새로 조직된 비자생적 집단은 새마을 영농회다. 새마을영농회는 1959년 이래 농촌지도소에서 조직해 오던 농사개편구락부와 1973년 이래 농협이 조직해 오던 협동회를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하나의 마을 사회집단으로 통합하여 재 조직한 것이다. 그러나 송국2리의 새마을영농회는 전체농가를 회원으로 하나 내부조직이 없고 정기적인 회의도 없어 회원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1 연 반 계

(가) 조직 목적

마을 주민들이 당하는 상사에 마을 주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상사를 공동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46년에 조직되었다.

(나) 구성원

연반계는 공동체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마을의 가구주 전체를 구성원 대상으로 한다. 연반계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하지만 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상사를 당했을 때 마을 사람으로부터 상례에 필요한 노력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이 상계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 1986년 현재 연반계의 구성원은 3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 현재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은 쌀5말을 入契米로 납부해야 한다. 연반계의 계원자격은 사망·탈퇴·제명 등에 의해서 상실된다. 계원이 사망하면 그 자격은 그 적장자에게 승계된다. 계원이 타지역으로 이사할 때 본인의 탈퇴의사에 따라서 탈계할 수 있다.

(다) 기구

연반계는 계장, 부계장, 총무, 재무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계를 개최하는 책임을 질 유사를 윤번제로 정하고 있다. 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여 계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계의 실질적인 업무는 총무가 수행한다. 계장, 부계장은 계의 상징적인 대표이며 계의 실무는 총무가 담당한다.

총무는 계장, 부계장을 보좌하여 계의 업무를 집행한다. 즉 상고시에 총무는 계장, 부계장과 상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원의 소집과 보좌의 지급 및 상례에 따른 제반 절차의 집행을 지원한다. 총무는 계의 소집과 계에 관한 제반 기록의 보관을 담당한다. 재무는 계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연반계는 마을에 상사가 났을 때 장례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마을내의 상고가 발생하면 계장과 부계장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총무는 총무위원(호상의 역할)에, 재무는 재무위원직을 담당하여 상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를 도와 상례를 주관한다. 장례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은 표와 같다.

표 4 - 8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장례위원회	구성원	역할
위원장	연반계장	장례를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
부위원장	연반계 부계장	위원장을 보좌함
총무위원	연반계 총무	인력의 동원과 분배 장례절차의 수립과 진행 장례물품의 구입
재무위원	연반계 재무	장례행사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재정조달

연반계는 계를 개최하고 당해년도 계삿을 관리하며 상구를 관리하기 위한 유사를 1명씩 두고 있다. 유사는 모든 계원이 1년 단위로 윤번제로 담당하며 그 순서는 계원의 명단순서¹³⁾로 한다. 유사는 당년도 계삿의 증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날 계행사의 장소를 제공하며 참석하는 계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이날 유사경비는 계가 부담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연반계는 음력 11월 9일이 계날이다. 그러나 계날은 마을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계는 당년도 유사 집에서 개최되며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되어 오후 1시경에 끝난다. 따라서 오후 1시까지 계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계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날 계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3) 계책에 적힌 계원 명단은 대부분 연령순이다.

- ① 연간 계의 결산보고
- ② 계쌀의 대출과 수납에 관한 사항
- ③ 보좌 지급에 관한 사항
- ④ 제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계규의 개정과 계원의 입계 또는 탈계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계 운영에 관한 사항

계의 임시회의는 계원의 상고시에 자연스럽게 열리며 임시 회의에서는 보좌지급과 장례지원계획 등에 관한 논의를 한다. 상고이외에도 계장 또는 계원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의는 열릴 수 있다.

연반계의 의사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합의제에 따른다. 계장과 부계장은 연령순에 따라 최고령자와 그 次者가 순차적으로 맡는다. 그러나 총무와 재무는 계원의 구두 추천에 의해서 계원일동의 동의를 얻어 계장이 임명한다. 계장이하 임원들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계장과 부계장은 계원자격을 잃을 때까지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장, 부계장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연로해져 계활동에서 은퇴하고 그 계원자격이 그의 차대에 의해서 승계될 때 계장 및 부계장은 다른 계원이 맡게 된다. 이와는 달리 총무와 재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총무와 재무는 실제의 계무를 담당하므로 대개 청장년층에서 담당하게 되고 이들의 수년간 봉사한 후에는 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다음 세대에 임무를 넘겨준다.

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도 가급적 계원의 합의를 도출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계장, 부계장 등은 계의 원로 또는 여론지도자로서 계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연반계는 계 창설당시 계 기금으로 쌀을 5되씩 각출하여 계쌀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각 계원의 책임아래 증식시켜 왔다. 이와같이 증식된 계쌀은 계원이 상을 당했을 때 보좌로 지급되며 그 일부는 계날 유사먹이로 사용된다.

계원이 상을 당했을 때 연반계는 계규에 정한 보좌로 쌀 1가마를 지급하고 계가 보유한 喪具인 차일, 상, 식기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계원 일동은 개인 일을 모두 멈추고 3일간 상가에 모여 상례에 참여하며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와같은 공동체적 쌀보좌와 노력지원은 계원의 직계존속과 비속에 한하여 지급하되 회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연반계는 계 조직이후 1952년까지는 계 쌀을 급속히 증식시키기 위하여 연리 8할의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왔고 1953년 이후 부터는 장리변을, 그리고 1968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금리를 낮추어 오다가 1976년 이후부터 년이율 20%의 금리를 부과해 오고 있다.

연반계의 계 쌀 대출은 계원 1인당 2가마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출에 따른 상환보증인을 세워 대출금의 상환에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1986년 현재 연반계의 계 쌀은 8가마 6말이었고 현금으로 1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규범과 통제

연반계는 상사를 공동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그 규범이 명확하고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로 모든 계원은 상사가 발생하면 모든 개인 일을 중단하고 상가에 와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3일간 무조건 노동력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불참 1일에 대해서 2일의 성인 품삯을 벌칙금으로 부과하며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은 제명된다. 또한 계날과 상사에 3회이상 불참할 때에도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둘째로 모든 계원은 총무의 지휘아래 배분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상사에서 중요한 일은 상포 등 상례물품을 구입하는 일, 상사를 친척·친지에게 알리는 일, 상여의 운구, 산역 등이 있다. 따라서 계장과 총무는 계원들의 연령과 능력을 감안하여 인력동원 계획을 세운다.

셋째로 연반계의 상여기구를 사용중에 파손했을 때에는 상주는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위 친 계

(가) 조직 목적

위친계는 마을이라는 대면적인 작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해온 또는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또래들이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친상 등에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적, 사회적 협동을 통한 친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된다.

이들 위친계는 이러한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자금을 조성하여 공동관리하고 그 잉여금으로 상을 당한 계원에게 보좌하며 계원일동이 상례에 참여하여 노력지원은 물론 친상과 다름없이 同情한다. 위친계는 그 명칭이 다양하나 크게 위친계, 상

포계, 술통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위친계는 1981년 이 후 신규조직이 나타나지 않으며 1986년 현재 송현에는 위친계(1)와 술통계(2)만 남아있다.

표 4 - 9 위친계의 조직현황

계 구분	대 표 자	조직년도	집 단의성	구성원수	집단의재산	보 좌 조 건
술통계	배인성	1966	남	18	쌀 9가마	술 30통, 노력지원
위친계	이연중	1974	남	13	쌀 12가마	쌀 3가마, "
술통계	이연중	1980	남	16	쌀 8가마	술 30통, "

(나) 구성원

위친계는 마을내에서 성장한 또래 또는 성장 후라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자주 어울리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또는 부모의 친상이라는 사회적 통과의례를 감당해야 하는 공통적인 의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직한다. 송현마을에 있어서 위친계는 연령적 또래 보다는 부모의 친상을 준비하는 사람들간에 이루어진 사회적 연대의식에 의한 결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위친계는 대부분 30~40대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하며 그 구성원은 연반계와 같은 공동체적 집단이기 보다는 구성원 수가 적은 친밀집단이고 응집력도 강하다. 송현에서 위친계의 평균 구성원 수는 15명으로 나타난다.

위친계의 계원은 계를 탈퇴하거나 사망 또는 제명에 의해서 계원자격을 잃는다. 또 계는 그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다. 즉 한번 집단이 구성되면 구성원의 탈퇴나 제명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계원의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원이 사망, 탈계 등으로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의 연고자가 그를 대신하여 계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원은 대체될 뿐이며 추가적 가입은 아니다.

(대) 기 구

위친계는 계장, 부계장, 총무, 재무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계를 개최하고 당년도 기록을 담당하는 유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기구들은 계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관습적으로 정하고 있다.

계장은 계의 일을 총괄한다.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며 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또는 승계한다. 총무는 계를 소집하고 서류를 보관하는 등 계 운영의 실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재무는 계의 재정 및 재산관리를 담당한다. 유사는 당해년도 계쌀 또는 계돈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책임을 지며 당해년도 계날 계의 장소를 제공하고 계에 참석한 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위친계에서는 계장, 총무, 유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계장과 부계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장은 계 구성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자동적으로 담당하므로 사망, 제명 또는 사회적 활동에서 은퇴할 때까지 계장직을 수행하며 계장 유고시에는 다음 고령자인 부계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총무나 재무는 계원들의 불신임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유사는 계책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담당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위친계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년 1 회 가을에 개최한다. 즉 년 1 회 개최하는 계날이 정기총회일이다. 계는 당년도 유사집에서 개최한다. 계는 오전 10 시경부터 시작되어 오후 1 시면 끝나며 계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계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된다. 계에 상정되는 안건은 연반계의 경우와 대동소이 하다.

위친계의 의사결정방법은 합의제다. 계원 중에서 최고령자는 계장에 그 차고령자는 부계장에 자동 임명되며 총무와 재무는 계원의 구두추천과 계원의 합의로 계장이 임명한다. 계의 업무도 기본적으로 전체 계원들의 합의 아래 결정·집행된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위친계는 계 구성 당시 계의 자본금을 현물로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증식시켜 계원의 상사에 보좌하고 계의 운영비로도 사용한다. 계의 출자금은 대부분 쌀로 2 ~ 3 말씩 거두어 조성했다.

한편 위친계는 계원들의 상사시에 쌀 또는 술을 보좌하고 노동력을 지원한다. 위친계 별로 지급하는 보좌조건은 < 표 4 - 9 > 와 같다.

위친계는 보좌지급 대상자를 정해놓고 보좌의 회수를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각 계원은 계의 성립 시기에 보좌대상자를 지정해야 되고 지정된 보좌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좌가 완료되면 계 활동도 따라서 완료되고 계는 해체된다.

(바) 재산관리

위친계가 조성한 계쌀은 계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또는 의무적으로 이 계쌀을 대출받고 소정의 이자를 부가함으로써 계의 공동재산을 증식시킨다. 1967 년 이전까지 위친계는 대출 계쌀의 이자율을 장리로 부과 했으나 1977 ~ 83 까지는 40 %, 1984

~ 85는 30%, 1986년 이후로는 20%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계쌀의 대출은 계원의 합의에 따라 계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당해년도 계쌀의 대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쌀 증식의 책임을 유사가 진다.

계쌀의 현물대출 수요는 식량이 부족하고 화폐경제가 일반화 되지 않았을 때인 1950~60년대에 많았으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자본주의 및 화폐경제의 진전 그리고 농가경제의 규모확대와 질적향상 등 일련의 경제사회발전에 따라서 현물인 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고 이에 따른 현물 수요도 줄어 계쌀의 대출희망자가 줄었다. 따라서 유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의 재산액은 일정한도 이상 넘기지 않도록 조정¹⁴⁾ 하며 계자금을 농협에 정기 예치하여 그 이자로 보좌지급등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새) 규범과 통제

위친계의 규범은 그 구성원이 또래로 구성된다는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또래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 규범이 발전된다.

첫째로 계날 모임에 불참하는 성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위친계는 계 모임에 참석함을 제1의 의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에 불참하는 성원에 대해서는 성인 한품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유없이 3회 불참하는 경우 제명토록 계규에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로 모든 계원은 계원이 당하는 상사에 참석하여 서로 동정하고 친상과 같이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째로 계원이 보좌를 타고 이주하여 계를 떠날 때 계는 계원이 보좌받은 액수를 회수한다.

넷째로 계원이 계의 보좌를 타지 않고 탈계할 경우 대부분의 계는 그가 기여한 계자마에 관계 없이 보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섯째로 계가 정한 보좌대상자가 아닌 본인이 사망했을 때 계는 일정액의 보좌를 지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계규에 규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이루어진다.

14) 계쌀이 10가마이상으로 증식되면 초과분을 계원들에게 분배해준다.

③ 친 목 계¹⁵⁾

(가) 조직목적

이 계는 1975년도에 자녀들의 결혼시 상부상조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혼사의 빈도가 낮고 이로 인해서 계원간의 결속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매년 2회씩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놀이계로 성격을 전환 했다. 따라서 본계는 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놀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계원들의 자녀 혼사와 친상 등의 애경사에는 별도의 상부상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나) 구성원

본 놀이계의 구성원은 본 마을에 거주하는 결혼한 주부로 구성한다. 이 계는 조직 당시 24~44세의 연령층에 속하는 주부 12명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송현 놀이계는 다른 마을의 친목계 보다 계원간의 응집력이나 친밀성은 낮다. 현재는 3명이 더 추가 되어 15명으로 구성한다.

계원의 자격은 송현에 거주하는 부녀자로 규정하며 신규가입 계원은 계가 정한 입계미(1976년의 경우 쌀 1말 3되)를 지불하면 가능하다. 한편 계원자격은 탈계, 사망 등에 의해서 상실한다.

(다) 기구

놀이계는 내부기구의 분화가 낮다. 계 임원은 계장과 유사만이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놀이계는 봄, 가을로 2회 계를 하기 때문에 유사를 2명 두고 있다. 계장과 유사역의 역할은 다른 계와 유사하다. 다만, 놀이계의 유사역은 계가 지급하는 계경비 이외에 자기 경비를 추가하여 유사먹이를 마련한다.

(라) 회의와 의사결정

놀이계의 회의는 봄과 가을로 정하고 있다. 봄의 계는 명승지를 찾아다니는 “봄놀이”계이다. 이들은 음식 등을 장만하여 가까운 계곡, 강가 또는 고적지를 찾아 놀이 한다. 가을계는 계원의 단체여행 등으로 이루어질때도 있지만 대부분 계의 정산을 겸한 전통적인 계로 마을의 유사 집에서 갖는다. 가을의 계는 계규로 정해져 있

15) 송현에 있는 친목계로 부녀자들의 친목계 외에 만사계가 있으나 이것은 송현, 세담, 비안, 초평, 삼거리, 강변, 진호, 수랑골, 오평 사람들로 구성된 광역사회 집단이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한다.

는 11월 16일에 개최한다. 계는 오전 10시경에 시작하여 오후 1시경에 마치며 유사가 준비한 음식을 들고 계를 마감한다. 이날 계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봄의 계놀이요 소요된 예산의 정산, 활동보고, 계 쌀의 신규대출, 명년도 놀이계획 등을 논의하며 기타 신규회원, 탈제한 회원등의 처리 등도 논의된다.

놀이계의 의사결정은 완전 합의제이다. 계장은 연령순에 따라 최고령자가 담당하고 유사는 계의 명부 순으로 매년 2명씩 교대로 담당한다.

(따) 경비부담과 이익분배

놀이계는 계 조직 당시 쌀 1말씩 각출하여 조성했으며 계원들이 년리 30%씩의 이자를 적용하여 증식시켜 왔다. 그러나 1983년 이후부터는 년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하고 있다.

증식된 계자금은 계원들의 “놀이경비”로 소요된다. 1985년의 경우는 증식된 자금으로 부곡온천에 부부동반 관광여행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계 쌀 2가마를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 규범과 통제

놀이계도 다른 계와 마찬가지로 계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에 불참하는 계원에게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 즉 계 1회 불참 시에는 성인 하루 품삯을 벌과금으로 부과하며 3회 불참 할 때에는 제명대상이 된다.

④ 새마을부녀회

(가) 조직목적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 141 호에 의거 기존의 마을단위 여성 사회집단들을 통합하여 조직하였다.

새마을부녀회는 부녀자들의 복지향상과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로 건전한 가정의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여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새마을부녀회는 부녀교양사업, 소득증대사업, 인보활동, 저축증대, 가족계획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부녀회 육성지침을 ①근접철약 ②저축의 생활화 ③가족계획의 실천 ④ 인보복지사업 ⑤가정생활의 과학화 ⑥부녀부업의 확대로 정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의 예규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 ② 자녀교육에 관한 사업
 - ③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 ④ 환경 및 의·식·주 생활개선 및 가정의례 간소화에 관한 사업.
 - ⑤ 농촌영양개선사업
 - ⑥ 부녀자 영농지도사업
 - ⑦ 농기계 조작 사용 훈련사업
 - ⑧ 국민건강 및 국민영양사업
 - ⑨ 가족계획
 - ⑩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사업 (예 : 구판장 운영)
 - ⑪ 농촌 복지문화사업
 - ⑫ 협동 봉사사업 (공동작업실시, 공동작업장 운영)
 - ⑬ 농번기 유아원 운영
 - ⑭ 저축사업 (금고사업, 절미저축, 폐품수집)
 - ⑮ 가정부업 및 공동부업 개발
 - ⑯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부녀새마을 사업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송국 2리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규약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용하지 않고 정부에서 제시한 예규를 준용하고 있다.

(나) 구성원

새마을부녀회의 예규는 마을 내에 거주하는 20 ~ 60세의 부녀자들로 새마을부녀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부녀자는 명예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송국 2리 새마을부녀회는 예규에 의해서 60세 이하의 부녀자를 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명단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몇몇 열의있는 소수 회원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다) 기구

예규에 따르면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 ~ 2, 감사 1인, 총무 1인 및 부장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국 2리에서 나타난 새마을부녀회의 기구는 회장과 총무 뿐만이 확인된다.

새마을부녀회가 이와 같이 내부기구의 기능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의 업무가 단순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회장은 회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새마을부녀회는 자생적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소 및 농협등과 빈번히 접촉하고 그들로부터 행정지시와 지도를 받는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회의 제반 기록보관과 회계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임원의 임기는 예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회의 및 의사결정

예규에 규정된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가 있다. 송국 2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총회를 읍력정월에 개최한다. 예규에 나타난 총회에서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약의 승인 및 변경
- ② 임원의 선출
- ③ 결산 및 예산 승인
- ④ 임원의 해임 및 제명
- ⑤ 본회사업의 기본방침 및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결정

새마을부녀회의 의사결정은 재적회원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선출은 물론 모든 사업계획은 회원의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새마을부녀회의 회장은 연령순에 의해서 계장을 선출하는 계집단과는 달리 지도력, 활동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합의로 선출한다.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장이 면, 지도소, 보건지소, 농협 등 유관기관을 수시 방문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또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계획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는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임명한다.

(마) 경비분담과 이익분배

새마을부녀회는 계집단과는 달리 회원들의 출자에 의한 공동자금을 조성하지 않는다. 반면 이들은 벼베기, 모내기, 발매기등 공동작업을 통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시설, 공동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다.

비자생적 집단으로서 새마을부녀회는 농촌부녀자들의 사회활동과 생활향상을 위한 학습단체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농촌 환경개선, 의식주등 생활개선, 유아원 운영,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및 보건에 관한 계몽·지도·실천, 가정의례계몽·실천

지도, 건전가정 육성지도, 각종 교육, 농촌 복지문화사업·사회봉사 사업 등은 새마을 부녀회의 주요 학습활동의 내용이다.

그러나 송국 2리의 새마을부녀회는 이와 같은 학습활동은 매우 저조하며 저축활동 등 경제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바) 규범과 통제

새마을부녀회는 회원들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규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에 불참했을 때 다른 계집단과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

2. 사회망과 지도력

가. 사회망 구조

송국 2리 주민 중에서 남자 경영주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관계를 조사¹⁶⁾ 하여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의사교환망 (communication network)은 〈그림 4-2〉와 같다.

송국 2리에는 경주 이씨들이 문중계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고 부여 서씨, 한양 조씨 등이 결혼을 통한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경주 이씨 가문과 전주 이씨 가문 그리고 한양 조씨 및 부여 서씨 등의 인척에 의한 연합세력간에는 1970년대 중반까지도 잠재적인 경쟁의식과 갈등¹⁷⁾이 내면화되어 있었으며 마을 이장직을 서로 경쟁적으로 맡곤 했다. 이러한 가문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문중조직과 친인척 관계는 송국 2리 주민들의 의사교환망 형성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인척 관계에 의한 의사교환망은 존재하지만 연령구분에 의한 또래집단적 요소가 보다 강력하게 주민들의 사회망형성에 영향을 준다. 반면 산학골, 송현, 참새골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누어 지는 공간적 분리는 주민들의 의사교

16) 이 조사에 응답한 경영주는 총 32 호 중에서 22 호였다. 〈그림 4-2〉는 이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7) 28 번가구주 등의 증언에 의하면 1950-60년대까지 이들 두 세력은 마을지도자 선출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서로 경쟁적이고 대립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많이 해소되었다.

환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에서와 같이 송국 2리에는 두개의 의사교환망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두개의 의사교환망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령이다.

<그림 4-3>은 송국 2리의 사회망 중에서 3번, 7번, 19번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교환망을 분리한 것이다. 이 의사교환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공통점은 이들의 연령이 50대 이상의 노령층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집단을 분석해 보면 19번을 중심으로 하는 경주 이씨들과 3번을 중심으로 하는 결혼에 의한 인척관계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번과 6, 7, 9, 22, 23번 가구는 경주 이씨 문중구성원이고 3번과 8번, 20번 가구는 재종간이고 3번과 24번 가구는 처남 매부 간이다. 따라서 <그림 4-3>을 친·인척관계로 세분화하면 각각 <그림 4-4>의 내용과 같이 구분된다.

<그림 4-5>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의사교환망이다. 이 그림에서 18번, 28번 31번 가구는 이 의사교환망에서 3개의 핵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18번과 28번 가구를 핵으로하여 구성하는 의사교환가구인 5번, 16번 가구와, 1번, 36번들의 가구주는 40대 초반의 장년층들로서 땅콩, 참깨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독농가들이다. 31번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12번, 13번, 14번 가구는 20대 후반의 청년 들로서 특히 13, 14번 가구는 영농후계자들이다.

그림 4-2 송국 2리의 사회망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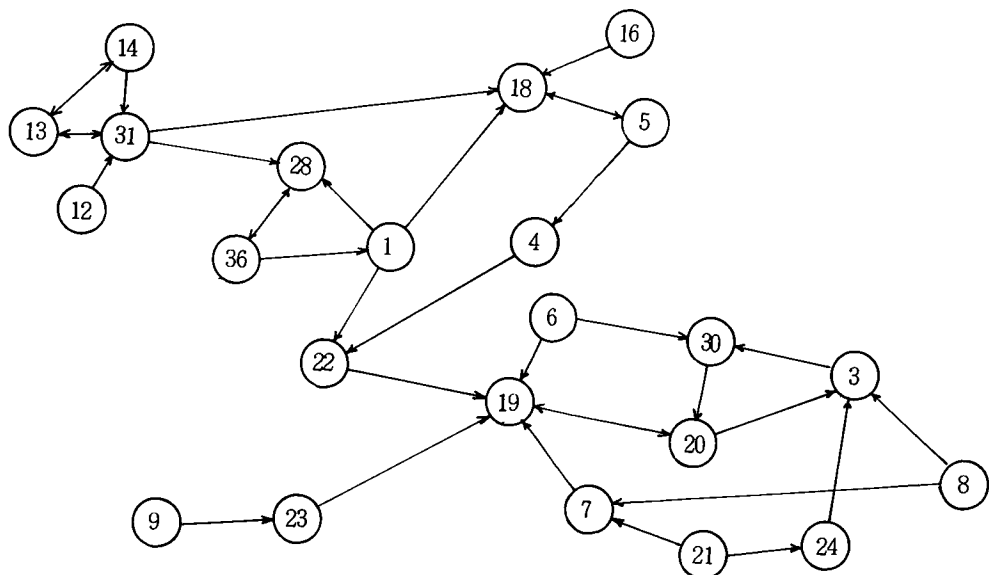


그림 4 - 3 사회망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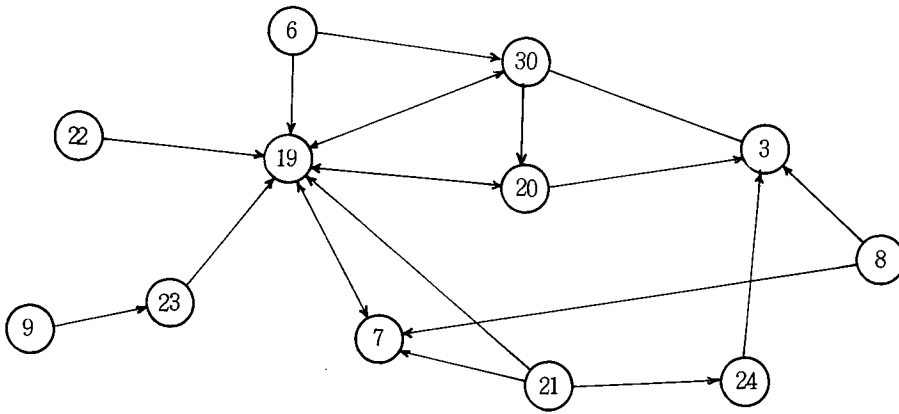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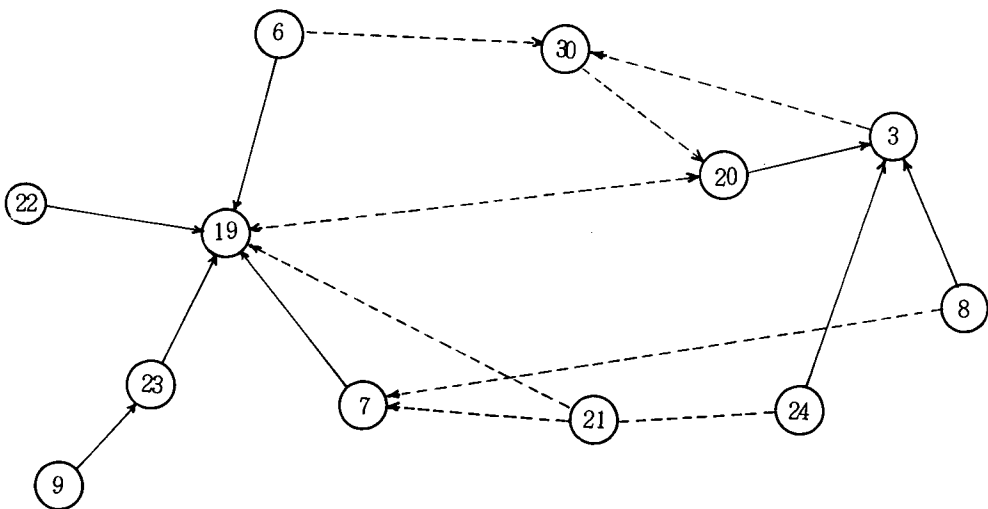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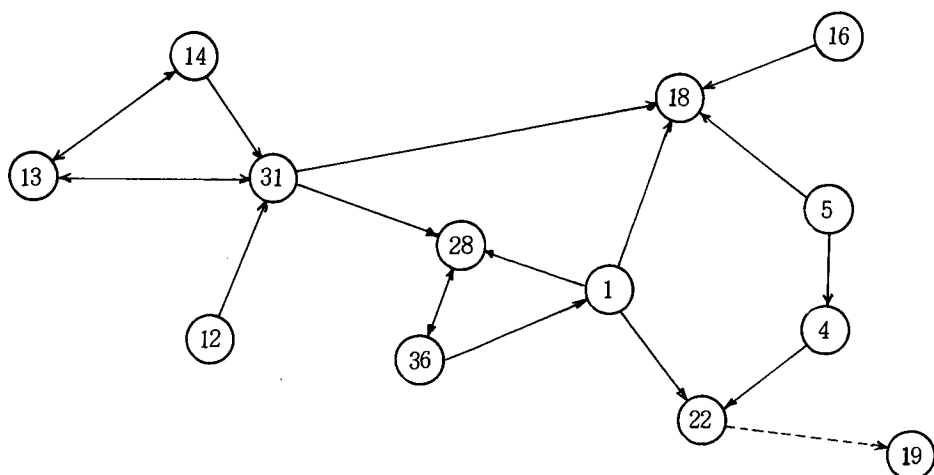
그림 4 - 4 사회망 I의 친인척 관계



19 번 가구를 중심으로 한
문중구성원 관계 (실선)

3 번가구를 중심으로 한
인척관계 (실선)

그림 4-5 사회망Ⅱ



〈그림 4-5〉에서 22번 가구는 청장년들과 노령층의 사회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번 가구주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졸업자로서 이장과 평화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한 인물로서 외부사회에서 활동범위가 넓다. 그러나 그는 외부사회와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서 마을내에서 주민들과의 어울림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림 4-2〉에 나타난 의사교환망을 통해서 볼 때 송국 2리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자주 어울려 대화하는 상대로 많은 선택을 받은 인물들은 3번, 7번, 18번, 19번, 28번, 31번 가구주이다. 그러나 많은 선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노령층과 청·장년층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하는 22번 가구도 중요한 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마을내의 여론지도자로 간주된다.

송국 2리의 사회망은 크게 노년층과 청장년층의 연령층으로 구분된다. 노년층의 사회망을 재분석해 보면 이 속에는 두 개의 혈연 및 인척간의 의사교환망이 존재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의사교환망은 다시 20대 후반과 40대의 연령층으로 구분되는 의사교환망이 존재한다. 또한 20대 후반과 40대의 연령층에 의해 구분된 사회망은 각각 영농활동을 위한 의사교환망이기도 하다. 이들 20대 후반과 40대의 사회망구성원들은 각각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농을 계획하고 협의하며 공동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또래집단이다.

나. 지도력 구조

송국 2 리의 지도력구조는 19 번 가구주와 22 번 가구주를 중심으로 양립하고 있다. 그러나 19 번 가구주와 22 번 가구주는 경주 이씨 문중구성원이며 삼촌간이다. 또한 19 번 가구주와 22 번 가구주는 서로 상대방을 송국 2 리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송국 2 리의 지도력구조는 양립하고 있지만 두 지도자가 서로를 마을지도자로 인정하는 화합형이다.

19 번 가구는 전직 국민학교 교사를 역임한 인물로 교직에서 퇴직한 후 마을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학식과 교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의 대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22 번 가구는 19 번 가구의 장형의 아들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1971 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자 당시 송국 2 리 이장으로서 마을주민들과 일치단결하여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결과 송국 2 리가 충청남도 우수 새마을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마을방문과 대통령하사금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인물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70 년대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도 당선되어 마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상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도 알려져 있다.

송국 2 리의 지도력구조에 있어서 4 번, 25 번, 31 번 가구주와 5 번과 28 번은 차하위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4 번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현직 이동개발위원회 위원이다. 28 번 가구주는 전직 이장이었고 31 번 가구주는 현직 이장이다. 또한 4 번, 5 번, 28 번, 31 번 가구주는 땅콩, 참깨 등 특용작물과 수도작등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에 노력하고 있는 독농가들이다.

송국 2 리의 지도력구조는 두 개의 핵으로 양립되어 있지만 이들은 서로 지도자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력의 두 핵은 상호 협동적이고 보완적이다. 즉 19 번 가구는 노령층을 대변하는, 그리고 22 번 가구는 청장년층을 대변하는 지도자로 역할하고 있다.

송국 2 리에 있어서 경주 이씨가 지배적인 씨족은 아니지만 이씨 문중에서 마을지도자로 두 사람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표 4-11>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송국 2 리의 이장직을 대부분 경주 이씨 집안에서 담당해 왔고 문중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송국 2 리의 지도자들은 25 번 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경지규모가 크고 경제

그림 4 - 6 송국 2리의 지도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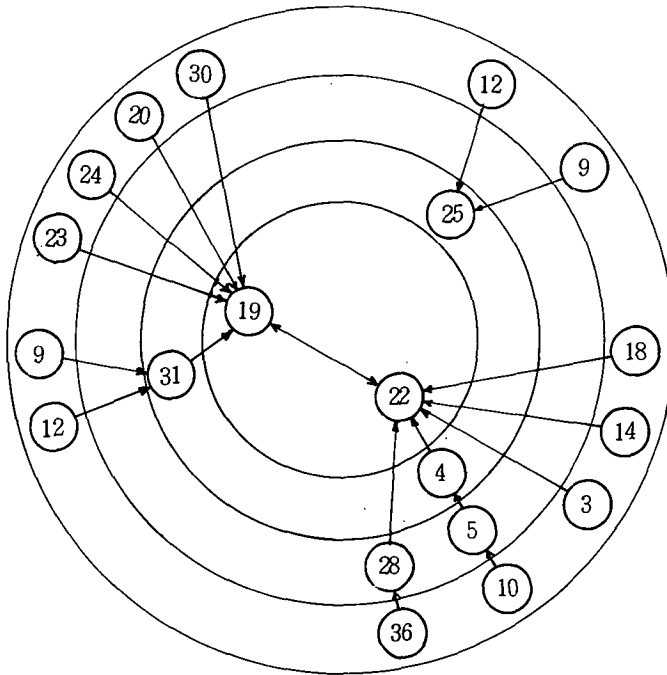


표 4 - 10 소시오메트리에 나타난 지도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가구번호	연 령	학 력	경 지 규 모		주 요 경 력	
			소 유	경 작	전 직	현 직
19	60	고 졸	3,800	3,200	국 교 교 사	개 발 위 원
22	53	대 졸	6,920	12,000	새마을지도자 평화통일주체국민 회의 대의원	"
4	52		1,500	7,300	-	-
5	44		3,030	7,030	-	개 발 위 원
25	58		2,000	0	-	"
28	40	중 졸	800	3,800	이 장	"
31	29		3,800	7,450	청 소 년 회 장	이 개 발 위 원 장

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 속한다. 특히 22번 가구주는 경제력과 정치력 그리고 가문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사회적 위신을 모두 갖추고 있다.

표 4-11 역대 이장명단

기 간	성 명	기 간	성 명
1945 ~ 47	이 보 원	1976 ~ 76	정 병 각
1948 ~ 49	김 영 록	1977 ~ 77	이 건 중
1950 ~ 58	서 우 선	1978 ~ 79	이 종 환
1959 ~ 60	이 완 중	1979 ~ 80	정 병 각
1961 ~ 68	이 보 원	1980 ~ 81	이 종 환
1969 ~ 70	이 완 중	1982 ~ 86	정 병 각
1971 ~ 72	이 재 우	1987 ~ 87	서 팔 성
1973 ~ 74	이 건 중	1988 ~ 88	이 증 우
1975 ~ 75	서 팔 성	1988 ~	조 창 현

3. 종교 및 문화

가. 신앙생활

불교는 송국 2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신자가구는 17호로서 전체가구 34호의 50.0%를 차지하며 기독교 신자는 3호, 천주교는 1호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에 종교가 없다고 답변한 가구는 13호로서 전체가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신자들의 신앙생활 태도를 보면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들은 매 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갖는데 비하여 불교신자들은 연간 2~3회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정도로 그친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신자 중에서 월 1회이상 절에가서 예불을 드린다는 신자는 1가구였고 불교신자 가구의 76.5%는 절을 찾아 불공드리는 횟수가 연간 5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에 전혀 다니지 않는 불교신자도 2가구나 있다.

무속은 전체가구의 64.7%가 관습적으로 지내고 있지만 이를 종교로 인정하고 있는 가구는 없다. 또한 불교신자 가구 중에서 94.1%는 무속을 지내고 있는 반면 기독교 가구에서는 10월 고사등을 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속을 지내고 있는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 또는 가구원 중에서 노령가구원

표 4 - 12 종교별 가구수와 신앙생활

종 교 별	가 구 수	예배(예불) 횟수별 가구수				
		주 1 회	년 10 회 이상	년 5-10 회	년 5 회 미만	하 지 않 음
기 독 교	3	3				
천 주 교	1	1				
불 교	17	-	1	1	13	2
기 타	-					
무 종 교	13					
계	34	4	1	1	13	2

표 4 - 13 10월고사를 지내는 가구주의 연령과 가족유형

가구주연령분포	가 구 수	가 족 유 형			
		핵 가 족	직 계 가 족	기 타	계
30세 미만	3		3		3
30 ~ 39세	4	2	2		4
40 ~ 49세	3	3			
50 ~ 59세	7				
60세 이상	5				
계	22 호				

표 4 - 14 가신별 고사드리는 가구수

가 신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	업 신	축간신	우마신	수문신	삼 신	기 타
가구수	6	22	4	5	3	-	2	3	1	-

주: 家神別로 모시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성주신은 대청(대청이 없는 곳에서는 안방에 모신다). 터주신은 장독대, 조왕신은 부엌의 부뚜막, 업신은 장광, 축간신은 변소, 우마신은 외양간, 수문신은 대문, 삼신은 안방 아랫목 벽(또는 벽장) 조상신은 안방 옷목의 벽.

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속을 지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연령을 보면 무속과 가구주 연령과의 관련성이 적은 듯 하지만 40세 미만의 가구주의 가구원 중에는 대부분이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송국 2리는 무속적 관습이 다른 마을에 비하여 많이 남아있는 마을이다.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국 2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시는 가신은 터주신이다. 터주신은 장독에다 짚으로 만든 터주가리를 세우고 이 터주가리 속에 좁쌀이나 벼를 종지에 담아둔다. 이와같은 풍습은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근본인 씨앗을 가장 소중히 여겨온 습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터주신 다음으로 많이 모시는 가신은 성주신으로 이는 가장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신이다. 성주신 다음으로는 조상신, 조왕신, 업신, 수문신, 우마신, 삼신 등이 있다.

가신을 모시고 10 월고사를 지내는 무속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성했으며 고사를 지낸 고사떡을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풍습을 지니고 있었으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10 월고사와 함께 계절적으로 지내던 영등제, 용왕제, 칠석제, 동지제, 재수굿 등도 미신으로 치부되어 크게 줄었다. 1986년 현재 영등제와 용왕제를 지내는 가구는 각각 1호, 7월칠석제를 지내는 가구는 6호, 동지제를 지내는 가구는 5호로 조사되고 있다.

송국 2리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는 초촌면 산적리에 있는 감리교회이며 불교 신도들은 공주군 계룡면에 있는 신원사에 주로 다니고 있다.

나. 문화와 세시풍속

송국 2리에는 세시풍속이외에 특별히 전승되어 오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농경과 함께 전승되어 오던 세시풍속도 사회변동과 함께 거의 사라지고 공동노동력 조직의 일종인 곶배이 먹기와 설날, 한식, 추석등 주요 절기에 따르는 풍속이 약간 남아있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농경 세시풍속은 1960년대 초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었으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의 산업사회화의 물결 특히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농업생산양식의 변화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의한 미신타파, 허례허식타파, 의식간소화, 근검절약 등 일련의 사회운동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 많다. 1950-60년대에 남아 있던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정 월

○ 설 날

설날에는 각 집안별로 4대조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당내의 장손집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이다. 당내간에도 지손의 직계조상에 대한 차례는 장손집에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지손별로 별도로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집안이 함께 모여 떡국을 끓여 먹고 난후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이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다. 이와같이 조상에 대한 제사가 끝나면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한다.

○ 윷놀이

정초에는 집안 가족끼리 윷놀이를 했다. 윷놀이는 집안의 남자, 부녀자 또는 남녀가 함께 모여 놀이하던 풍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집안에서의 윷놀이는 하지 않는다. 다만 정월 보름날 마을 부녀자들이 편을 잘라서 윷놀이를 하며 하루를 즐기는 놀이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정월 대보름

정월 14일날은 오탁으로 밥을 지어먹었고 보름날은 일찍 일어나 부럼을 깨고 더위를 팔았다. 부럼깨기는 보름날 호두나 땅콩, 밤 등 견과를 깨어 먹는 습관으로 부럼을 깨면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한해를 지낸다고 믿었다.

또한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을 호명하여 대답하면 “내더위 사가라”라고 하여 소위 더위를 파는 습관이 있었다. 이와같이 보름날 여러가지 채소와 함께 오탁밥을 지어 먹고 부럼을 깨어먹는 것은 긴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지방질, 무기질 등을 보충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위를 판다는 것도 건강관리에 유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보름날의 이러한 풍속은 1970년대 초에 사라지고 그 유습만 일부 남아 있다.

○ 지신밟기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꿩가리, 징, 북, 장고 등으로 구성되는 사물놀이패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주로 부엌의 조왕신과 우물의 용왕신 장독의 터주신 장광, 외양간 등의 각종 가신에게 풍년과 안택을 기원하는 안택굿을 했다. 안택굿이 끝나면 집주인은 음식을 대접하고 돈이나 쌀을 농악대에 내어 놓았으며 이때 걷은 쌀이나 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였다. 이러한 안택굿도 1970년대 초부터 사라졌다.

○ 입춘

입춘날은 春聯을 대문이나 장광, 부엌문 등에 써붙이고 송축하는 행사다. 흔히“ 立春大吉 建陽多慶 ” 또는 “ 雨順風調 時和豐年 ” 등 문귀를 많이 써 붙였다. 이와같은 춘축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라 졌다.

② 이 월 달

○ 영등맞이

주로 이월 초 하룻날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고 해서 떡등 음식을 부엌 찬장아래 또는 장독대에 차려놓고 집안의 풍년과 가족원의 무병, 무사, 안택을 빌었다. 현재는 영등맞이제를 지내는 가구가 1호 뿐이다.

③ 삼 월 달

○ 화전놀이

마을 주위의 산에 진달래꽃이 만발할 때 부녀자들이 진달래꽃을 지저먹고 하루를 즐기며 놀이하는 풍속이다. 화전놀이는 친목계 등의 봄놀이 등으로 대체되었다.

○ 한식

한식은 중요한 節祀로 술과 과일, 떡, 포, 탕, 적 등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했다. 오늘날 한식제는 묘에서 간단히 치러지며 성묘로 대체한다.

④ 사 월 달

○ 초파일

초파일은 공주에 있는 신원사를 주로 찾아 불공을 드렸다. 초파일날 절을 찾는 사람은 불교신도 뿐만 아니라 비신도들도 함께 절을 찾아가기 때문에 초파일날 절에 나들이하는 것 자체가 놀이이기도 하다.

⑤ 오 월 달

○ 단오절

오월 단오절은 큰 명절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節祀도 지내고 부인네들

중심으로 그네타기, 널뛰기 등 놀이를 하는 마을축제일이기도 했다. 단오절은 1960년대 말 이후 사라졌다.

⑥ 칠 월 달

○ 칠석

칠월칠석날은 마을공동으로 공동우물을 청소하고 용왕제를 드렸으며 각 가정별로는 칠성단 등에 치성을 드리며 가정의 재앙과 액운을 막아달라는 기원을 했다. 그러나 마을공동우물이 1972년도에 폐쇄되면서 마을의 공동행사가 사라졌고 가정별 칠성제도 6호를 제외하고는 드리는 가구가 없다.

○ 백중

백중날은 농사일을 끝내고 주인이 머슴이나 일꾼들에게 하루를 즐기도록 용돈을 주고 음식과 의복을 새로 장만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초 이후 머슴이 사라지면서 백중날 행사도 사라졌다.

⑦ 팔 월 달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순서는 설날과 같으며 당내간 친척들이 함께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식사 후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한다.

⑧ 시 월 달

시월은 상달이라 하여 초 사흘날 경에 각 가정마다 햇곡으로 떡을 빚어 가신들에게 고사를 지낸다. 고사 지내는 날은 각 가정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주신, 터주신, 조상신, 삼신, 업신, 측간신, 수문신 등 여러 가신들에게 두루 정성을 드렸으나 최근에는 간소화 되어서 주로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조상신에게 고사를 드리며 고사지내는 가구도 크게 줄었다.

⑨ 동 지 달

동지는 작은 설로 인정되어 명절로 삼았었지만 현재는 24절기 중의 하나로서의 의미 이상을 찾기 힘들다. 전통적으로 동지날에는 붉은 팻죽을 쑤어 대문이나 벽에

뿌려 역귀의 침입을 예방한다고 했으나 현재에는 동지날 팻죽을 쑤어 먹는 유습만이 남아 있다.

4. 문화생활 및 에너지이용

가. 전기·전자식 생활용품의 보급

1973 년도에 전기가 들어오자 송곡 2리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제까지 마을의 공동우물과 개인 우물에서 두레박을 이용하거나 수동식 펌프를 이용하던 식수 공급방식이 전기모터를 이용한 자가수도로 바뀌게 되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해 오던 공동우물은 덮개를 하여 폐쇄하고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3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기보급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TV의 보급이다. 1985 년도에 TV는 1 가구를 제외하곤 나머지 가구에 모두 보급되었으며 12 가구가 칼라TV를 보유하고 있었다. 1988 년도에는 전체 가구가 TV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칼라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24 호로 나타나고 있었다.

TV의 보급으로 주민들은 외부사회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반 정보를 직접 수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물가모임이나 사랑방모임에서 외부 사회의 변화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신하던 입장에서 상호취득한 정보를 교환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져서 마을의 여론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TV의 확대 보급은 TV앞에 가족들을 묶어 놓게되어 저녁이면 형성되던 마을 사랑방도 사라지게 되었다.

전기밥솥, 냉장고, 가스렌지 등 생활용품의 확대보급은 식생활 뿐만 아니라 주부들의 생산 및 여가활동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1985 년 당시 전기밥솥은 84.4 %의 가장 높은 보급율을 보였으며 냉장고는 50.0 %, 가스렌지는 6.3 %의 보급율을 보였다. 그러나 1988 년에는 가스렌지의 보급율이 96.9 %로 가장 높아졌고 냉장고도 90.6 %로 높아졌으며 전기밥솥은 81.3 %로 1985 년 수준과 비슷하다. 즉 1985 ~ 85 기간 중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가스렌지와 냉장고의 보급이다. 이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함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같은 전자·전기제품의 확대 보급으로 주부노동의 쾌적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조리,저장의 위

생적 처리가 가능해지고 신선한 음식물을 사용할 수 있어 농촌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표 4 - 15 전기·전자제품의 보급

구 분	1 9 8 5		1 9 8 8	
	보유가구수	비 율	보유가구수	비 율
칼 라 T V	12	37.5	24	75.0
냉 장 고	16	50.0	29	90.6
전 기 밥 솥	27	84.4	26	81.3
가 스 렌 지	2	6.3	31	96.9
V T R	-	-	1	3.1
전 자 렌 지	-	-	-	-
전 축	3	9.4	2	6.3

반면에 VTR이나 전축은 아직도 보급율이 낮다. VTR은 전체 32가구 중 1대, 전축은 2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전자렌지 등은 아직 보급되지 않고 있다.

칼라TV, 냉장고, 가스렌지 등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의 확대보급은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생활의 쾌적성을 높여 노동시간의 절약과 문화적 충족감을 높혀주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가스렌지와 냉장고 등의 사용이 소득수준 및 생활양식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과소비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칼라텔레비전 등으로부터 쏟아지는 현란한 도시문화에 주민들이 문화적 열등감을 갖게되어 탈농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 교통·통신수단의 보급

송곡 2리에 전화가 처음 가설된 것은 1975년이다. 이 전화는 정부가 행정용으로 가설한 것으로서 행정전화라고 불렀다. 1982년도에 일반전화가 가설될 때까지 행정전화는 마을밖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

1982년도에 일반전화가 14대 가설되면서 전화의 사용은 일반화되었다. 처음에는 수동식 교환전화였으나 1984년도에 자동식으로 전환되어 송곡 2리 주민들의 통신망은 부여광역전화통신망으로 재편되었다. 전화는 1985년도에 24대가 보급되어 75%의 보급율을 보였으나 1988년도에 3대가 추가 보급되어 전화보급율은 84.4%에 높아졌다.

그러나 신문구독율은 1985년 보다 낮아졌다. 1985년도에 일반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6호였으나 1988년도에는 4호로 감소했고 농업관련 신문의 구독도 5호에서 4호로 감소했다.

한편 개인별 교통수단은 증가했다. 1985년도에 오토바이를 보유한 가구는 5호였으나 1988년도에는 7호로 증가했다.

다. 에너지 이용

1985년도 송국 2리 전체 가구의 78.1%가 난방연료로 화목을 사용하고 있었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21.9%였다. 그러나 1988년도에는 화목을 사용하는 가구가 31.2%로 감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비율은 68.8%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취사용 연료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5년도 취사용 연료로 화목은 여름과 겨울철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름철 취사용 연료로 화목을 사용하는 가구는 37.5%를 겨울철에는 84.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8년도에는 여름철 취사용 연료로 화목을 사용하는 가구는 12.5%로, 겨울철에는 25.0%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가스가 여름철과 겨울철을 막론하고 중요한 연료로 부상했다. 1988년도 여름철에 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20호로 전체 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가스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53.1%에 이르고 있다.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여름철 취사용 에너지로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전기가 가스에게 그 중요한 위치를 넘겨준 것이다. 즉 1985년도 여름철 취사용 연료로 전체 가구의 56.3%가 사용하던 전기는 1988년도에 21.9%로 낮아졌으며 겨울철에도 그 사용도는 18.8%에 머무르고 있다.

송국 2리의 난방용 연료와 취사용 연료가 화목에서 연탄 또는 가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화목채취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인건비가 연탄을 구입하는 것 보다 비싸졌다는 이유와 함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욕구가 증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 - 16 난방 및 취사연료 이용구조

단위 : %

구 분			1 9 8 5	1 9 8 8
난방	화 목		78.1	31.2
	연 탄		21.9	68.8
	석 유		-	-
	계		100.0	100.0
취사	여 름	화 목	37.5	12.5
		연 탄	3.1	3.1
		석 유	-	-
		가 스	3.1	62.5
		전 기	56.3	21.9
		계	100.0	100.0
	겨 울	화 목	84.3	25.0
		연 탄	6.3	3.1
		석 유	3.1	-
		가 스	-	53.1
		전 기	6.3	18.8
		계	100.0	100.0

제 5 장

공 간 구 조

송국 2 리의 농업지대의 성격은 중간지대에 속하며 인근에 논산, 부여, 공주 등 비교적 큰 도시를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으나 도로와 교통수단의 제약으로 비교적 오지에 속하는 마을로 남아 있다. 즉 논산 - 부여를 연결하는 4 번국도가 송국 2 리 마을에서 5 km 정도 떨어진 석성면 소재지인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도로로 수분 간격으로 직행, 완행, 시내버스들이 왕래하고 있지만 송국 2 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곳 십자가에서 버스를 타고 초촌면 소재지인 응평리까지 와서 다시 1.5 km 정도 거리를 도보로 걸어오거나 논산 또는 부여시내버스를 타고 응평리까지 와서 다시 도보로 1.5 km 정도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러한 교통의 불편으로 해서 주민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십자가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면소재지인 응평리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도보로 약 20 분 정도 소요되며 응평리에서 십자가 까지는 버스로 5 분, 부여읍과 논산읍까지는 버스로 각각 25 분, 40 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강경 - 십자가 - 공주 - 천안을 연결하는 799 번 지방도로가 현재 확장,포장되고 있으므로 마을근처를 지나가는 이 도로가 준공될 경우 송국 2 리의 교통조건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국 2 리의 마을공간구조가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1972 년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3 년도의 경지정리 1978 년도의 야산개발 등에 의해서다. 송국 2 리에 새마을운동이 점화된 것은 1972 년 1 월에 정부로부터 세멘트 330 포를 지원받은 후 부터이다. 이장 이재우씨와 새마을지도자 노규철씨를 중심으로 전주민은 마을총회에

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잘사는 마을을 만들 것을 결의하고 197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건립, 마을안길확장, 농로확장, 공동우물과 세탁장건립, 어린이놀이터 건립, 지붕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담장개량, 축사개량 등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한편 소득사업으로 양어사업, 양묘사업, 한우비육사업 등을 추진했고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새마을가꾸기 기금모금운동을 벌여 새마을가꾸기 운동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과¹⁾로 송국 2리의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충청남도의 우수사례가 되었고 도지사가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였으며 대통령으로부터 하사금 일백만 원을 받았다.

경지정리사업은 1973년에 장정뜰에만 실시되었으며 경지정리에 포함된 송국 2리 주민들의 농지는 4.0 ha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화천의 하천정비와 진입로, 농로등은 송국 2리 주민들의 생활과 영농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연화천의 정비로 마을진입로가 폭 4~5m로 확장되어 트럭과 같은 대형 교통수단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농로와 수로의 정비로 경운기와 트랙터의 농경지 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농업기계화를 촉진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야산개발사업은 1975년도에 책정되어 1978년도에 시행되었다. 송국 2리 야산개발사업 지구의 총면적은 36 ha에 달했지만 송국 2리 주민들이 소유한 경지는 7 ha에 불과했다. 그러나 야산개발사업은 마을야산의 경지전환과 함께 농로망의 변경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작목의 도입으로 영농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1. 주민의 생활권

송국 2리 주민들의 주 생활권은 논산읍을 중심으로하는 정주생활권에 포함된다. 송국 2리가 행정적으로는 부여군 초촌면이지만 논산읍-광석면 오강리-웅평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통하여 논산읍에의 접근성이 부여읍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초촌면의 동남단은 논산시장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논산읍은 충청남도 남부의 교통중심지로서 점차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이 지역의 중심지로 자

1) 송국 2리의 새마을운동은 별첨 부록 송국 2리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참조할 것.

리를 굳혀가기 때문에 논산읍은 송국 2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논산시장을 이용하는 이외에 논산읍내의 의료기관, 고등학교시설 등을 주로 이용하며 결혼식, 사교적인 모임도 대부분 논산읍내에서 갖는다. 논산은 대전과 함께 이 마을 주민들이 취업을 위해서 출타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부여읍은 행정적으로 군청 소재이기 때문에 송국 2리 주민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제 2의 중심지가 된다. 즉 부여읍에는 군청, 경찰서, 등기소, 교육청, 농협, 축협, 농촌지도소, 보건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으로부터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면소재지인 응평리는 면사무소와 면단위 농협, 보건소지소,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정수요에 응하고 있고 국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협연쇄점을 제외한 시장기능이 없어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매우 약하다.

석성면 소재지인 십자가에는 직행 버스정류소, 택시회사 등이 있어 주민들의 출타에 편의를 주고 있으며 약국 등이 있어 송국 2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통과지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약한 편이다.

표 5 - 1 생활중심지별 주요시설

	공공기관 및 시설	시 장 시 설	의 료 시 설	교육시설	사회문화시설
논 산 읍	세무서, 우체국, 농산물 검사소지소, 농지개발조 합, 산림조합연합회, 은 행, 기차역, 고속버스터 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백화점, 수퍼마 켓, 상설시장, 5일시장	보건소, 종합병 원, 의원, 한의 원, 치과의원, 약국	중고등학교	도서관, 극장 (공연장), 음 식점, 숙박업 소, 다방, 이 미용업소, 목 욕탕, 유기장
부 여 읍	군청, 경찰서, 등기소, 원호청, 교육청, 우체국, 농협, 축협, 고속버스터 미널, 공영버스터미널	수퍼마켓, 상설 시장, 5일시장	보건소,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중고등학교	박물관, 도서 관, 공연장, 음식점, 숙박 업소, 다방
십자 가	시외(내)버스정류장, 택시회사	연쇄점	약국	중학교	다방, 음식점, 이미용업소
응 평 리	면사무소, 우체국, 농촌 지도소지소, 농협, 군내 버스정류장	연쇄점	보건지소	국민학교	다방, 음식점

* 공공시설중 송국 2리 주민의 이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음.

가. 시장권의 변화

1945년경 송국 2리 주민들은 마을로부터 2.5 km 정도 떨어진 소사리의 건평장의 5일시장을 주로 이용했으며 큰 시장으로 논산장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건평장은 규모가 적고 상품에 대한 선택기회도 적기 때문에 점차 이용도가 줄고 논산시장을 더 이용하게 되었다. 1973년 논산읍 시내버스가 초촌면까지 연장 운행되자 초촌주민들의 시장권은 완전히 논산권으로 개편되고 건평장은 폐쇄되었다.

나. 교육권의 변화

초촌면에 소학교가 설립된 것은 1936년으로 비교적 빠르다. 따라서 송국 2리 주민들은 초촌소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중학교는 논산과 강경 및 부여에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은 논산이나 강경, 부여에 나가 하숙하거나 자취를 하였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석성면에 중학교가 설립되어 중학교 학구는 20 km의 거리에서 5 km권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논산, 부여, 공주지역으로 다녔으며 여유있는 가정은 대전이나 서울로도 유학을 보냈다. 1973년부터 논산읍 시내버스가 응평리까지 연장운행되자 논산읍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5 - 2 학생들의 취학실태

구 분	1985			1988		
	총학생수	재촌취학생수	재촌취학율	총학생수	재촌취학생수	재촌취학율
국 민 학 교	27	24	88.9	25	24	96.0
중 학 교	8	8	100.0	15	10	66.7
고 등 학 교	17	5	29.4	8	3	37.5
대 학 교	5	-	0	4	0	0
계	57	37	64.9	52	37	71.2

다. 의료권의 변화

1950~60년대 송국 2리 주민들의 질병치료는 마을 주변의 침술사나 한약방 등에 의존해 왔으며 주술에 의한 푸닥거리나 굿도 질병치료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난치병이나 수술과 같은 어려운 질병의 치료는 논산에 있는 의원을 이용하거나 대전의

종합병원을 이용해 왔다.

1984년에 응평리에 한약방이 개업하게 되었고 역시 응평리에 보건지소가 개설되면서 간단한 진료와 치료는 먼 소재지인 응평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보호를 받는 영세민들은 부여읍의 보건소를 이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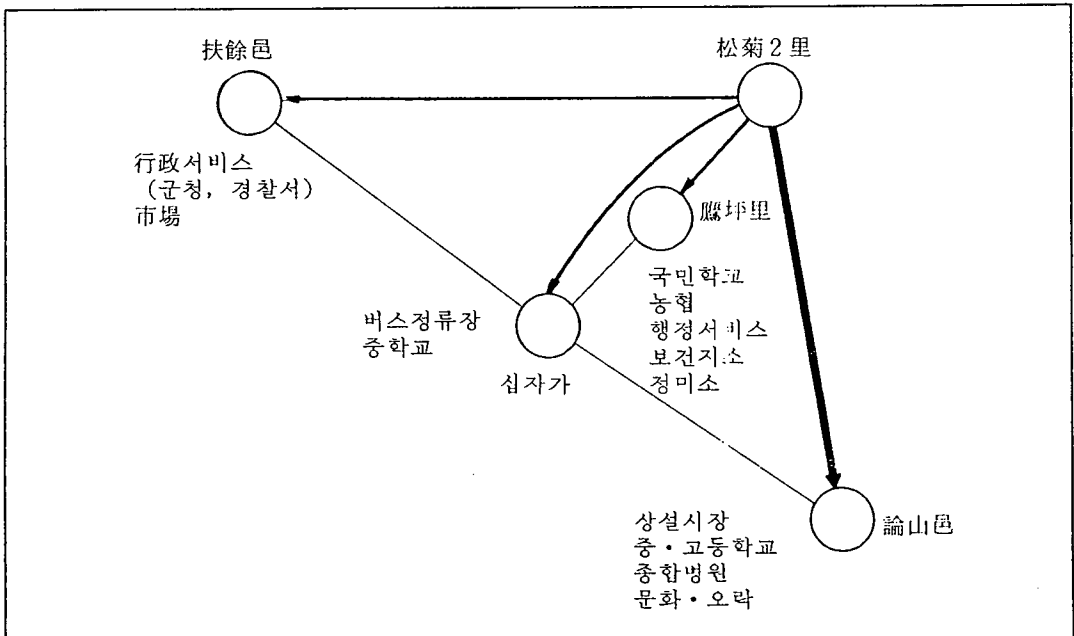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송국2리 주민들의 1차 의료진료권은 행정구역에 따른 의료보험조합의 권역에 따라 부여군으로 지정되었고 2차진료권은 대전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라. 통 혼 권

1985년 이전에 결혼한 송국2리 주민을 대상으로 통혼권을 살펴보면 67.0%가 군외지역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내혼인은 35.1%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는 1950년대 이전과 그 이후의 1950-60년대, 1970~80년대의 혼인권을 구분해 비교해 볼 때에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혼인하는 군외 지역은 논산군과 공주군이다. 논산군은 전체 결혼한 가구주의 27.0%가 혼인한 지역이며 공주군은 16.2%로 나타나 논산군과 공주군이 이 마을주민들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

그림 5 - 1 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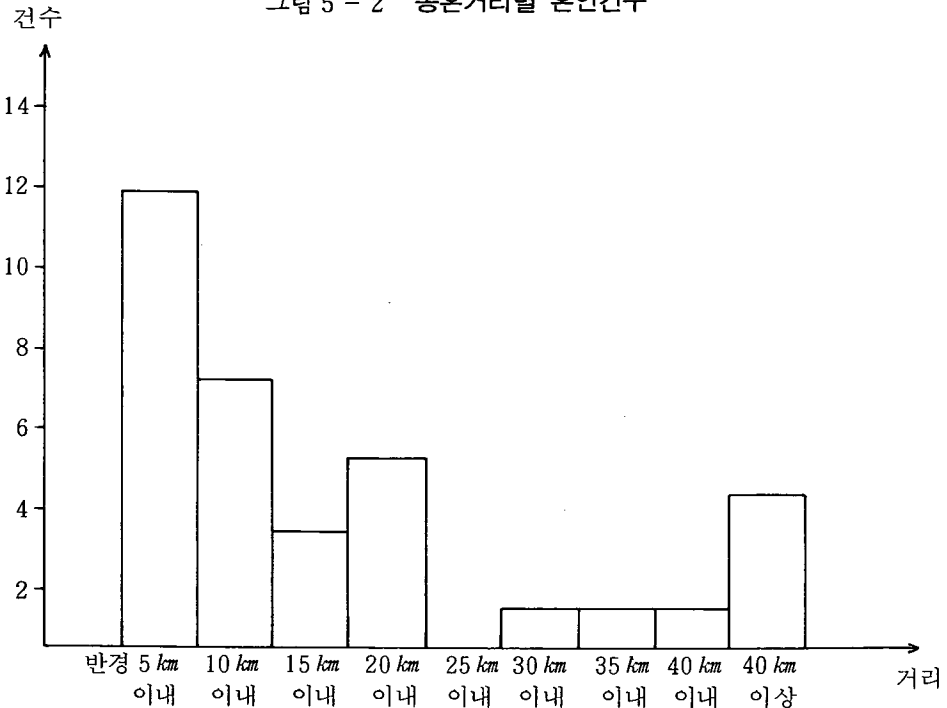


임을 보여준다. 한편 전체 결혼자의 16.2%가 면내에서, 그리고 또다른 16.2%가 군내에서 배우자를 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내 결혼도 1건 나타나고 있다. 道외지역에서 배우자를 택하는 것은 1950년 이전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5 - 3 통혼권의 변화

혼 처			1950년대이전	1950-'60	1970-'85	계
마 면 군	내		-	-	1	1 (2.7)
	내		1	3	2	6 (16.2)
	내		1	4	1	6 (16.2)
도내	논	산	3	6	1	10 (27.0)
	공	주	-	4	2	6 (16.2)
	기	타	-	1	2	3 (8.1)
도 외			4	-	1	5 (13.6)
계			9	18	10	37 (100.0)

그림 5 - 2 통혼거리별 혼인건수



2. 마을 공간구조

가. 주거공간

① 주택의 분포

송국 2리의 주거지는 송현, 참새골, 산학골이라고 불리는 3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누어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자연부락은 전체적으로 남향을 취하고 있다. 주택도 전체 34호 중 61.8%인 21호가 남향을 취하고 있다.

송현은 3개의 자연부락 중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마을로서 집촌형태를 이루고 있다. 참새골과 송현 사이에 동-서로 길게 분포된 농경지를 바라보며 남향으로 자리잡은 송현은 그 중앙을 마을도로가 관통한다.

참새골은 송현의 이남 300m 지점에 분산된 형태로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참새골의 도로는 길게 분산된 주택들을 연결하고 있다. 참새골은 이러한 농촌의 유형에 알맞게 전업적인 축산을 하는 농가가 2호 있다. 그 중 1호는 돼지를, 1호는 한우를 기른다. 그러나 한우사육 농가는 한때 20여두까지 사육하다가 한우 파동에 의한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1986년에 중단하고 방매하였다. 양돈농가는 1987년 5월 현재 110두의 돼지를 사육한다.

산학골은 집촌과 산촌의 중간형태를 갖고 계곡 깊숙히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도로도 이들 주택의 배치를 따라 길게 분포한다.

송국 2리의 주택 34호는 이들 3개 자연부락 송현, 참새골, 산학골에 각각 21호, 7호, 6호씩 나누어 분포하고 있다. 주택은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으나,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동, 서, 북향도 나타나고 있다. <표 5-1>에서와 같이 송국 2리의 남향주택은 22호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고, 동, 서, 북향은 각각 5, 4, 3호로서 14.7%, 11.8%, 8.8%를 차지한다.

송국 2리는 새마을운동 이후 창고, 축사, 화장실 등 부속사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배치의 기본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72년 새마을운동 이후 이 마을에는 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11동, 창고 24동, 축사 11동, 화장실 등 기타 건물이 12동 증축되었다. 이와 같이 가구의 증가없이 기존 주택의 부속건축물이 증가하는 이유로 1970년대 이후 이룩된 농가경제의 성장과 정부시책의 수용 등

그림 5 - 3. 송현의 주택배치도,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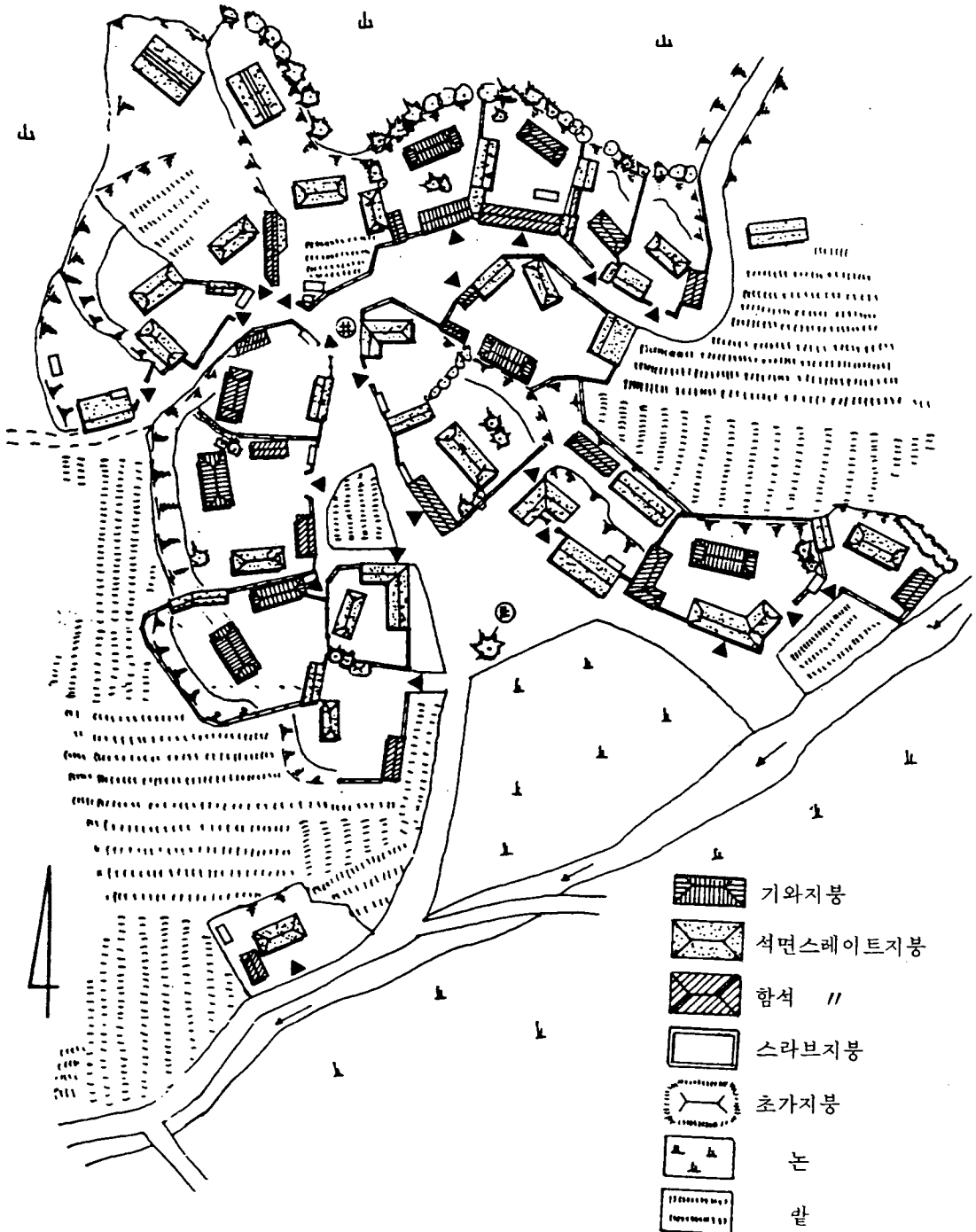


그림 5 - 4 송현의 주택배치도, 1970



그림 5 - 5 산학골의 주택배치도,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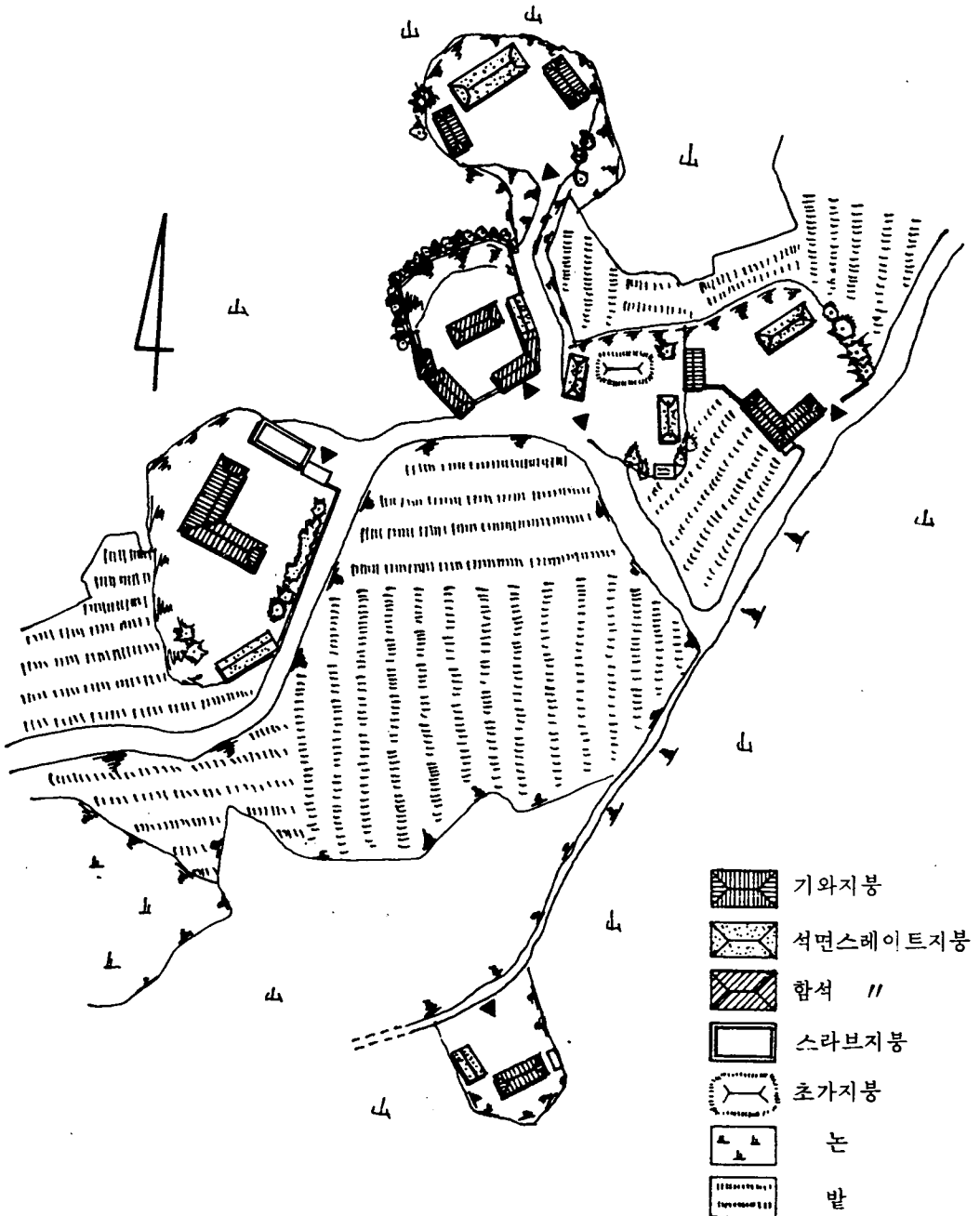


그림 5 - 6 산학골의 주택배치도,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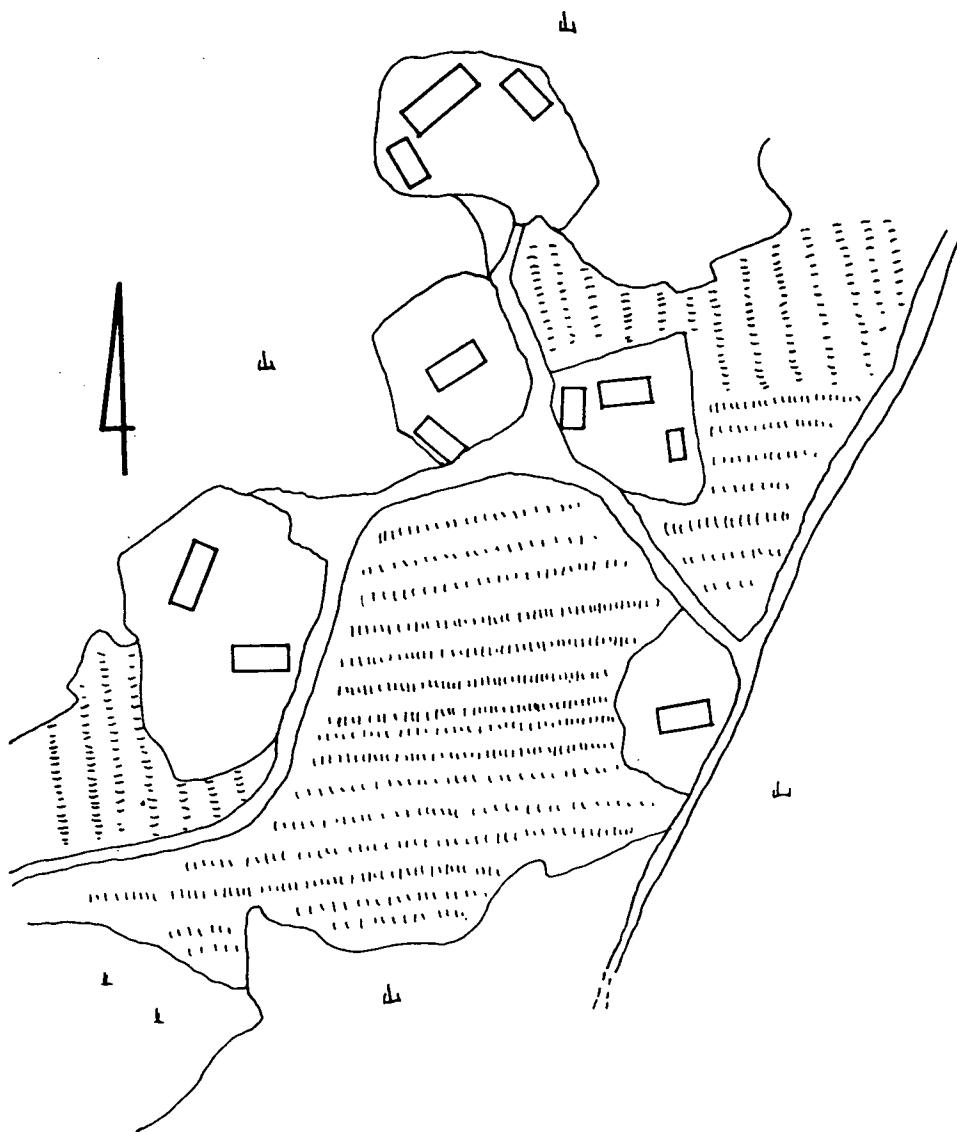


그림 5 - 7 참새골의 주택배치도,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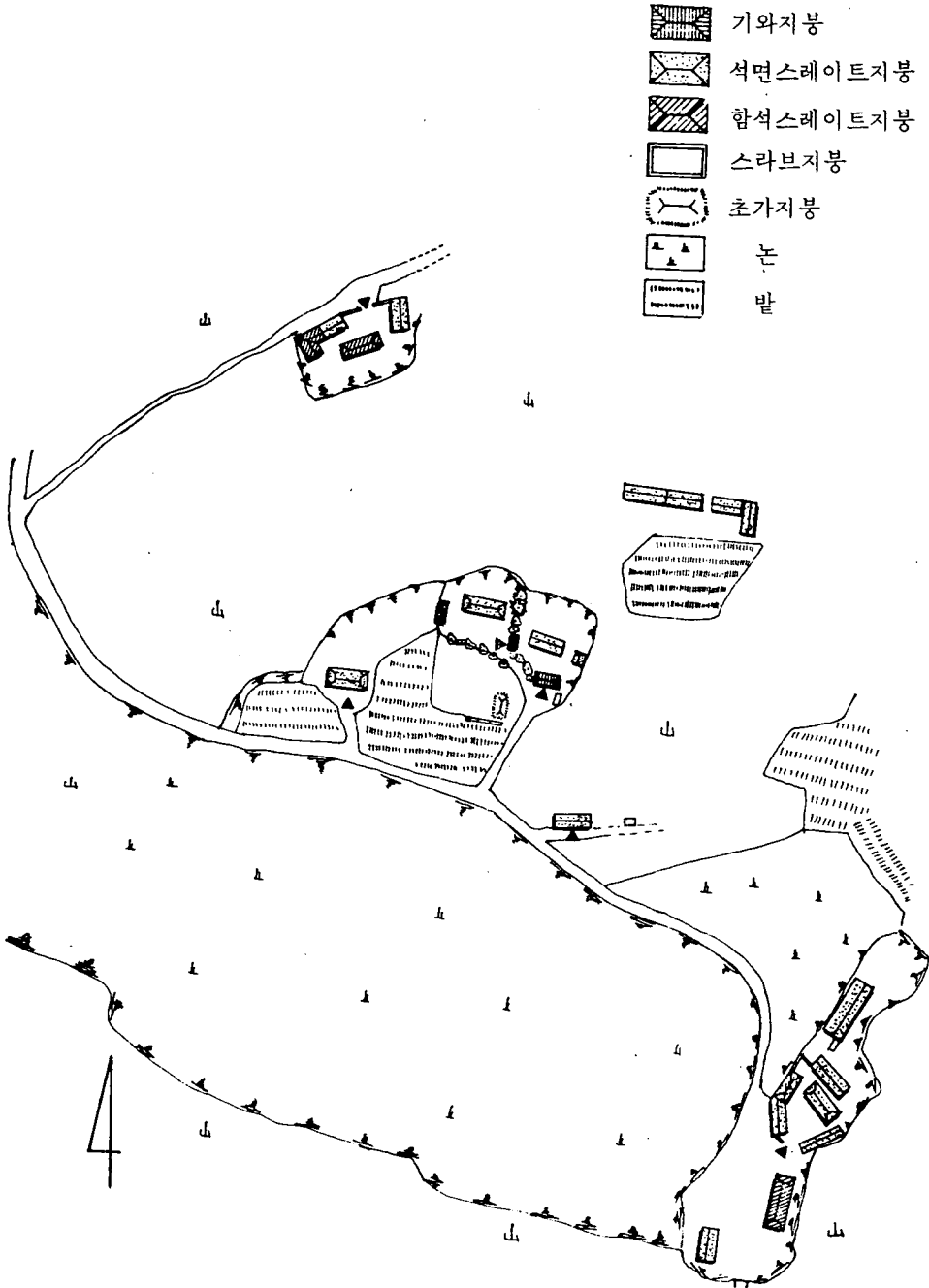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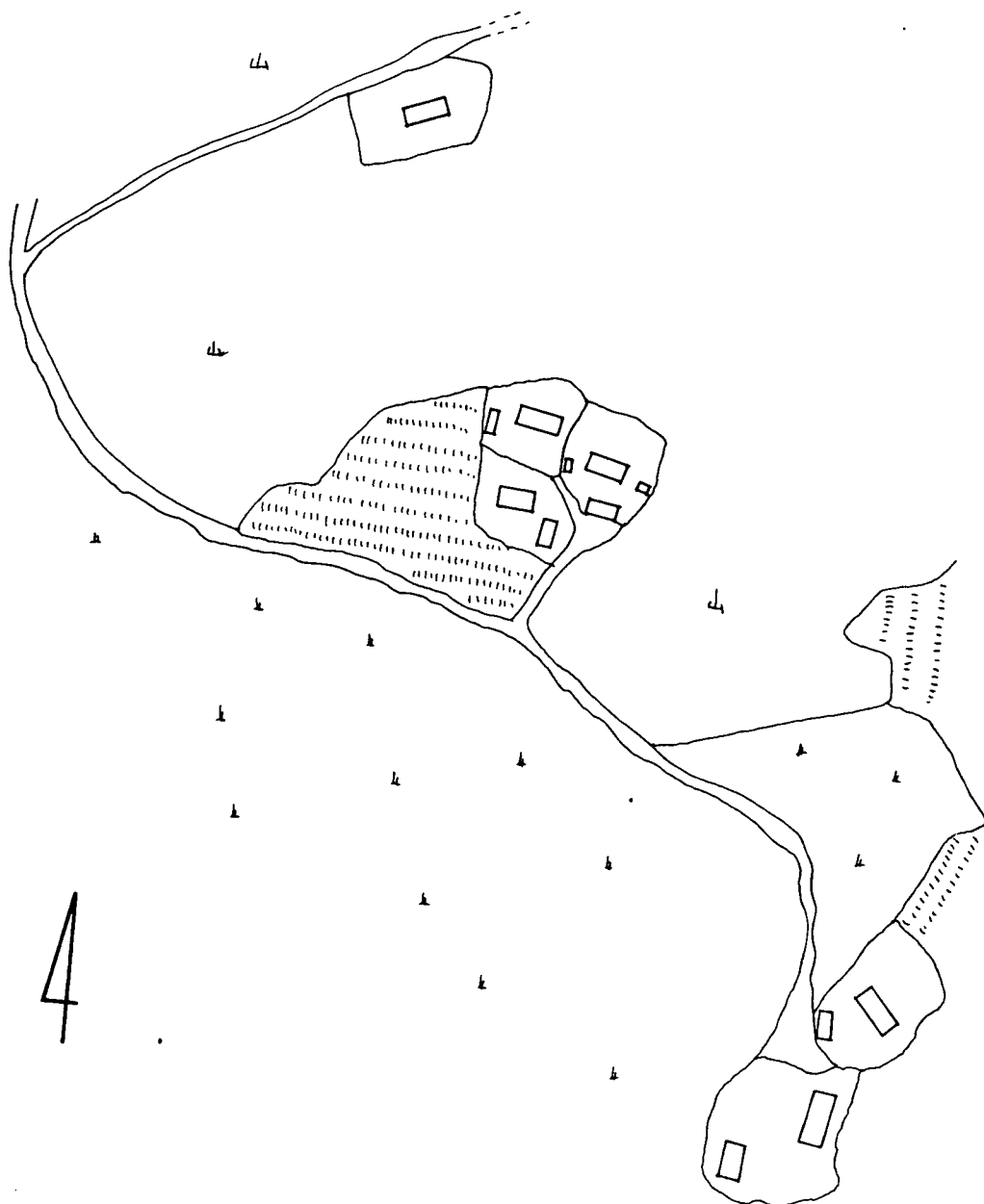


그림 5 - 8 참새골의 주택배치도, 1970



을 들 수 있다. 1970년 이후 농가경제는 그 양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였다. 그것은 수도 신품종 재배에 따른 증산, 야산개발에 따른 농경지의 확대 축산 등 소득작물의 도입 등에 의한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일반 수납창고, 농기계창고, 축사 등의 증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축산은 현재 참새골의 2호만이 전업적으로 할 뿐 기타 자연부락에서는 부업의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참새골의 2호가 사육하는 돼지·한우 등은 그 규모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방출되는 분뇨와 악취 등도 상당하다. 참새골의 이들 축산농가는 50~100m의 거리를 두고 분산되어 있으므로 당장 주거환경에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때 또는 신규로 축산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날 때 하수오염, 악취 등에 의한 주거환경이 조악해 질 우려가 있다.

중간마을은 197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다. 주민등록상 가구수는 줄지 않으나 실제로 이 마을에는 家를 유지했던 元戶가 이촌하여 空家가 된 사례가 둘 있고 부모로부터 분가했다가 다시 통합하여 생긴 公가²⁾가 하나 있다.

② 주택구조

송국2리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3칸구조를 갖고 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의 결과로 대부분 지붕이 스테이트나 기와 또는 합석으로 개량되었고 부엌개량, 아궁이개량 등이 이루어 졌지만 3칸의 주택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주택을 건축 연대별로 구분해 보면 1909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2호,

표 5 - 4. 자연부락별 주택의 항배

주택의 방향	단위 : 동 (%)			
	계	송 현	참 새 골	산 학 골
동	5(14.7)	4		1
서	4(11.8)	3	1	
남	22(64.7)	12	6	4
북	3(8.8)	2		1
계	34(100.0)	21(61.8)	7(20.6)	6(17.6)

- 2) 이들 3호는 송현에 3호, 참새골에 1호가 있다. 송현의 公가 2호 중 1호는 주민중의 한 농가가 구입하여 소유하고, 다른 公가 한 채는 인삼재배하는 외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참새골의 公가는 비어있다.

표 5 - 5 건축물별 증감내역, 1972~86

증 감	주 택					공공시설
	안 채	사 랑 채	창 고 ¹⁾	축 사 ¹⁾	기 타 ²⁾	
1970 년	31	8	20	1	3	-
1986 년	36 ³⁾	14	44	12	15	2
증 감	5 ³⁾	6	24	11	12	2
계						

1) 창고와 축사는 사랑채와 별도로 보관 및 저장 또는 가축사육을 위해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2) 기타 시설물로는 화장실 등이 있음.

3) 안채 2 채는 공가임.

1910 ~ 1945 기간에 건축된 주택이 10 호, 1946 ~ 1969 기간에 건축된 주택이 5 호, 1970 년대 이후에 건축된 주택이 17 호로 나타나 1970 년대의 새 마을운동 이후 신축된 주택이 전체 주택의 50.0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1945 년 이전의 노후화된 주택이 12 호로서 전체 주택의 35.3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70 년대 이후에 신축된 주택도 주거의 쾌적성을 높여주는 목욕탕, 수세식 화장실, 온냉수급수시설, 입식부엌 등에서 보면 1970 년대 이전에 건축한 주택과 별로 다름이 없이 조악하다. 1986 년도에 조사된 주택 32 동 중에서 입식부엌과 목욕탕시설과 온·냉수급수시설을 갖춘 주택은 1 호가 있을 뿐이며 수세식 화장실 갖춘 주택은 없다. 다만 정부의 보급에 따라 3 조식 개량변소를 옥외에 갖춘 주택이 11 호가 있을 뿐이다.

주택의 외형에서 볼 때 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한 주택은 17 호, 기와 8 호, 함석 5 호, 세멘트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 호 그리고 초가지붕이 1 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담장의 재료는 블록 20 호, 생나무 5 호였고 담장이 없는 주택도 7 호로 나타난다.

표 5 - 6 건축연대별 주택분포, 1986

연 대	계	한 옥	양 옥
1909 년 이전	2 (5.9)	2	-
1910 ~ 1945	10 (29.4)	10	-
1946 ~ 1969	5 (14.7)	5	-
1970 년 현재	17 (50.0)	16	1
계	34 (100.0)	33	1

주 : 공가 2 호 포함

대문 소재는 철재 16호, 목재 7호로 나타나며 대문이 없는 주택도 9호나 있다.

한편 송국 2리 가구 32호 중에서 주택을 임대한 가구는 2호로서 그 중 1호는 현재 마을회관을 개조하여 살고 있다. 또한 주택의 평균규모는 27.1평이며 대지면적은 196.8평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국 2리의 주택을 주택구조, 부속건물의 유무 등으로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A형주택

웃방, 아랫방, 부엌, 쪽마루로 된 전형적인 3칸 주택이다. 3칸으로 된 안채 이외에 필수적인 부속건물로 잣간, 뒷간이 있다. 3칸집의 변형으로 3칸 겹집이 있다.

아랫방에는 가장 부부가 살고 있고, 전통적으로 성주, 조상신, 삼신을 모신다. 웃방에는 자녀 또는 노부모 등이 거주한다. 3칸 주택에 있어서 웃방과 아랫방은 통고래로 되어 있어 부엌에서 한 아궁이를 통한 동시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통적인 3칸 주택은 한옥 구조가 일반적으로 갖는 문제와 같다. 즉 주부의 동선이 크고 겨울철 난방과 보온에 문제가 있으며, 개방적 주택구조로 인하여 사적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나) B형주택

기본적으로 3칸 주택구조이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에 따라 부속사, 창고, 방 등을 추가로 증축한 구조다. 따라서 B형 주택이 갖는 구조상의 특성은 A형과 유사하나 B형 주택은 A형 주택 보다 공간상의 분화를 일으켜 수납 공간이 주거공간과 분리되거나 방 등 주거공간이 확대되어 주거의 쾌적성을 향상시킨 상태다. 따라서 B형에서는 주택내에 주거와 생산 또는 수납공간의 분리가 확연히 나타난다. <그림 5-10>의 B형 주택은 대지의 북쪽에 담배조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별채로 지은 부속사는 수납공간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별채 또는 사랑채로 증축한 방은 연로한 부모 혹은 과년한 자녀들 또

표 5-7 유형별 주택분포, 1987

유형구분	호수	비율
A형	10	29.4
B형	11	32.4
C형	12	35.3
D형	1	2.9
계	34	100.0

는 아들이 결혼 후 거처하는 방으로 쓰인다. 1980 년대에 들어와 이촌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늘어나면서 별채로 증축한 방이나 사랑채의 용도는 주거에서 곡식 등을 저장하는 수납공간으로 전용되고 있다.

(다) C형주택

중간마을에서 B형주택과 함께 가장 보편화된 주택구조다. C형 주택은 3칸구조인 안채와 사랑채가 동시에 건축되어 주택의 설계에서부터 주택의 기능상 공간분화가 확연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안채는 주부와 자녀들 또는 노모의 생활공간이 되고, 사랑채는 가장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수납공간이 된다. C형의 주택이 공간적으로 분명한 기능분화가 나타난 점을 제외하면 주택이 갖는 구조상의 특성은 B형과 같다. <그림 5-11>에 나타난 C형 주택은 중농의 주택으로서 안채는 3칸 겹집의 구조를 갖는다. 사랑채의 방은 가장의 생활공간이며, 사랑채의 기타 공간은 수납공간으로 쓰인다. 별채의 부속건물로 기계창고, 건조저장고, 우사, 기타 창고, 잣간 등이 있고, 삼조식 화장실이 사랑채 옆에 신축되어 있다. 우사 등의 존재는 이 지방이 야산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초자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농업 특징의 하나가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 D형주택

이 유형의 주택은 전통적인 주택 구조를 버리고 도시적 주택설계와 새로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했다. D형 주택은 외부로부터 밀폐된 주택구조로서 가족 구성원의 사적 공간이 보장된다. 또한 D형 주택은 가의 중앙에 위치한 마루를 중심으로 각 방과 부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사에 있어 주부의 동선이 전통적인 주택보다 절감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D형 주택은 도시적 설계로 인하여 농촌주택으로서의 특징인 생산 및 수납공간의 배려가 적다. <그림 5-13>에 나타난 D형 주택은 대농주택이다. 1975 년도에 새로운 설계에 따라 시멘트 블록으로 신축한 안채가 있으나, 도시적 설계에 따른 안채만으로는 농촌의 생산, 수납기능을 살릴 수 없으므로 기존의 사랑채와 부속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D형 주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사랑채는 방 2 개 중 하나가 잠실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 생산, 수납의 공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농업이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농작업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농촌 주택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농가는 경운기 등 농기계와 야산개발지구 및 곡간담에 설치할 관정굴착기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계류를 보관할 창고들을 갖추고 있다. 즉 잠실, 농기계 창고 등의 존재는 이 마을의 처한 지형적 특성과 농업의 생산활동 양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주택공간의 특징이다.

한편 중간마을의 주택이 보유한 방은 평균 3.17 개로서 방당 인구수는 1.3 명이다. 이와 같은 방당 인구비는 1970년대 보다 크게 줄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마을의 주택이 갖는 방은 그 절반 정도가 이용될 뿐 나머지 절반은 방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유휴되고 있거나 창고 등 수납공간으로 활용된다. 주택의 방이 유휴화 되는 현상은 <표5-8>과 같이 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큰 주택일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1970~80년대의 송곡 2리의 주택개량은 지붕개량과 부엌개량에 치우쳐 있었으며 주부의 동선을 줄이고 위생적이며 쾌적성을 높히는 주택의 구조적개선은 뒷전에 밀려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목욕실,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온냉수급수시설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난방연료의 대체에 따른 주택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표 5 - 8 주택의 기능별 공간구분, 1987

구 분	대지 (A) (B/A,%)	공 간 기 능 별 구 분				
		계 (%) (B)	주 거	생 산	수 납	기 타 ²⁾
A 형	36.6 m ² (100.0)	36.6 m ² (100.0)	35.1 m ² (95.9)	-	-	1.5 m ² (4.1)
B 형	772.6 (14.6)	112.9 (100.0)	50.8 (45.0)	36.0 m ² (31.9)	6.0 m ² (5.3)	20.1 (17.8)
C 형	591.6 (18.2)	107.7 (100.0)	63.4 (58.9)	5.0 (4.6)	21.7 (20.2)	17.6 (16.3)
대농D형 ¹⁾	1,099.9 (13.5)	148.9 (100.0)	74.4 (50.0)	10.3 (6.9)	47.1 (31.6)	17.1 (11.5)
D 형 ³⁾	819.2 (13.3)	108.6 (100.0)	61.2 (56.4)	9.0 (8.3)	25.1 (23.1)	13.3 (12.2)
계	3,319.5 (15.5)	514.7 (100.0)	284.9 (55.4)	60.3 (11.7)	99.9 (19.4)	69.6 (13.5)

주 : 1) 대농 C형의 대지면적은 바깥마당을 포함한 것임.

2) 기타 공간은 화장실, 잣간, 헛간 등 공간임.

3) D형주택의 생산 및 수납공간은 기초시설을 포함한 것임.

표 5 - 9 방수별 주택분포

방 수	주 택 수	총 방 수 (A)	현재사용방수 (B)	B / A
1	1	1	1	100.0
2	10	20	15	75.0
3	11	33	18	54.5
4	8	32	16	50.0
5	2	10	5	50.0
6	2	12	4	33.3
계	34	108 (평균 3.17)	59	54.6

③ 공동시설

중간 마을의 공동시설로는 1972년 새마을사업으로 건립한 새마을회관과 새마을창고 및 공동우물이 있다. 새마을회관과 새마을창고는 송현의 마을 입구에 서로 이웃하여 건립되어 있어 비교적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다.

새마을회관의 규모는 18평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건립되었고, 그 구조는 <그림 5-15>와 같다.

새마을창고는 15평 규모로 세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건립되었다. 이 창고의 구조는 <그림 5-16>과 같다. 당초 새마을창고는 주민들이 생산한 벼 등의 농산물과 비료 및 마을 공동비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 창고를 이용하는 예는 마을공동용품인 풍물 등과 일부 비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창고는 1987년 현재 마을 주민에게 임대되고 있다. 새마을창고를 임차한 농가는 개인의 농기계 보관창고와 양곡 보관창고로 사용하며, 임차료로 새마을 계에 쌀 1가마를 납부한다.

송현에는 공동우물이 2개³⁾ 있다. 이 우물은 1972년 이전까지 두레박을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물이었으나 새마을사업으로 우물 덮개를 한 펌프식으로 개조하였다. 1973년 이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자 각 농가들은 자가수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공동우물은 현재 3호가 자가수도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이 우물은 송현에서 1농가를 제외한 전체 농가가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5 - 9 A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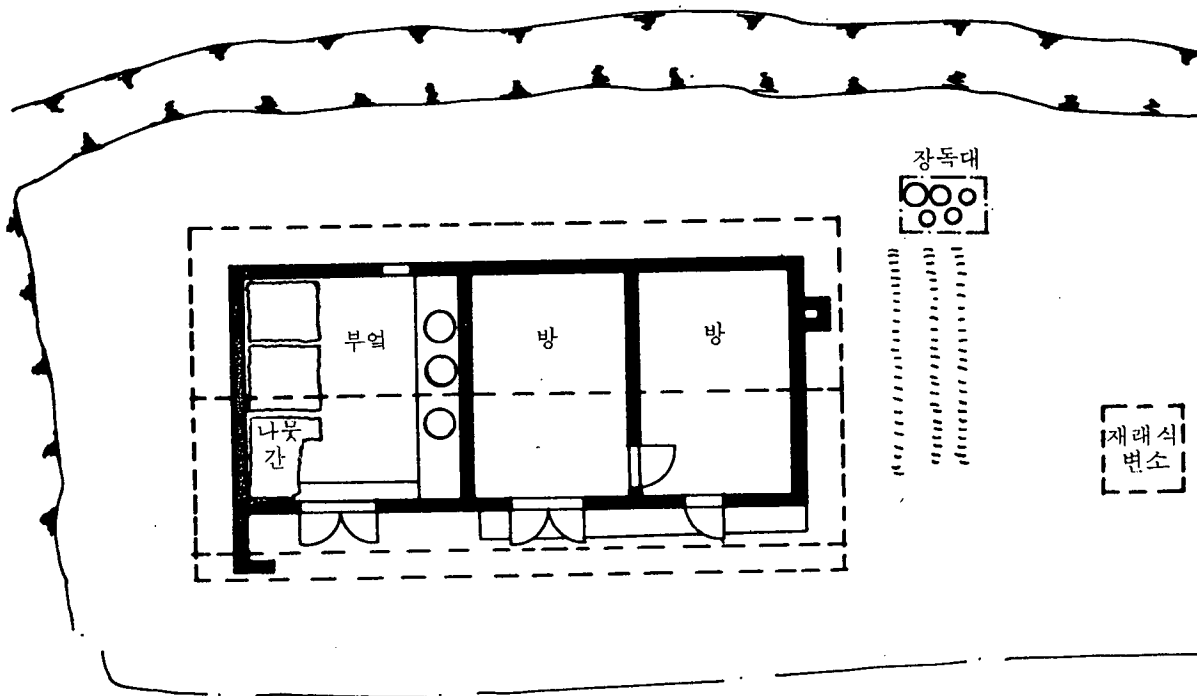


그림 5-10 B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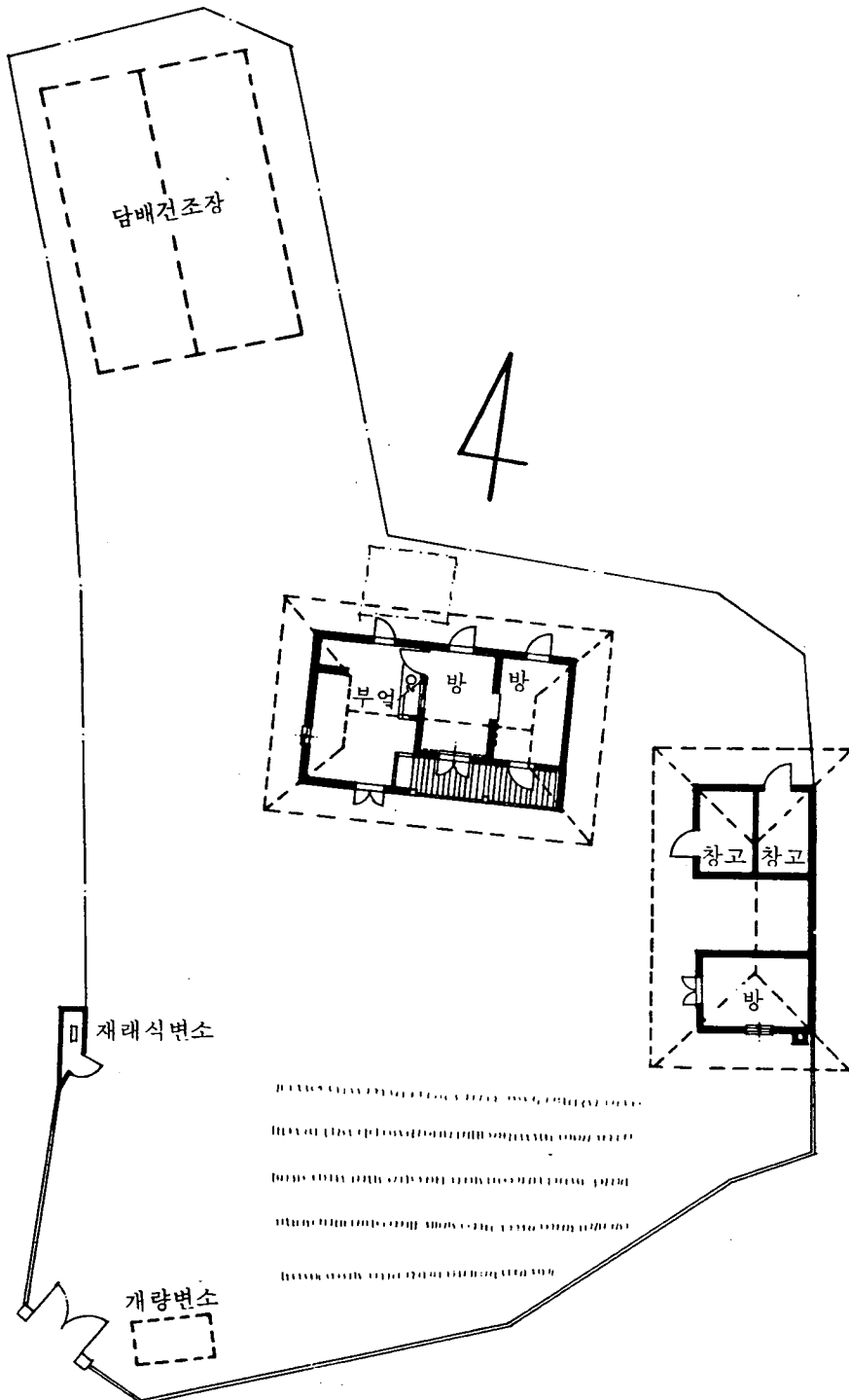


그림 5-11 C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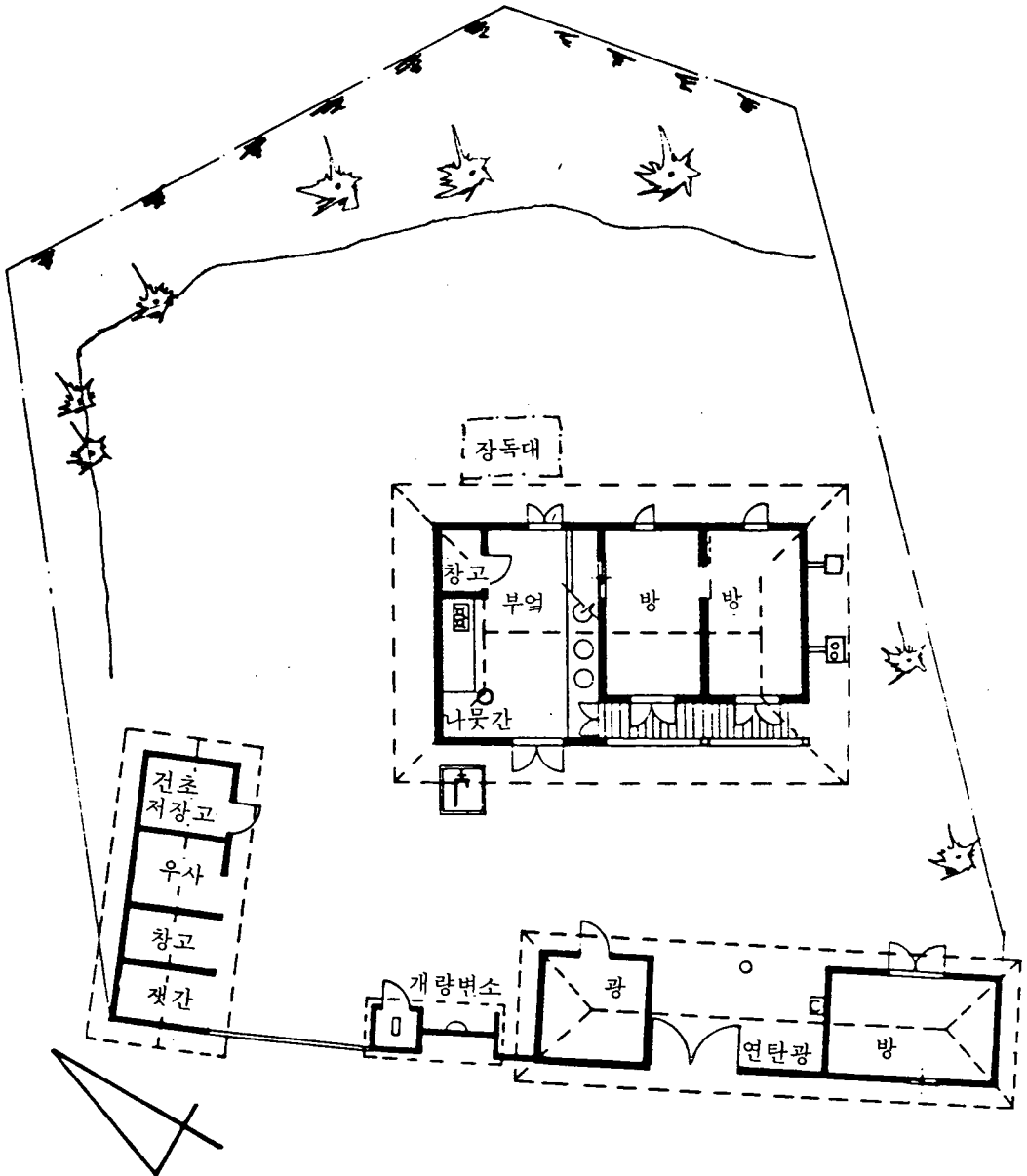


그림 5 - 12 대농의 C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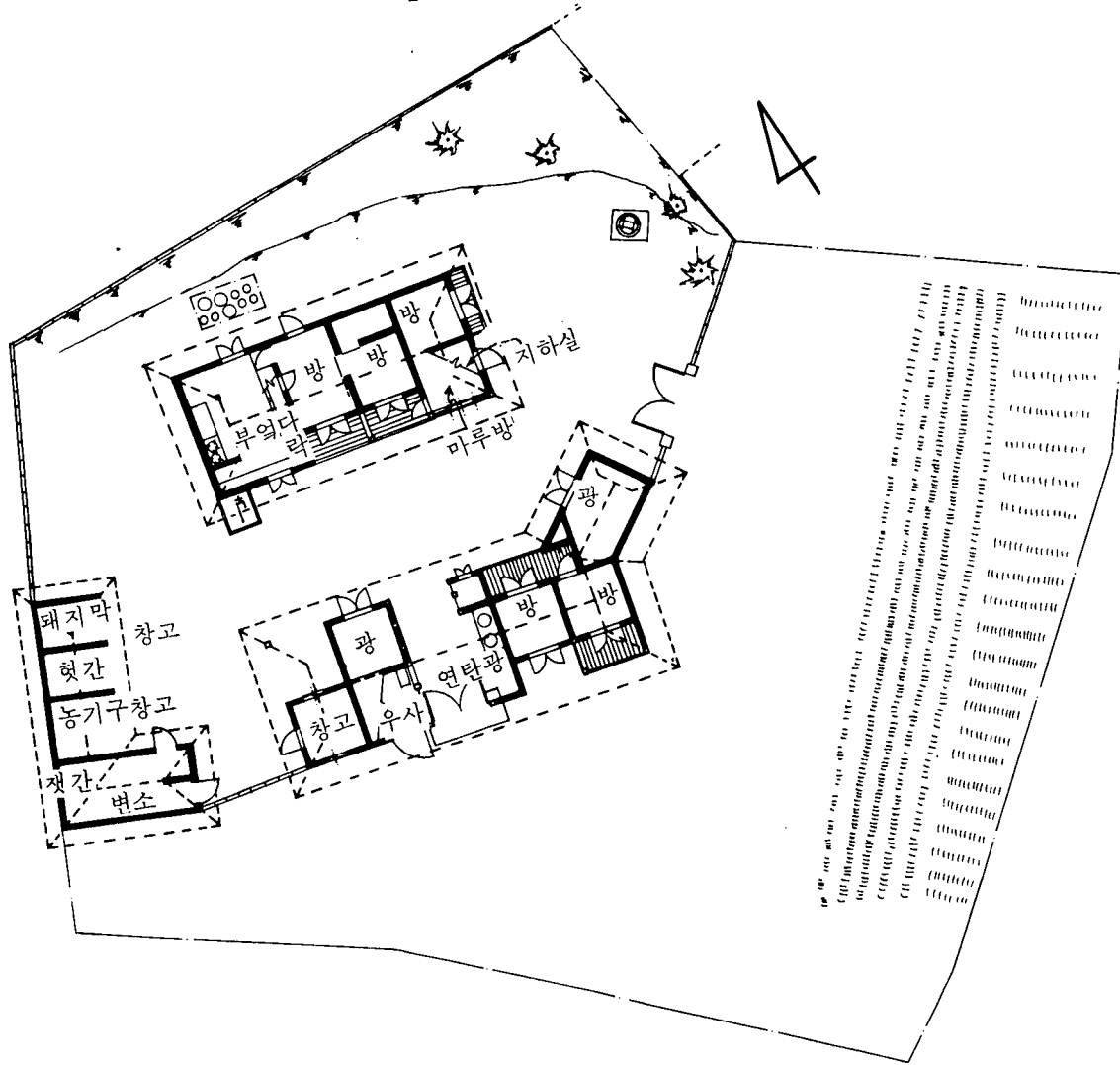


그림 5-13 D형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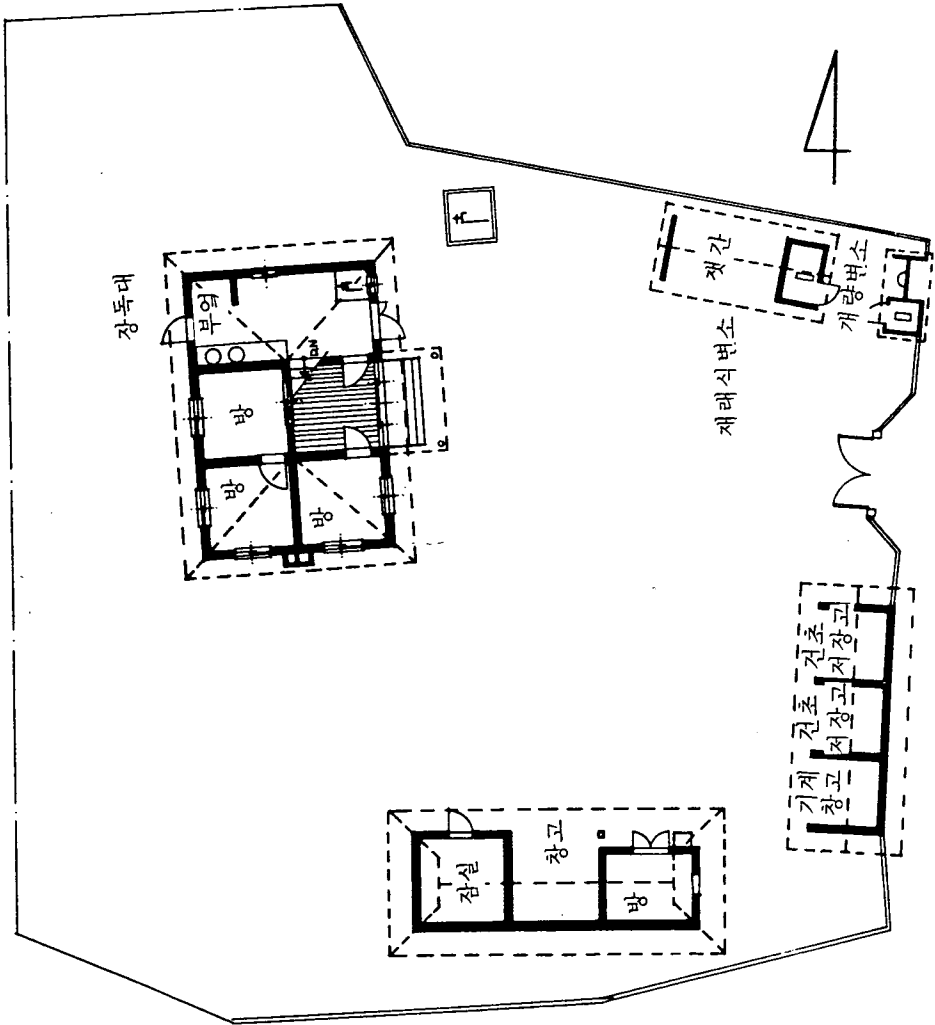


그림 5 - 14 공공시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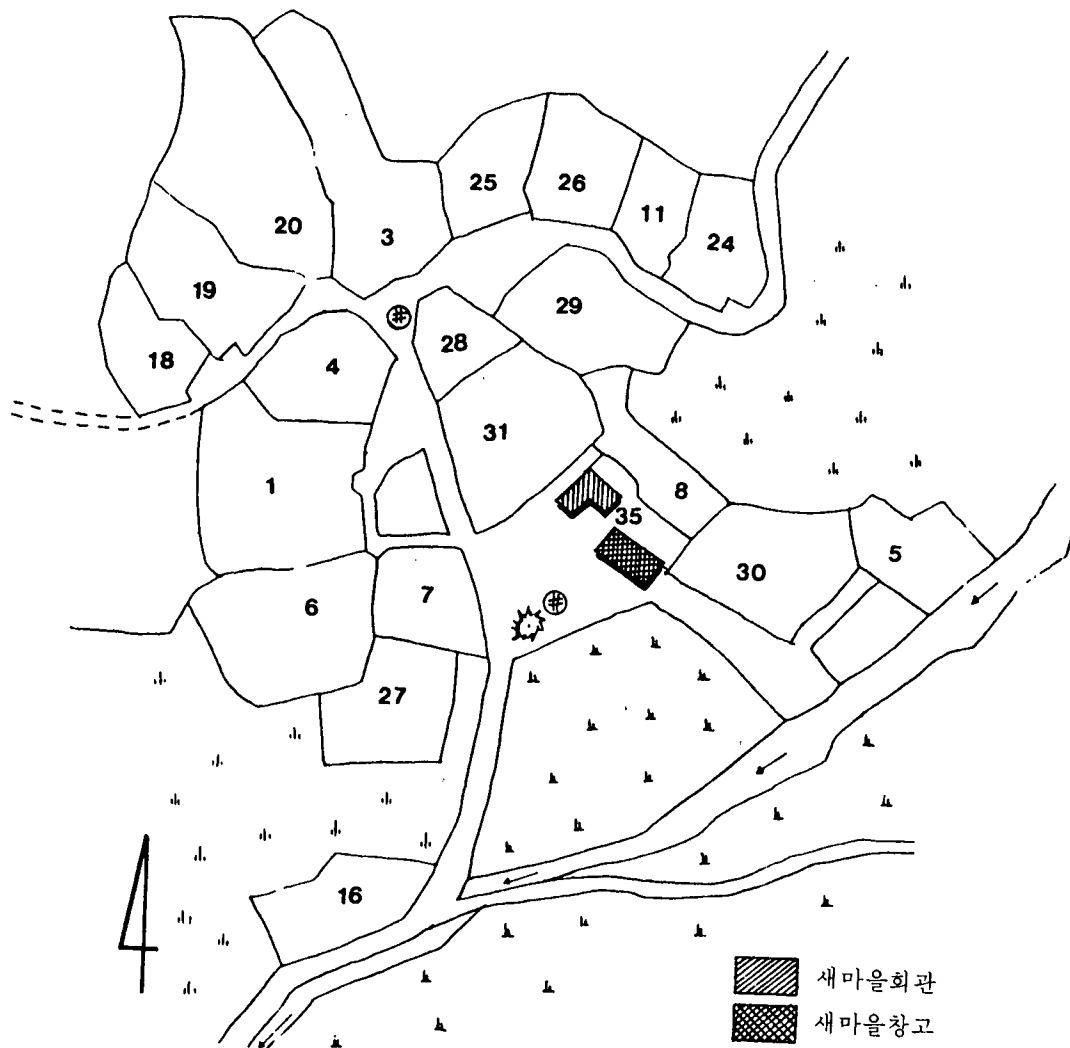


그림 5 - 15 새마을 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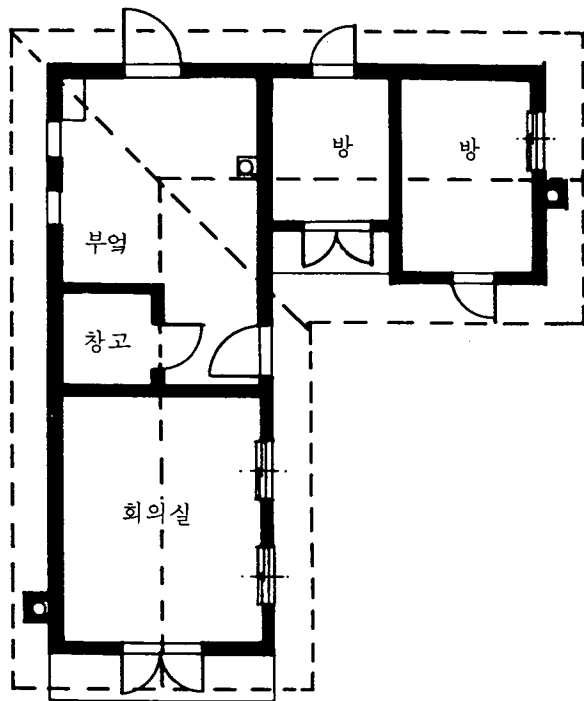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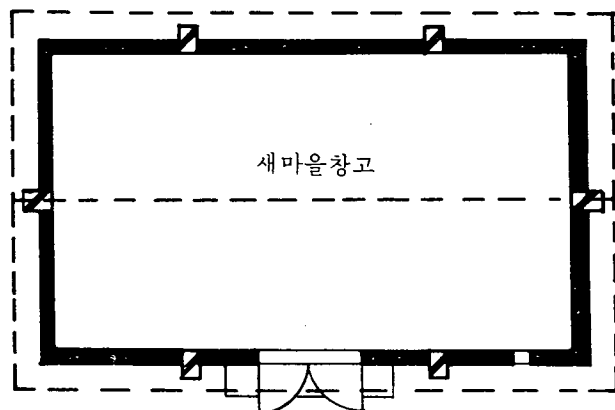


그림 5 - 16 새마을 창고



④ 도로체계

송국 2리를 중심으로 볼 때 초촌면 소재지는 1차 결절지로서 1차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 석성면 소재지인 십자가는 2차 결절지로서 2차적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으나 1987년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마을 주민들이 중심지인 논산읍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차 결절지를 거쳐 직접 중심지에 이르는 방법과, 2차 결절지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도로체계는 1차 또는 1, 2차 결절지를 통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편 마을 내의 도로망은 나뭇가지형으로서 도로 간의 순환체계가 약하다. 따라서 마을 내의 농가간 또는 자연부락간의 교통이 불편한 편이다. 그러나 초촌면 전체의 도로망을 볼 때 이 지역의 도로망은 그물망형으로서 마을간 교통은 양호한 편이다.

1972년의 새마을사업은 이 마을의 도로상태의 개선에 기여했지만 기본적인 도로체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주요 도로개선사업은 < 표 5-10 >과 같다. 즉 마을 진입로의 확장, 마을 안길의 확장, 그리고 마을간 도로의 확장 등이다.

한편 1973년의 경지정리사업과 1977~78년의 야산개발사업은 마을도로, 특히 농로체계의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농로의 폭 등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농기

표 5-10 마을도로 확장사업내역, 1972~73

년 도	사 업 구 분	사 업 량	내 용
1972	마을안길 확장	230 m	2.5 m를 4 m로 확장
1973	"	250 m	"
	진입로 확장	620 m	2.5 m를 4 m 폭으로 확장
	마을간도로 확장		" "
계		1100 m	

계 등의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 운반수단은 아직도 지게, 리어카, 우마차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⑤ 상하수도망

중간마을의 상수도는 간이상수도와 자가수도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총 34호 중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농가는 3호에 불과하고, 가구의 91.1%가 전기모터를 이

그림 5-17 마을도로 및 농로망,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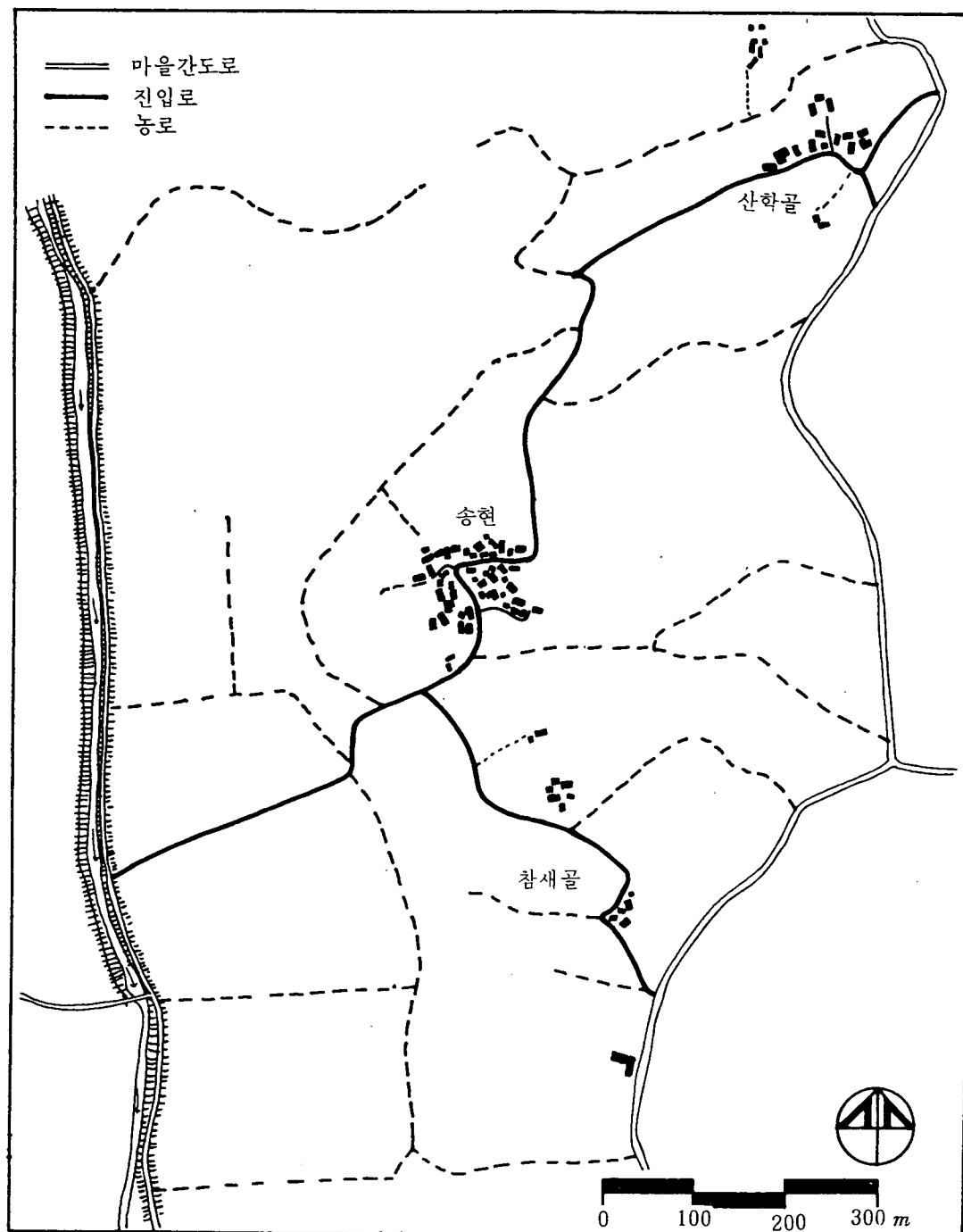


그림 5 - 18 마을도로 및 농로망,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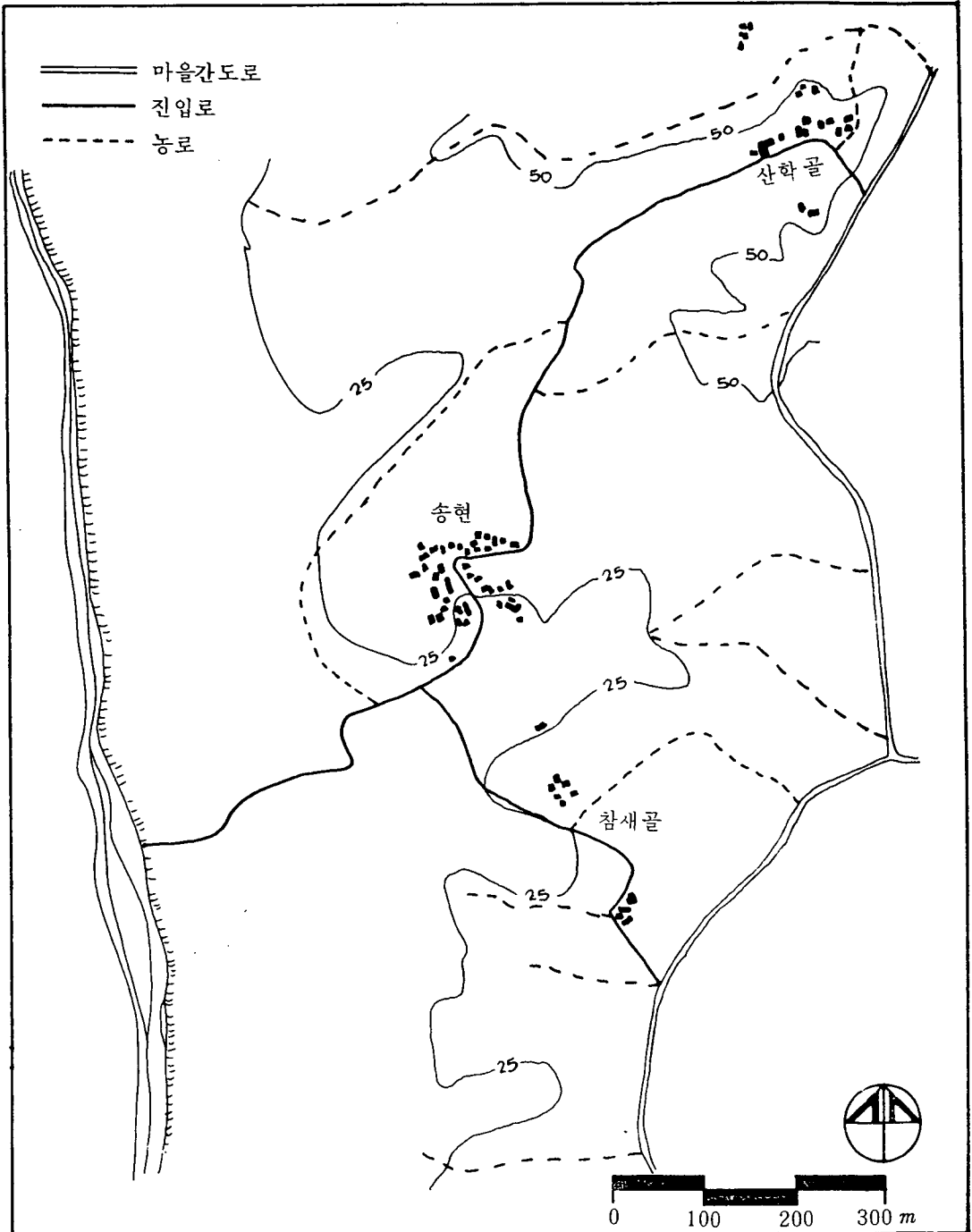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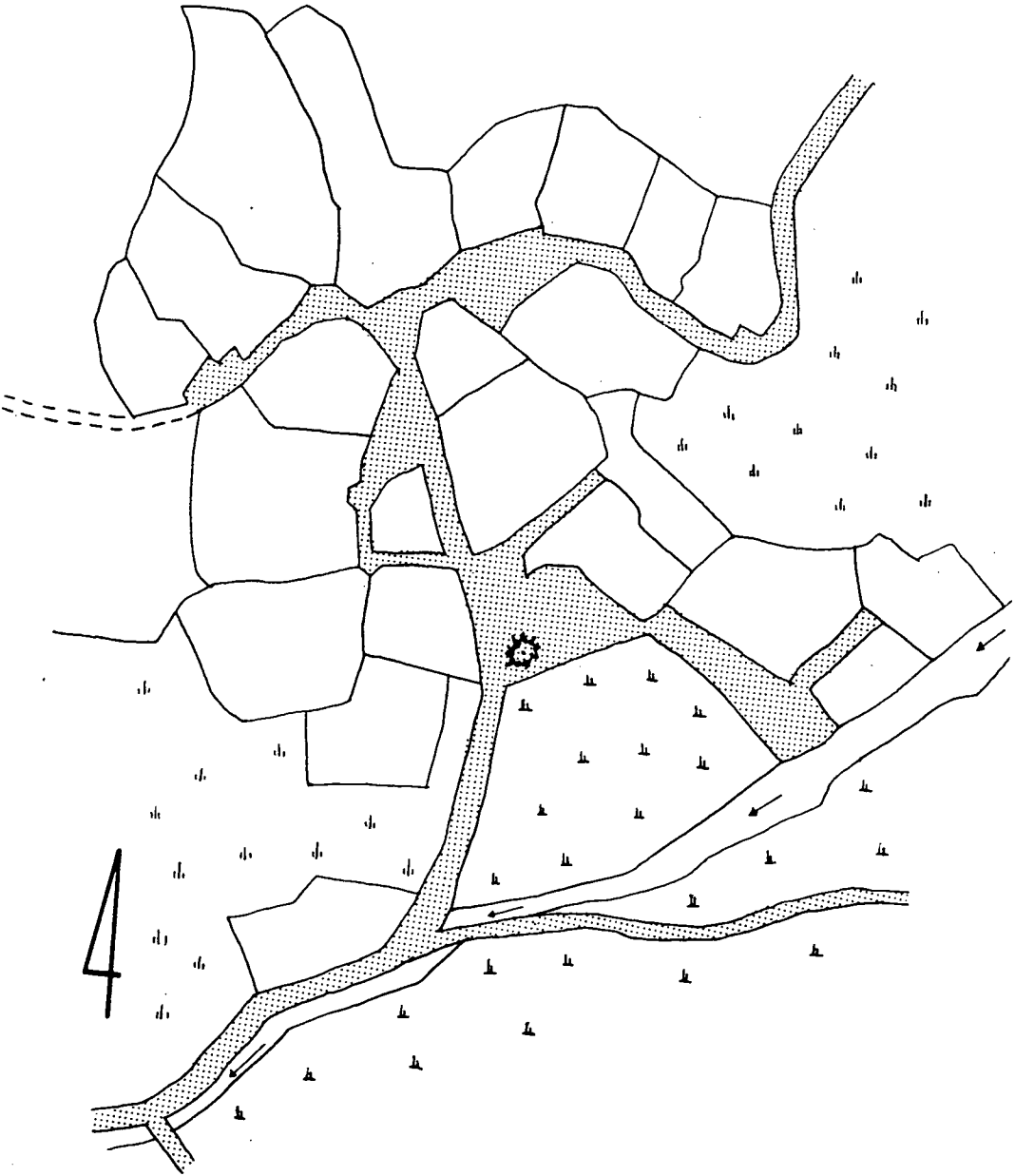


그림 5 - 19 마을내 도로망, 1987



용한 자가수도를 이용한다.

1987년 현재 이 마을은 식수공급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수준의 향상에서 오는 생활용수의 수요증대 등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식수원의 확보에 문제가 있다.

간이상수도원은 1972년 이전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우물물을 이용하고 있다.

중간마을에는 1972년 이후 새마을운동으로 총연장 165m의 하수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하수도 시설은 송현에만 설치되어 있다. 산학골과 참새골은 마을이 분산되어 있고, 또 가구수도 많지 않으므로 현재 유출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땅으로 스며들거나 배수로 등을 통하여 밖으로 유출된다. 현재 이 두 자연부락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는 양이 많지 않아 자정작용에 큰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 합성세제 등의 사용으로 생활하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전문적인 축산업에 의해서 축산의 규모가 커질 때에는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송현에 설치된 하수도시설은 하수도가 한 곳으로 모아져서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생활하수 증가와 가축분뇨방출이 증가된다면 이와 같은 하수처리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하수가 모이는 지점에서 종말처리를 한 후 하천으로 유입시키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표 5 - 11 하수도 시설현황, 1987

년 도	하수도관 재료	규 모	비 고
1972	시 멘 트	50 m	시멘트 콘크리트로 ㄱ자형 틀을 짜고 덮개를 씌움
1973	//	40	
1974	//	30	
1975	//	45	
계		165	

나. 생산공간

송국2리의 농지 중 답은 마을 주변의 계곡에, 전은 마을 뒤의 낮은 구릉지에 주로 분포한다. 마을 앞 연화천변의 장정들의 경지정리구역은 송국2리의 행정구역내에 속하기는 하나 상당 부분이 타부락 주민들이 소유·경작한다.

그림 5-20 간이 상수도망,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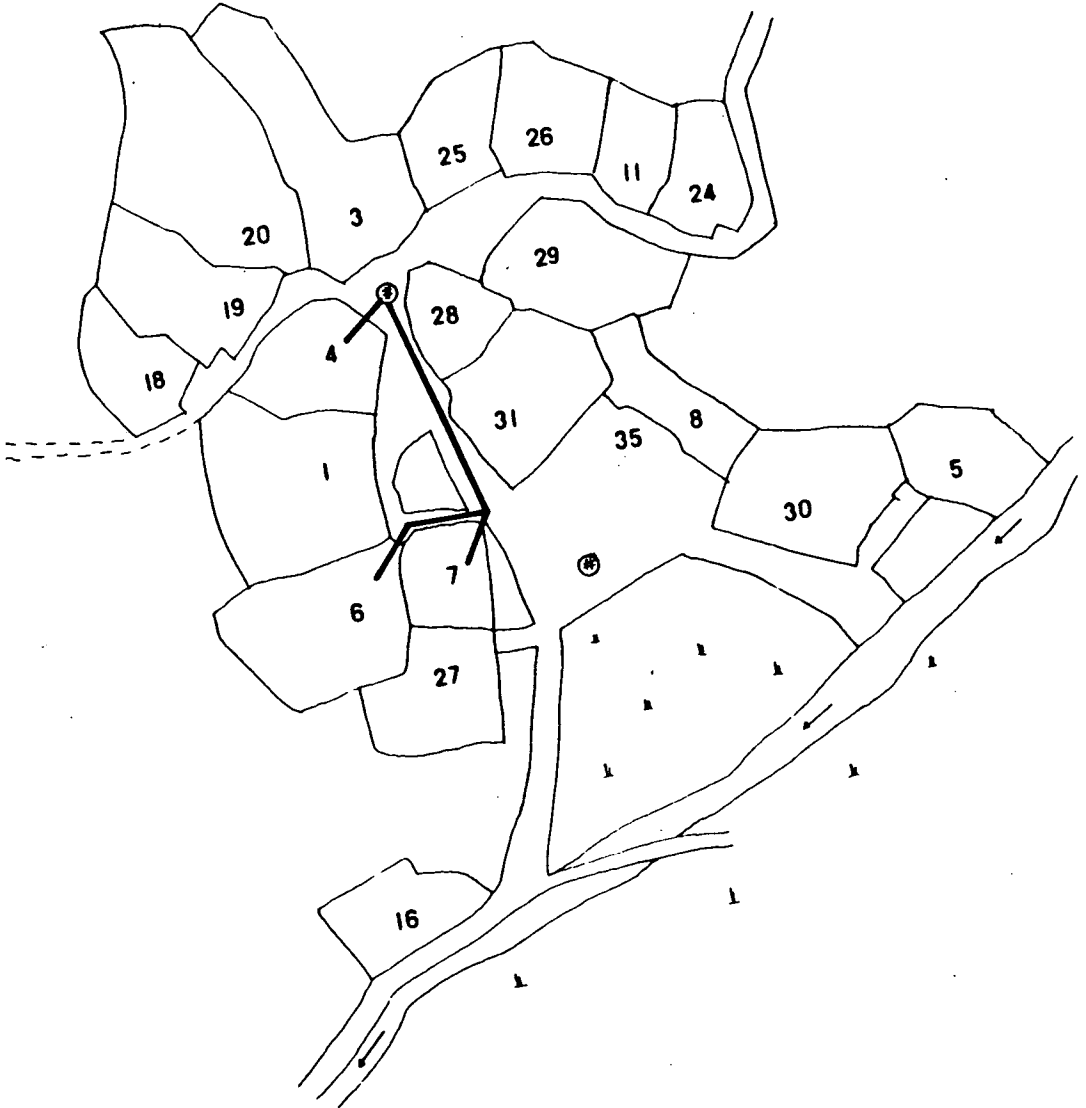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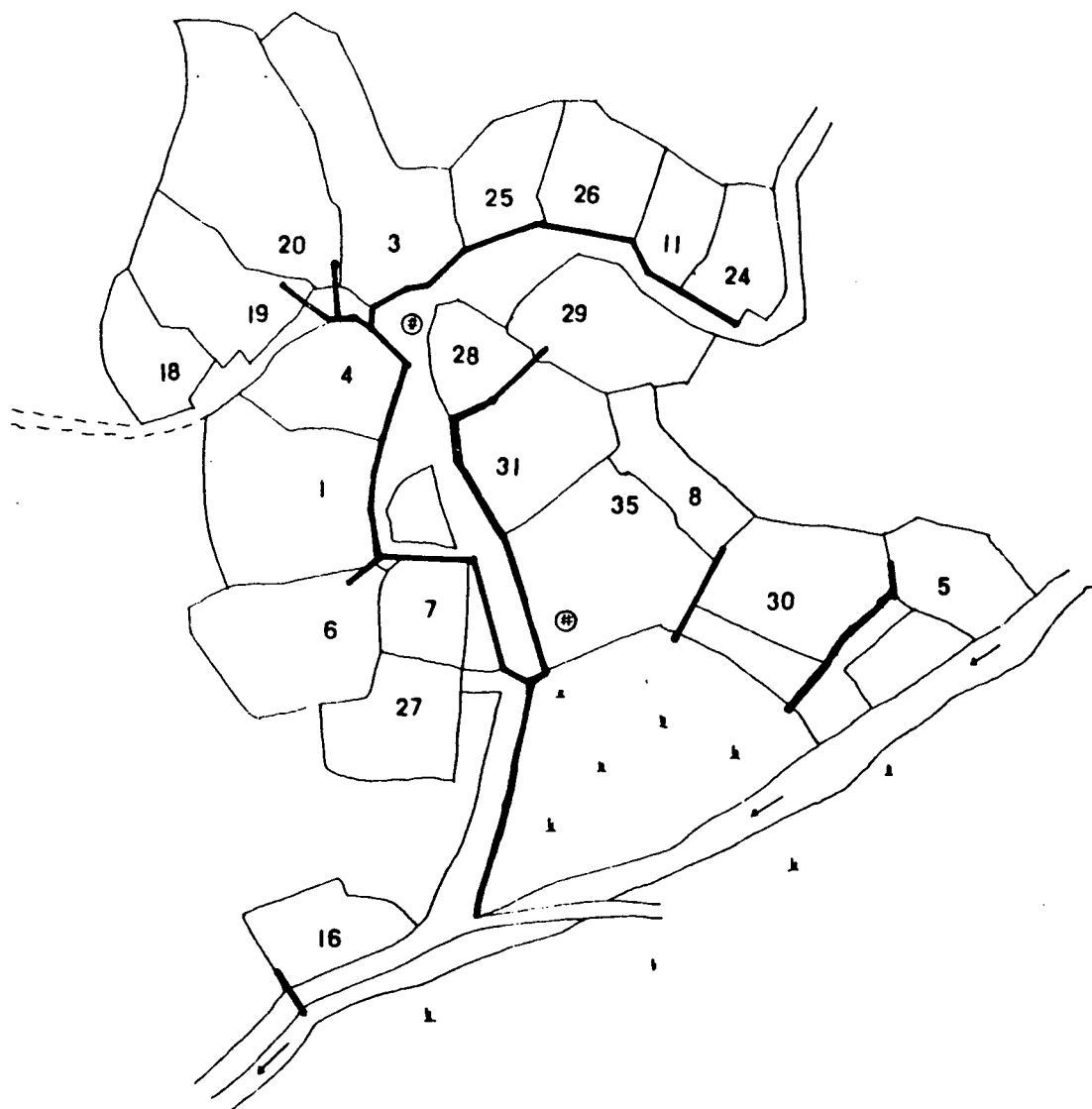


그림 5 - 21 하수도망, 1987



송국 2리 주민들이 소유 또는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지적상의 면적보다 작다. 이 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면적은 지적상의 면적에 비하여 볼 때 58.9%에 불과하며, 경작 면적은 85.0%에 달한다. 즉 지적상의 면적의 41.1%가 다른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소유된다. 반면 이들 주민이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면적의 144.2%에 달한다.

송국 2리의 경작지는 대부분이 경지정리되지 않은 채 재래의 필지 형태를 지키고 있다. 논과 밭은 자연적인 등고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어 경사도는 필지의 규모 결정에 영향을 준다.

송국 2리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장정들의 논 한 필지는 평균 900평이다. 이러한 필지 규모는 경운기를 이용한 기계화 영농에는 문제가 없으나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안된 계곡답의 필지별 평균면적은 807평이고, 낮은 구릉지에 분포된 전의 필지별 면적은 241평으로서 답보다 규모가 작다.

이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는 농경지는 좁은 계곡의 경사도를 따라 분포하므로 농로를 따라 농기계가 왕래하기에 불편하고, 농가로부터의 접근성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 마을 농민들의 농업용 주 운반수단은 아직도 지게, 손수레, 우마차이며, 경운기는 3대에 불과하다. 세분화된 농경지 구조는 농업기계화를 지체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낮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마을 뒷산은 1978년도에 실시한 정부의 야산개발사업에 의해서 36ha정도가 개간되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논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36ha의 야산개발 면적 중에서 이 마을주민소유는 7ha에 불과하다.

1978년도의 야산개발은 이 마을에 땅콩, 참깨, 고추 등 경제작물재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 종교문화공간

송국 2리에는 1970년대 전까지 마을 공동신앙으로 용신제가 있었다. 매년 7월 초 하루에 공동우물을 깨끗이 청소 정화하고 제를 드렸다.

당시 제문이나 제례를 복원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들이 지낸 용신제는 풍년을 기

그림 5-22 농경지구조와 경지이용현황,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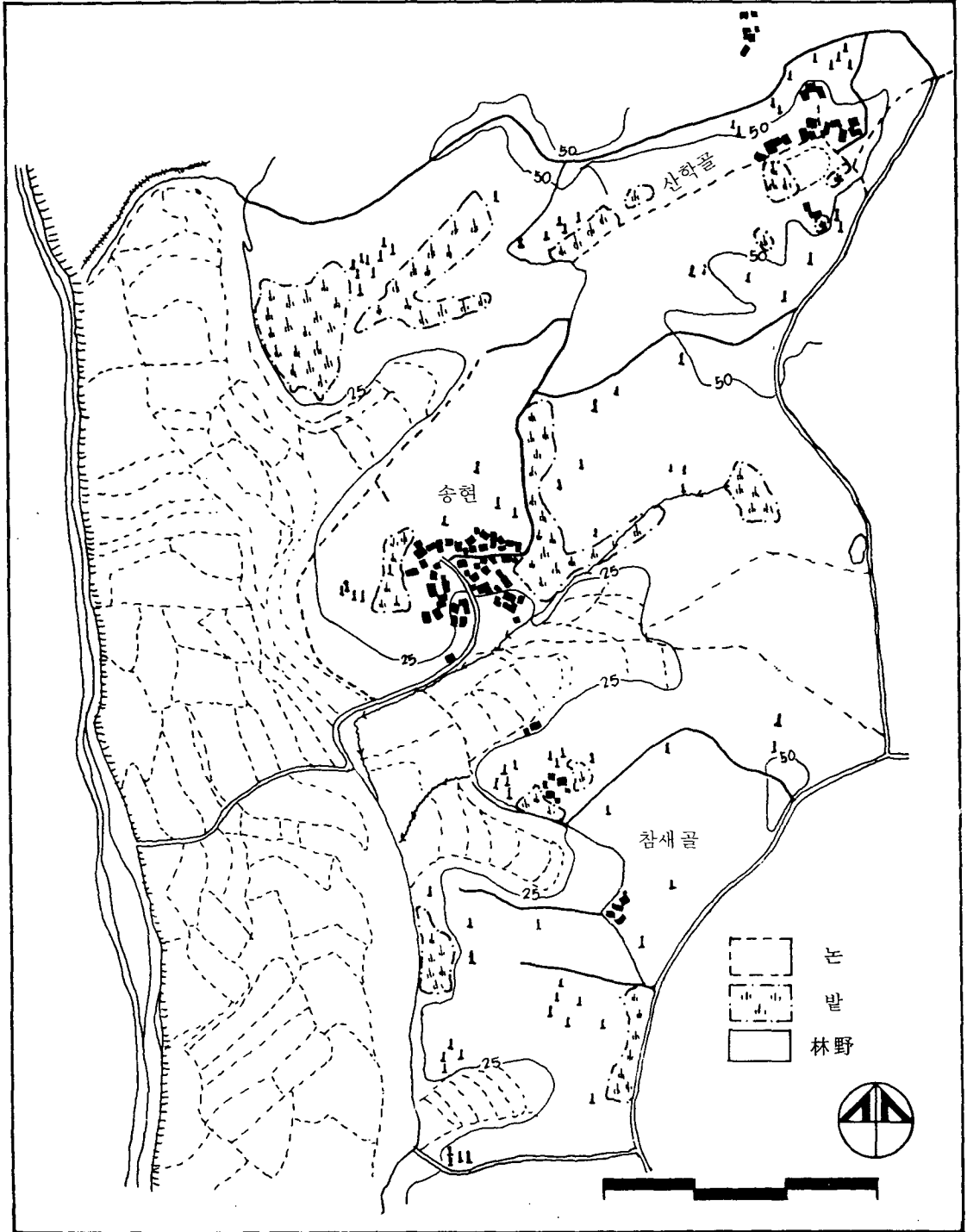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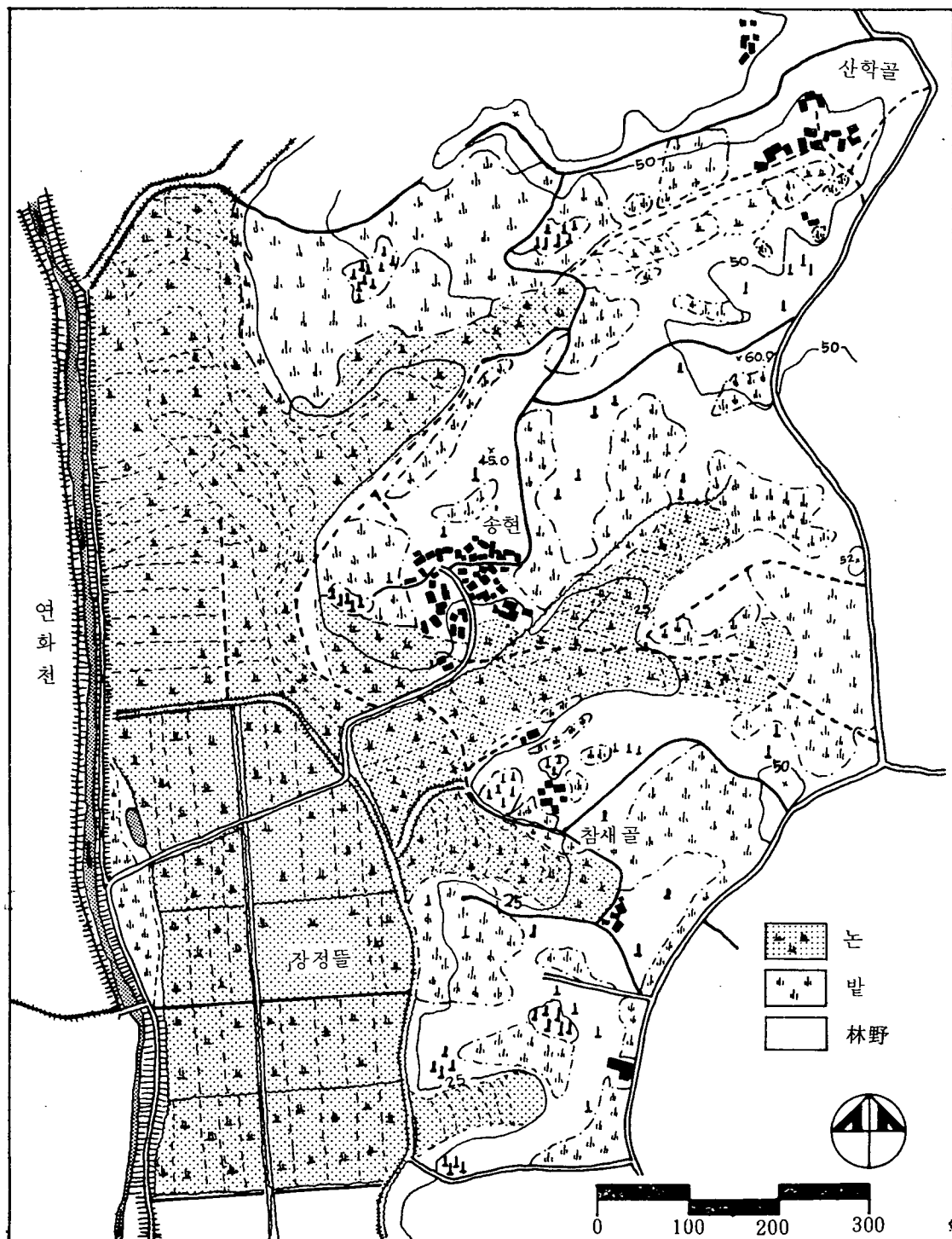


그림 5-23 농경지 구조와 경지이용현황, 1987



원하고, 마을의 질병 ‘’ 등을 예방하여 달라는 기원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용신제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막을 내렸다. 공동우물에 덮개를 하고, 펌프를 박아 놓고 각 가정별로 자가수도에 의한 식수원을 확보하면서 공동신앙의 대상이었던 공동우물은 한낱 3 호에 물을 공급하는 샘터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마을에는 성황당 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참새골의 동쪽 구릉지의 마루터기에 남아 있는 성황당 터는 해방 이전인 40 ~ 50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죽은 참나무 등걸이 새로 조립한 리키다 소나무 사이에서 성황당터의 흔적만 남기고 있다.

참새골 이남의 표고 30 m 전후의 낮은 구릉지에서 청동기시대에서부터 백제, 고려 조선시대에 속하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국립박물관은 이 지대가 야산개발지구로 책정됨에 따라 1975 년부터 4 ~ 5 차에 걸친 정밀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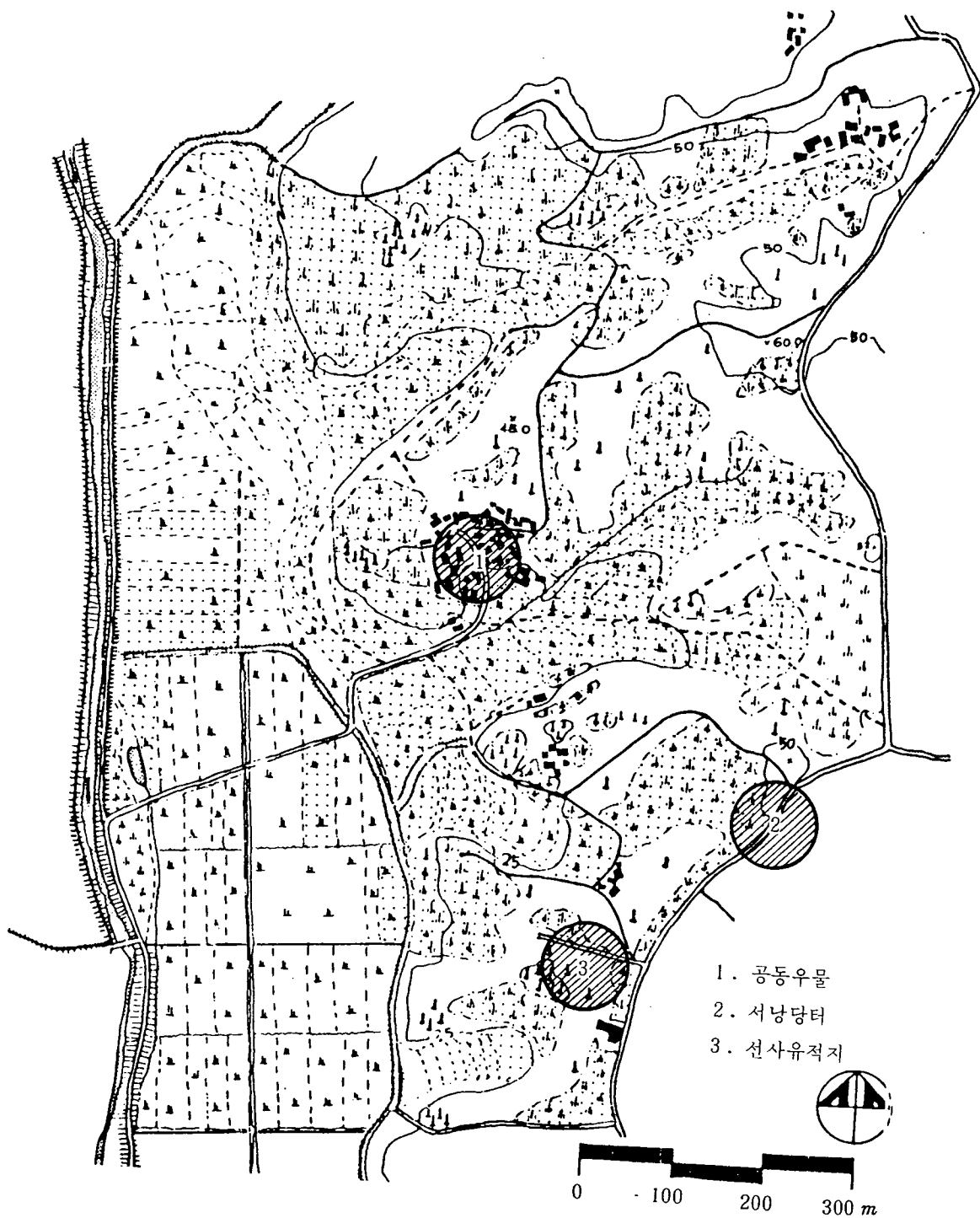
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주요 유물은 요녕식 동검 등 청동기 유물과 각종 석기, 토기 등이 있고, 당시의 집터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당시 집터는 탄화된 서까래와 함께 발견되어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집의 규모와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지역이 당시의 광범위한 취락지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일대의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있어서 금강유역, 더 넓게는 남한지방 최대의 선사취락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립박물관 1986.1).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사적지라 할지라도 주민들은 이들 유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은 국가 또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관리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 놀이공간으로 새마을회관 앞의 마당을 들 수 있다. 이 놀이마당은 새마을회관과 창고를 지으면서 어린이 놀이터로 만든 곳이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는 형식적으로만 만들었을 뿐 곧 관리부실로 놀이 시설이 사라지고 빈 공터가 되었다. 마을은 이곳 마당의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농작물을 탈곡하거나 건조시키는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빈 놀이마당으로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이 빈 마당이 마을 주민들의 놀이마당이 된다.

평상시 이곳에는 어린이들의 놀이마당이다. 그러나 추석 또는 정초가 되면 이곳은 어른들의 윷놀이, 풍물놀이마당이 된다.

그림 5-24 종교문화공간



부 록

1. 가구별 주요자료

가구 번호	가 구 상 격				변 화 내 용	경 영 주								변 화 내 용
	'85	'86	'87	'88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성	연령	
1	1	1	1	1	'88 전출	1	38	1	39	1	40	1	41	경영주 '85 일시출타후 '86 귀향
2	1	1	1	*		1	24	1	25	1	26			
3	1	1	1	1		1	57	1	58	1	59	1	60	
4	1	1	1	1		1	49	1	50	1	51	1	52	
5	1	1	1	1		1	41	1	42	1	43	1	44	
6	1	1	1	1		1	65	1	66	1	67	1	68	
7	1	1	1	1		1	58	1	59	1	60	1	61	
8	1	1	1	1		2	43	1	47	1	48	1	49	
9	1	1	1	1		1	52	1	53	1	54	1	55	
10	1	1	1	1		1	55	1	56	1	57	1	58	
11	1	1	1	1		1	59	1	60	2	53	2	54	
12	1	1	1	1		1	48	1	49	1	50	1	51	
13	1	1	1	1		1	61	1	33	1	34	1	35	
14	1	1	1	1		1	36	1	37	1	38	1	39	
15	1	1	1	1		1	63	1	29	2	55	2	56	
16	1	1	1	1		1	41	1	42	1	43	2	43	
17	1	1	1	1		1	54	1	55	1	56	2	46	
18	1	1	1	1		1	37	1	38	1	39	1	40	
19	1	1	1	1		1	57	1	58	1	59	1	60	
20	1	1	1	1		1	63	1	64	1	65	1	66	
21	1	1	1	1		1	37	1	38	1	39	1	40	
22	1	1	1	1		1	50	1	51	1	52	1	53	
23	1	1	1	1		1	52	1	53	1	54	1	55	
24	1	1	1	1		1	50	1	51	1	52	1	53	
25	1	1	4	4	1	24	1	56	1	57	1	58		
26	1	1	1	1	1	62	1	63	2	62	2	63		
27	1	1	1	1	1	31	1	32	1	33	1	34		
28	1	1	1	1	1	37	1	38	1	39	1	40		
29	1	1	1	1	1	53	1	54	1	55	1	56		
30	1	1	1	1	1	67	1	68	1	69	1	70		
31	1	1	1	1	1	26	1	27	1	28	1	29		
32	1	1	1	1	2	57	2	58	2	59	2	60		
33	6	6	6	6	2	69	2	70	2	71	2	72		
34	4	*	*	*	'86 전출	1	43							
35	*	3	*	*	'86 전입 '87 전출			1	31					
36	*	*	*	1	'88 전입							1	41	

가구 번호	가 구 원 수								경지소유면적(평)				경 작 면 적 (평)			
	1985		1986		1987		1988		1985	1986	1987	1988	1985	1986	1987	1988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4	4	4	4	3	4	3	3	4.490	5.190	5.190	5.190	4.490	4.770	4.770	4.770
2	2	4	2	3	2	3	0	0	3.450	5.250	5.250		3.450	5.550	8.250	
3	3	1	1	1	1	1	1	1	3.020	3.020	3.020	3.020	3.020	3.020	3.020	3.020
4	2	1	2	1	2	1	1	1	1.500	1.500	1.500	1.500	1.500	3.100	3.100	7.300
5	2	2	2	2	2	2	2	2	3.030	3.030	3.030	3.030	5.630	5.980	6.630	7.030
6	1	1	1	2	2	1	1	1	3.784	3.784	3.784	3.784	2.684	2.784	2.784	660
7	1	2	1	2	1	1	1	1	3.200	3.200	3.200	3.200	2.400	2.400	2.400	3.200
8	3	2	4	2	4	2	4	1	850	850	850	850	1,150	950	850	1,450
9	2	1	3	2	3	1	3	1	6.550	5.750	5.750	5.750	5.750	2,800	5.750	4.050
10	1	1	1	1	1	1	1	1	1.600	1.600	1.600	1.600	2,100	1,900	2,300	2,300
11	1	1	1	1	0	1	0	1	0	0	0	0	500	700	700	1,000
12	4	3	4	3	4	2	4	3	1,100	0	0	1,490	2,100	7,180	4,300	6,590
13	5	1	5	1	4	1	4	1	778	778	778	400	3,778	6,278	1,978	4,250
14	3	1	0	0	3	1	3	1	5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5	5	3	3	3	2	3	2	2	900	900	900	900	2,900	5,500	1,900	1,900
16	1	4	1	4	1	3	0	4	5,200	4,000	4,000	4,000	5,200	4,000	7,000	19,250
17	1	5	1	4	1	4	0	3	1,180	1,180	900	900	1,180	900	900	2,300
18	2	2	2	2	2	2	2	2	3,804	3,804	3,804	3,804	4,404	3,804	8,604	19,054
19	1	1	1	1	1	1	1	1	3,800	3,800	3,800	3,800	3,200	3,200	3,200	3,200
20	1	1	1	1	2	1	1	1	0	0	0	0	4,000	4,700	1,900	3,900
21	4	4	4	3	4	3	4	4	3,366	3,366	3,366	3,366	6,366	3,366	3,366	3,366
22	3	2	3	2	1	2	1	1	6,920	6,920	6,920	6,920	9,900	12,000	10,600	12,000
23	1	4	2	5	2	5	1	2	3,350	3,350	3,350	3,350	3,350	3,350	3,350	3,950
24	1	1	1	1	1	1	3	1	3,377	3,377	3,377	3,377	5,377	5,377	5,377	10,177
25	1	1	1	1	1	2	1	1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	0
26	1	2	1	1	0	1	0	1	400	400	400	400	2,900	2,900	2,500	2,500
27	3	1	3	1	3	1	3	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800
28	2	4	2	4	2	4	2	4	800	800	800	800	4,800	4,800	4,800	5,800
29	1	3	3	3	1	2	1	2	800	800	800	800	2,400	2,400	800	800
30	2	2	2	2	2	2	2	2	6,100	6,100	6,100	6,100	3,900	1,300	6,100	1,300
31	1	3	1	2	2	2	2	3	3,800	3,800	3,800	3,800	6,300	6,400	4,500	7,450
32	2	1	2	1	1	1	1	1	0	0	0	0	380	1,500	1,500	1,500
33	0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34	1	0							4,100				0			
35			3	2						0		11.200		0		42.700
36							2	1								

2. 자생적 사회집단의 규약

連 班 稷

단기 4279 년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1. 본계는 위친계라 칭함
2. 본계는 계원이 일심협력하여 상고시에 동정할 것.
3. 상고시에 불참자는 당일에 2일 인부대금을 벌금으로 정함.
4. 벌금을 내지 않는 자는 무조건으로 제명함.
5. 보좌는 전보좌 1인당 백미 4근, 계원일동에 술 한통이고, 반보좌는 1인당에 백미 2근, 술은 일동에 소두 1두로 정하고 상고시에 지불할 것.*
6. 보좌금을 타고 위계하는 자는 기보좌금 기금액과 벌금만큼 수집할 것
7. 계일에 불참자는 1일 인부대금을 벌금으로 정함.
8. 계일은 11월 9일로 정함.
9. 계원과 계원의 처가 사망시에는 1인당 백미 1근과 술 소두 1두씩 정함

1 반 책임자 : 윤광순

계 원 : 윤광순, 백순성, 배인성, 서우선, 서상훈

2 반 책임자 : 박주용

계 원 : 구학용, 박주용, 조규재, 김금수, 조기영

3 반 책임자 : 이보상

계 원 : 김순관, 김창래, 이보상, 이천우

4 반 책임자 : 김연수

계 원 : 이수종, 김연수, 박인환, 박태순, 차삼동

* 보좌금 지불은 전보좌일 경우 계원 1인당 백미 4근을 수합하여 지급하고 계원 일동명으로 술 대두 1두를 지급하며, 반보좌일 경우는 계원 1인당 백미 2근을 수합하여 지불하고 계원일동이 술 소두 1두를 상고시에 지불한다는 뜻으로 해석

5 반 : 책임자 : 문만호

계 원 : 이건종, 문만호, 양기병, 노주열

爲 親 稷

- 一. 본계는 위친제라 칭한다.
- 一. 본계는 13명으로 구성하며 1인당 백미 2두씩 수합하여 부모 상고시에 보좌금으로 백미 3가마를 상주 편에 지불하기로 한다.
- 一. 본계원중에 탈계를 하면 계미는 무효로 한다.
- 一. 계원 법칙대로 정한 바 만약에 이의가 유할 시에는 계원 일동이 상의하여 제명 처분하기로 약정함.
- 一. 상고시에는 계원일동이 참여하여 계장 명령대로 행동할 것.
- 一. 본계미가 부족하여 보좌를 지불치 못할 시에는 계원 1인당 생수하기로 함.

甲寅年 7월 11일

계장 이 연 중

부 칙

- 1. 본계는 13명 이상 추입하지 못하도록 정함.
- 2. 계일에 불참자는 벌금으로 백미오승, 상고시에 불참자는 백미 일두를 지불하기로 하고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참석도 무방함
- 3. 만약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원일동이 합의하여 제명처분하기로 결정함.
- 4. 추진대표
이 재 우
김 희 현
조 중 원

爲 親 稷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서기 1966년 10월 18일 설립

- 一. 본계는 위친제라 칭함.
- 一. 상고시에는 보좌탁주 대두삼십두를 상주편에 지불하기로 약정함.

- 一. 본계설립당시는 일인당 백미삼두를 수합하였음.
- 一. 병오년도에 상고가 유할 시와 계미가 백미십홉 이상일 때에는 탁주 參拾斗價를 생수해야 상주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함
- 一. 상고시에 불참석하는 자는 벌금 백미일두를 정하되 당년계일에 지불기로 함.
- 一. 만약 계일에 지불치 않는 시에는 제명 처분하기로 약정함
- 一. 총무 3명을 정하되 김병남, 구학용, 박기달로 정함. 상고시에는 계원일동은 총무의 언어를 일제히 여행기로 함
- 一. 계원중 계미를 사용한 본인의 상고시에 사용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불할 것을 일동이 약속함
- 一. 본계일은 음력 11월 18일로 정함.

계 장 배 인 성

빈 면

M15-13

韓國農村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1985~2001) 13

中間마을의 社會經濟構造

-扶餘郡 草村面 松菊2里 事例-

1989年 12月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株式會社 文苑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自由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